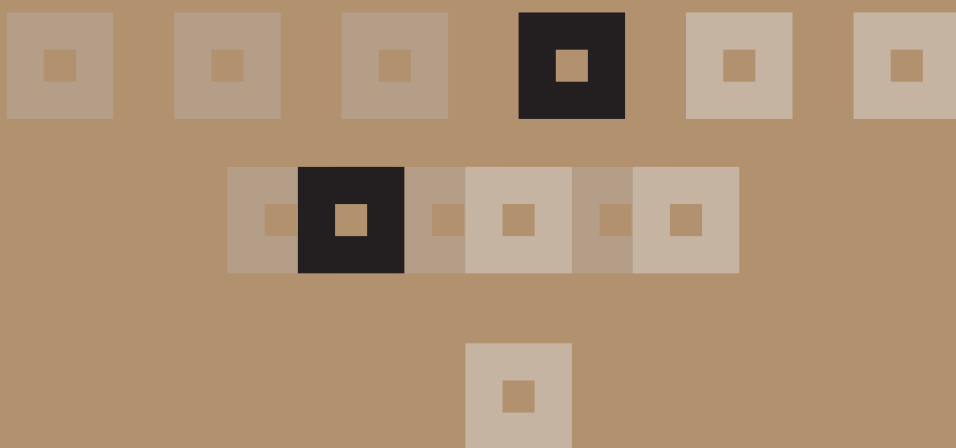


경기 문화유산 세계화 기초조사 연구

보존관리 및 활용 가이드라인 편

4



일러두기

이 책은 2017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유산 세계화 사업에 의해, (사)ICOMOS 한국위원회가 제출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의 기초조사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최재헌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김숙진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연구원: 홍현철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박종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상헌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책임연구원)
정수희 (건국대학교 박사)
연구보조원: 정학성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한승우 (건국대학교 사학과)

목차

I. 문화유산의 의미와 유형

1.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8
1) 문화유산의 의미	8
2) 문화유산의 가치	10
2. 문화유산의 유형 분류	12
1) 국내 문화재 유형 분류	12
2) 세계유산의 분류	15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1.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법제와 계획	20
1) 문화재 보존관리 법제	20
2)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계획	33
2. 세계유산(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지침	40
1)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련 주요 지침	41
2) 이코모스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련 주요 현장 및 선언문	52
3. 문화유산의 재난·재해예방과 모니터링	75
1) 재난 및 재해예방	75
2) 재난 및 재해예방 매뉴얼	88
3)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 지표	95
4. 문화유산 보존관리 국내외 사례	105
1) 기념물	105
2) 유적지	108
3) 건조물군	116

III. 문화유산 활용 가이드라인

1. 문화유산 활용 원칙과 방법	124
1) 문화유산 활용의 의미	124
2) 문화유산 활용 원칙	125
3) 문화유산 활용 방법	125
2. 문화유산 활용분야와 국내외 사례	128
1) 교육 분야	128
2) 관광 분야	139
3. 참고문헌	165

I.

문화유산의
의미와 유형

1.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1) 문화유산의 의미

(1) 문화재와 문화유산

문화재라는 말은 ‘생산재(生産財)’에 대비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일본에서 1950년에 문화재보호법을 만들면서 문화적 재화(Cultural Properties)라는 말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61년 10월 2일 각력 제181호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 직제가 공포되면서 문화재라는 말이 공식으로 쓰이게 되었다.

문화재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쓰인다. 중국에서는 ‘문물(文物)’, 대만에서는 ‘문화자산(文化資產)’, 북한에서는 ‘문화유물(文化遺物)’로 쓰고 있다. 문화란 학문, 예술, 사상, 종교 등 사람의 행위에 의해 나타난 모든 것을 뜻하며 ‘재(財)’는 경제가치가 있는 재화를 말하지만 문화재라고 하면 경제가치 뿐 아니라 일반으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와 비슷한 뜻을 갖는 말로 문화유산(文化遺産), 또는 문화자원(文化資源)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나온 한자말들이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은 문화재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말들이다. 유산은 인류유산 또는 국가유산이라는 보다 넓은 뜻을 사용하여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복합유산, 기록유산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1975년에 ‘유럽 건축유산의 해’를 개기로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문화자원’은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

(2) 문화유산의 범위

문화유산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유·무형적 소산물과 탁월한 자연환경이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등의 민속사회 또는 인류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물질적인 형태의 각종 문화유산이나 문화양식을 모두 포함한다.

사람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문화유산은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선조들의 가치관과 생활상 등을 살필 수 있는 증거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의 산물이며, 역사의 증거로서 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다시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이다.

유네스코(UNESCO)에서는 2002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하면서 문화유산을 유적, 경관으로부터 일반 생활유산에 이르기까지 대상이라 규정하였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문화국가와 문화유산 향유권

문화유산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향상을 돕고,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은 공공의 소유로서 행정법상 공물(公物)이며 국민의 공유재산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물(私物)과 달리 특별법¹⁾의 규제를 받게 된다.

헌법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통문화의 산물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밝혀 놓았다. 또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쾌적한 환경이라 생활환경의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문화에 대한 향유권을 포함하여 역사문화환경도 함께 보장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유산 향유권이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영구 보존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문화발전과 국민의 생활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가치 높은 문화재를 지정 관리하며 원래의 현상이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연구수단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문화유산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1)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이며,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2) 문화유산의 가치

(1) 문화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① 문화유산의 역사성

문화유산은 한 시대의 산물이지만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역사성이 함께 있다. 그러나 문화재가 변화하는 속성은 문화재의 원형을 판단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도 한다. 그림, 조각, 공예작품과 같은 단위 문화재들은 제작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때로는 역사의식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② 문화유산의 학술성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역사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다. 역사가들은 문헌기록을 1차 사료로 이용하여 연구하지만 옛 문헌자료가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적과 유물 형태로 남아 있는 문화유산들이 역사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기록의 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문을 비롯한 금석문, 옛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 성터에서 발견된 기와, 등이 모두 역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들은 모두 귀한 문화유산들이다.

③ 문화유산의 예술성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의 작품에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장인들의 솜씨와 더불어 시대정신, 예술사조, 표현양식의 변화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어 예술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문화유산의 예술성은 전통정원이나 명승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연경관을 적절히 이용하여 예술 감각을 발휘한 정원 등은 감상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채워주고 문화향유권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중요하다.

④ 문화유산의 상징성

문화유산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과 함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족장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며, 종묘와 사직단은 조선시대 국가 통치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에 깃들어 있는 상징성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 문화유산의 가치 향유

문화유산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이며, 나아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72년에 나온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는 인류의 유산은 세계 공동의 것이며, 인류공동의 유산을 보호하는 책임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문화재는 국가, 민족,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것이며(법 제2조), 문화재를 보존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법 제11조).

그러나 지역에 따라, 국가와 민족에 따라 동일한 문화유산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인류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공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1) 국내 문화재 유형 분류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분류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에 대한 분류기준은 문화재 행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의 대상별 분류

구분	대상
유형 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 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 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위의 표에서 제시한 문화재는 지정방식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로 분류되는데, 지정방식에 의한 문화재의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지정문화재의 유형

지정 문화재	지정 문화재 유형
국가지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사적 :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국가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무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정의(무형문화재)에서 규정한 대상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한 것
시·도지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 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기념물 : 다음의 내용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지형·지질·광물·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문화재자료	국가지정 또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문화유산의 유형 분류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원칙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를 ‘가지정 문화재’라고 한다. 또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등록문화재” 한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의 표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등록된 문화재이다(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당될 수 있음)

등록문화재의 개념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

(2) 국내 소재 세계유산(문화유산)의 문화재 분류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 12개 중 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제외한, 11개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보유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의 국내 문화재 분류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국내 세계유산의 문화재 지정 및 분류체계

등재년도	세계유산 명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정		
		문화재 명칭	종목(지정년도)	문화재 분류체계
1995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석굴암 석굴	국보 제24호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불전
		경주 불국사	사적 제502호	유적건조물/-
1995	종묘	종묘	사적 제125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궁궐·관아/사우
1995	해인사 장경판전	합천 해인사	사적 제504호	유적건조물/-
1997	화성	수원화성	사적 제3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1997	창덕궁	창덕궁	사적 제122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궁궐·관아/궁궐
2000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 남산 일원	사적 제311호	유적건조물/유물산포지 유적산포지/유적분포지/유적분포지
		경주 월성	사적 제16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경주 대릉원 일원	사적 제512호	유적건조물/무덤/무덤/고분군
		경주 황룡사지	사적 제6호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사찰
		경주 명활성	사적 제47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2000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군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사적 제391호	유적건조물/무덤/무덤/지석묘
		화순 호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사적 제410호	유적건조물/무덤/무덤/지석묘
		강화 부근리 지석묘	사적 제137호	유적건조물/무덤/무덤/지석묘
2009	조선 왕릉	서울 정릉 외	사적 제199호	유적건조물/무덤/왕실무덤/조선시대
2010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안동 하회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마을
		경주 양동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마을

2014	남한산성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공산성	사적 제12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공주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13호	유적건조물/무덤/무덤/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	사적 제428호	유적건조물/유물산포지 유적산포지/육상유물산포지/역사유물
		부여 부소산성	사적 제5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부여 정림사지	사적 제301호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사찰
		부여 나성	사적 제58호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부여 능산리고분군	사적 제14호	유적건조물/무덤/무덤/고분군
		익산 왕궁리유적	사적 제408호	유적건조물/유물산포지 유적산포지/육상유물산포지/선사유물
		익산 미륵사지	사적 제150호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사찰

중앙민속문화재위원회

2) 세계유산의 분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세계유산의 범위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세계유산 매뉴얼에서 제시한 세계유산의 분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의 분류 정의

① 문화유산

세계유산 협약(제1조)에는 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본 정의는 1972년 개발되었으며, 문화유산의 개념은 이후에도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의는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왔다. 운영지침에는 조경, 역사도시, 도시지구, 유산 운하, 유산로(路)에 관한 추가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의미를 갖고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및 여러 요소의 복합체로서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 건조물 군 : 독립건물 또는 연속된 건물의 군집체로서 건축특성, 동질성 또는 경관 속에 점한 위치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성을 갖는 유산
- 유적지 : 사람들의 소산 또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역사상, 미학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 문화경관 : 세계유산 협약 제1조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합작소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세계 유산 운영지침(47항)에서 문화경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 창조된 조경
- 유기적으로 진화된 조경
- 결합적 문화경관

② 자연유산

세계유산협약(제2조)에는 자연유산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성물 및 정확하게 구획된 구역 내에 위협받는 동물과 식물의 종의 서식지로서 과학이나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천연 명승이나 정확하게 구획된 천연구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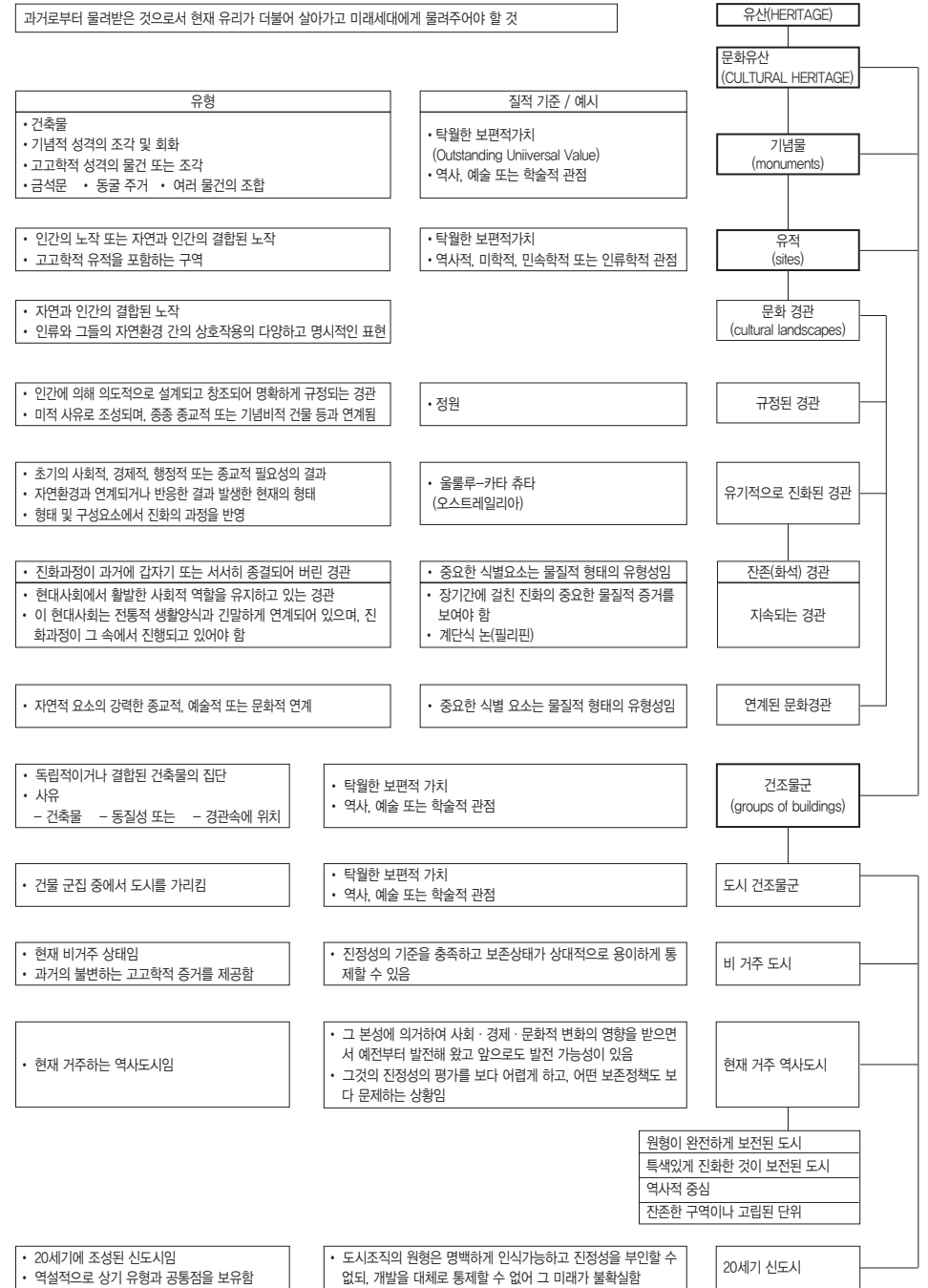
③ 복합유산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정의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충족시키는 유산으로 정의한다.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각각 1개 이상이 충족된 유산이어야 한다.

(2) 세계유산의 분류 체계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세계 문화유산의 체계



(출처: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 2005.)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1.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법제와 계획

1) 문화재 보존관리 법제

한국의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주요법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과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법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존관리 관련 법제와 주요내용

법 제	주요내용	문화재 보존·관리와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용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보존·관리	문화재 지역의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에 영향력을 가짐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및 보존·관리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강한 영향력을 가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의 지정 및 보존·관리	지정구역(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 포함될 경우 보존·관리에 영향력을 가짐	
경관법	경관계획의 수립	문화재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에 영향력을 가짐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보존관리	자연공원 내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영향력을 가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전평가 대상 제시	문화재 지역의 환경 보존에 영향력을 가짐	
문화재 보호조례	광역자치단체 조례(도, 특별자치도, 광역시,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 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광역자치단체 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에 영향력을 가짐
세계유산 관련조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조례(해당 광역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 보존·관리계획 수립 등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보존관리 활동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활동을 뒷받침 함

(1) 중앙정부 제정 법률

① 국토의 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서는 해당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및 일부 행위제한 등을 다루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행위들을 제한하여 문화재 보호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법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법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법 제7조 (국토의 용도지역 별 관리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거지역: 거주자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p>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p> <p>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p> <p>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p> <p>3. 농림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p>
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p>1.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p> <p>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p> <p>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p>
법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p>1.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② 문화재보호법

대한민국의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법 제3조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문화재 구역 내에서 개별 유산의 수리복구, 현상변경의 허가, 행위제한금지 등 보존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결정된다. 신청유산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유산을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

구분	내용
법 제19조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	<p>1.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p>2.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시행령 제10조 (세계유산의 보호)	<p>1.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을 유지·관리하고,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p>

나. 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국가지정문화재는 법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에 의해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지정 및 관리

구분	내용
법 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p>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p>
법 제27조 (보호구역의 지정)	<p>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2.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p> <p>3.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법 제35조 (허가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다. 문화재 구역 밖에서의 보호 및 관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외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법 제13조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주변지역의 보호·관리

구분	내용
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1.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라. 자연공원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분	내용
법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II. 문화유산 관리 가이드라인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4.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47조 (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사적의 지정 등)	1.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기 특별법은 과거 왕도의 지위에 있었던 고도를 대상(현재 경주시·공주시·부여군·익산시에 해당)으로 지정지구에 대해 면적인 형태로 확장하여 보존·관리하는 법률이다. 중요 유적이 분포해 있는 구역은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보존하고, 그 주변과 역사문화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보존육성지구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 제7조 (고도의 지정)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p>법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
<p>법 제10조 (지구의 지정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육성지구: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특별보존지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p>법 제11조 (지정 지구에서의 행위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그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도로의 신설·확장 그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④ 경관법

경관법에서는 체계적인 국토의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경관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p>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p>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국토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p>시행령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 역사·문화 경관, 농촌·산촌·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p>시행령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 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그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행위제한 내용과 관련된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p>1.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관리한다.</p> <p>2.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법 제17조의2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p>1.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p>
법 제17조의3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p>1.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2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법 제18조 (용도지구)	<p>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p> <p>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p> <p>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p> <p>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p> <p>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p> <p>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p> <p>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p> <p>2.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1. 공원자연보존지구</p> <p>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p>

<p>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水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p> <p>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층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寺刹境内地)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에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p> <p>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층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p> <p>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p> <p>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p> <p>2. 공원자연환경지구</p> <p>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p> <p>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p> <p>라.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p> <p>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p> <p>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p> <p>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호안(護岸)·방화(防火)·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p> <p>아.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p> <p>3. 공원마을지구</p> <p>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p> <p>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内工業)</p> <p>6. 공원문화유산지구</p> <p>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p> <p>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 행위</p> <p>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

법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변 경에 관한 협의)	<p>1.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p> <p>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	--

⑥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전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p>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도시의 개발사업</p> <p>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p> <p>3. 에너지 개발사업</p> <p>4. 항만의 건설사업</p> <p>5. 도로의 건설사업</p> <p>6. 수자원의 개발사업</p> <p>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p> <p>8. 공항의 건설사업</p> <p>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p> <p>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p> <p>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p> <p>12. 산지의 개발사업</p> <p>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p> <p>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p> <p>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p> <p>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p> <p>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p> <p>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p> <p>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의 대상)	<p>1.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p> <p>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p> <p>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p> <p>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p>
--	--

(2) 지방정부 조례

①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유산이 입지해 있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는 시·도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항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으로 화재 및 재난방지, 수리, 허가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제4조 (문화재의 보존 시행 계획 수립)	<p>1.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보호)	<p>1.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p> <p>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p> <p>2. 제1항 제1호나목 및 제1항 제2호나목의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p>

제6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에 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도지사가 문화재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공공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도난방지장치 또는 금연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도지정문화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를 지정하는 경우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24조 (허가사항)	<p>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식물·광물 등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세계유산 관련 조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잠정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조례를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만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세계유산 잠정목록 발굴과 등재 지원, 등재이후 보존관리 사항을 담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3조 (세계유산의 등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문화·자연·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활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세계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재 지역 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4. 해당 지역주민 홍보·교육 및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가 자문·심의·조정을 구하는 사항
제19조 (보존·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또는 선정 신청 중인 유산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계획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기본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 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경비 보조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는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기타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계획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밀접한 계획으로는 중앙정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문화재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과,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문화재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이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 개별 지정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1) 중앙정부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7~2021)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항²⁾에 근거하여 2017년 4월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계획으

로서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재 정책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5년간의 정책 비전과 그 실현전략을

2)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화한 계획이다.

기존의 문화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문화재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크게 4가지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각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핵심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정책비전과 실현계획

정책과제	핵심과제
문화재로 국민에게 다가간다.	a.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 확대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강화, 역사문화자원 관광콘텐츠 육성, 문화 현장 국민참여 확산, 스마트한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구현 b.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재 수요창출 - 문화유산 교육진흥 활성화, 왕실문화유산 연구교육 기반 강화, 전통문화교육원 연수교육 기능 강화 c.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지원화 -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호 및 자원 발굴, 문화유산 이야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자립형 지역경제 기반 마련
보존 패러다임을 바꾸다.	a. 유형별 문화재 합리적 보존 -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적지 보존관리,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중요민속 및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b. 보존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 문화재 보호 민관협력 활성화, 제3섹터 역량 강화 및 활용 확대,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c. 지원을 통한 문화재지역 적극 조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관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지원 강화,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 기반 강화
국가 브랜드, 문화재로 만들다.	a.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보존·활용 -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홍보 강화 b.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 -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개발협력 다변화,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환수·활용 활성화, 통일대비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c. 고도 유적 및 궁궐 복원 정비 - 고도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 경복궁·덕수궁·사직단 복원정비, 조선왕릉 능제 회복·정비
문화재 기반을 튼튼히 하다.	a. 기술변화 대응 및 기록정보 고도화 - 과학적·체계적 방재기반 확충,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정보 활용기반 내실화 b. 시대변화를 읽는 문화재 행정 - 문화재 자원관리 역량 강화,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합리화, 문화재 연구 조직기반 활성화 c. 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 문화재 보존활용 핵심가치 연구 강화, 수증문화재 조사보존 기반 강화, 전통문화 인력양성 교육역량 강화

(2) 지방정부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매년 수립)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계획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에 근거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수립된 실행계획이다.

본 계획의 내용에는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 안전관리, 세계유산 관련 등의 사업 계획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매년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 내용을 확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계획이다.

『경기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2017)』관련 주요 내용

정책과제	세부내용
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존 및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문화재 발굴·지정 · 등록문화재 지정·관리 · 문화재 원형 기록화 · 항일 유적 실태조사 ·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관리 ·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관리 · 도, 시·군 문화재업무 담당공무원 연계망 강화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 문화재 돌봄사업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 ·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산 향유와 세계유산 관리 및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만들기 · 경기도 옛길 관리 및 운영 · 경기도 문화유산 홍보 강화 · 무형문화재 대중성 확보 및 전승기반 구축 · 세계유산 남한산성, 수원화성의 보존관리 ·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유산화

(3) 지정 문화재 : 문화재 정비계획

중앙정부의 사적 정비지침에 따라 해당문화재의 성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하여는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해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진정성을 기반으로 유적정비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된다.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정비계획』 주요 관련 내용

구분	정비 계획	
모 법	문화재보호법 (사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침)	
중앙정부	문화재청	A Guidebook of Historic Sites Conservation in Korea(사적정비편람, 2011)
지방자치단체	개별 지정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3)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지시·공고문서, 매뉴얼

중앙정부 기관인 문화재청에서는 법령에 보완하여 훈령과 예규 등의 지시문서, 고시문,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된 주요 훈령 및 지침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각 문서의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된 주요 훈령 및 지침

구분	제목
지시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관리규정(1999.06 제정)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2006.09 제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작성 지침(2009.08 재발령)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지침(2011.02 제정)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2009.05 제정)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2009.08 제정)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2007.12 제정)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2007.05 제정)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2014.11 제정)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2015.05 제정)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예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2006.10 제정, 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 예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2009.09 제정) 문화재 주변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2012.08 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2006.03 제정) 조선왕릉 조경 보존·관리 지침(2013.04 제정) 조선왕릉 건조물 보존·관리 지침(2013.04 제정)
공고문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2009)
매뉴얼	유형별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숲 보존관리 매뉴얼(2008)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2010.12) 고분의 보존관리 매뉴얼(2011) 선사유적의 보존관리 매뉴얼(2012.12) 명승지정·보존 및 관리·활용을 위한 실무가이드라인(2013.11) 읍성의 보존관리 매뉴얼(2014.04) 인물유적 보존관리 매뉴얼(2015.08) 요지의 보존관리 매뉴얼(2015.10) 등록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 개발(2016.12)
	역사 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7.05)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교사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2009.12)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성 왕곡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2006.12) 아산 외암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2006.12) 양동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2007) 하회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2007)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2008.08)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2009.1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12)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위의 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해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마련된 기준인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문화재청 고시 제2009-74호
2009년 9월 3일 제정

【서 문】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 등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집약된 결정체로서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원형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산이 가진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COMOS) 등 국제기구는 기념물, 고고학적 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헌장과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수리복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해왔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은 '베니스 헌장'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문서'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헌장과 원칙에서 정한 기준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마련된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바람직한 보존·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일반원칙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의 수리와 복원 등에 관한 제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유적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바람직한 보존·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건축물(歷史的 建築物) : 과거에 형성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
2. 유적(遺蹟) : 과거에 형성된 삶의 흔적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 또는 장소
3.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
4. 수리(修理)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
5. 보강(補強)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
6. 수복(修復) :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
7. 복원(復原)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 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8. 이건(移建)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제3조(유적의 보존) 1. 유적은 보존을 통하여 본래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적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3. 유적의 체계적,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와 재정적 실천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4조(보존의 단계) 1.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 수복이, 수복보다 수리가 권장된다.

2. 수리·수복 및 복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진정성과 완전성) 1.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가치를 변형·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2. 유적의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일체로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변 및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학술 연구와 기록) 1. 유적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조경학, 민속학 등 관련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유적의 학술연구 결과 및 수리와 복원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제2장 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역사적 흔적의 존중)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시대의 흔적은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제8조(수리의 원칙) 1. 유적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결손부분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전체와 조화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교체 및 보충재는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가역성)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향후, 새로운 문헌 및 유적의 발견, 연구결과와 축적,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에 의하여 수정 또는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가능하도록 가역성(可逆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 1.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적의 안전과 내구성을 위하여 전통적 기술이 부적절하거나 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 또는 경험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현대기술과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조보강은 유적의 모습 및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3장 복원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원의 원칙) 1. 복원은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2. 유적의 복원은 지상 또는 지하에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복원의 제한) 유적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13조(이건의 제한) 유적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이건은 유적의 안전과 보호 또는 원래의 위치로의 이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제4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 등에 따라 수리와 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자 및 관리자의 역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유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모니터링) 유적의 관리 시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수리·복원 정보의 관리) 유적의 수리 또는 복원된 부분과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 시 재해대응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유적의 재해를 경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시설물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 및 유적의 관리를 위한 관련시설물 설치의 유적의 특성, 건물의 구성상의 균형,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관람환경의 조성) 유적의 관리자는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유적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고려 사항) 1.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할 수 있다.

2. 근대이후의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특성과 활용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3일 발효하였다.

2.

세계유산(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지침

유네스코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제헌장인 유네스코헌장(1945)을 제정한 이후 문화유산이 보존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범들을 제정하였다. 또한 유네스코는 제2차 국제 역사적기념건조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회(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itects and Technicians of Historic Monuments, 1964년)에서는 건축물이나 유적 보존의 원칙을 다룬 헌장인 이른바 ‘베니스 헌장’을 채택하였다.

국제 비정부기구인 이코모스(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건축물과 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적 규범인 헌장과 선언문 등을 지속적으로 채택하여 2017년 기준으로 국제헌장 14개, 국제 선언문 15개를 제정하였다.

유네스코(UNESCO) 문화유산 관련 지침

구분	제목
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헌장(1945)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력충돌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1954) 문화유산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2001)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1956)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1962) 문화유산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권고(1964)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1972) 역사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1976)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1976) 동산문화재 보호 권고(1978)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1989)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2003)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2003)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 헌장 및 선언문

구분	제목
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 건조물과 유적의 보존, 복원 국제헌장(베니스헌장, 1964) 역사정원(플로렌스 헌장, 1981) 역사도시 및 도시지구의 보존헌장(워싱턴헌장, 1987) 고고학 유산의 보호와 관리 헌장(1990) 수중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헌장(1996) 국제 문화 관광 헌장 : 주요 유적지의 관광관리(1999) 토속 건축 유산 헌장(1999)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존 원칙(1999) 이코모스 헌장 - 건축유산의 분석, 보존, 구조 복원 원칙(2003) - 건축유산의 분석, 보존, 구조 복원에 관한 권고안 벽화 보전과 보존/복원의 이코모스 원칙(2003) 이코모스 문화루트 헌장(2008) 문화유적지의 해석과 전시에 관한 이코모스 헌장(2008) 산업유산, 구조, 지역경관의 보존을 위한 원칙((ICOMOS-TICCIH 공동원칙, 2012) 역사도시 보호 관리를 위한 발레타 원칙(2011)
선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래된 건물군 내 현대 건축물 건립에 관한 심포지엄 결의사항(1972) 소규모 역사도시의 보존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결의 사항(1975) 트락스칼라 선언문(1982) ; 소규모 정주지의 활성화 방안 드레스덴 선언문(1982) ; 전쟁으로 파괴된 유산의 복구 로마 선언문(1983) ; 오늘날 이탈리아에서의 문화유산 보존활동 기념건조물, 건물군 및 유적보존에 관한 교육과 훈련 지침(1993)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1994) - 나라+20 : 유산 관행, 문화적 가치, 진정성의 개념(2014) 샌 안토니오 선언문(1996) ;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있어서의 진정성 기념건조물, 건물군 및 유적의 기록에 관한 원칙(1996) 스톡홀름 선언문(1998)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유산건조물, 유적 및 유적지구 주변 환경에 관한 시안 선언문(2005) 장소의 정신 보존에 관한 퀘벡 선언문(2008) 문화유산 재해위험관리에 관한 리마 선언문(2010) 개발 원동력으로서의 유산에 관한 파리 선언문(2011) 인간가치관으로서의 유산과 경관 프랑스 선언문(2014)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1)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련 주요 지침

(1) 유네스코 헌장(1945) 주요 내용

유네스코 헌장은 1945년 11월 16일 서명되었으며 1946년 11월 4일 20개 국가의 비준으로 발효하였다.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한 배경으로는 유네스코 창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국민들 간의 교육, 과학, 문화 관계를 통해, UN의 설립근거이자 UN헌장이 선포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1조 목적과 기능

1. 기구의 목적은 정의, 법적, 인권 그리고 유엔헌장에 의해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구분 없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보장된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구는

a) 모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회원국 국민들 간 상호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어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정을 권고한다.

b) 아래를 통해 대중교육과 문화의 보급을 새롭게 촉진시킨다.

-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교육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
- 인종, 성별 또는 어떠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구분 없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이상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들 간 협력을 제도화
-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준비하는데 가장 적절한 교육방법을 제안

c) 아래를 통해 지식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전파한다.

- 서적, 예술품, 역사 및 과학 기념물 관련 세계유산은 보존하고 보호하며 관련국들로 하여금 필요한 국제협정을 권고
-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인사들의 국제적 교류와 출판물, 예술적 및 과학적 관심의 대상, 여타 참고 물들의 교류를 포함하여 모든 지적활동 영역에서 국가 간 협력을 도모
- 모든 국가의 국민들로 하여금 생산된 모든 인쇄 및 출판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개시

3. 기구는 회원국들의 문화 및 교육체제의 독립성, 보전성(保全性),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7조 국내 협력기관

1. 회원국은 각국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교육, 과학, 문화 분야 관련 기관과 유네스코의 활동과 연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괄적인 정부 및 관련 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 설립이 선호된다.

2. 국가위원회 혹은 국내 협력기관은 총회 참석 대표단, 집행이사회 대표 및 교체대표, 기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자문 권한으로 활동하며 모든 이해 관련 사항에 있어 연락기관 기능을 담당한다.

10조 유엔과의 관계

유네스코는 실현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유엔 헌장 57조 규정에 언급된 전문기구로서 유엔과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는 유엔 헌장 63조에 따른 유엔과의 협정을 통해 발효되며, 동 협정은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동 협정은 양 기구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기구 간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유네스코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유네스코 권능 범위 내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협정은 유엔 총회의 유네스코에 대한 승인 및 유네스코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을 담을 수 있다.

11조 다른 전문기구와의 관계

1. 유네스코는 기구의 목적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갖고 활동하는 여타 정부 간 전문기구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동 목적을 위해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일반적 권한에 따라 그러한 기구, 기관과 효과적인 업무관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 및 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정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총회 혹은 조직의 목적과 기능이 기구의 권능 범위에 있는 여타 정부 간 전문기구 및 기관의 책임 있는 당국이 동 기구 및 기관의 자원 및 활동을 기구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총회의 승인 하에 동 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가능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기구는 다른 정부 간 기구와 상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유네스코는 동 기구의 권능 하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 비정부간기구와 협의 및 협력을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기구로 하여금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협력은 총회가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에 기구의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2조 법적 지위

유엔의 법적 지위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유엔 헌장 104조 및 105조는 이 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 주요 내용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세계유산협약이라고도 한다.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5년 12월 17일 발효되었다.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협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1959년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로 고대 누비아유적이 수몰위기에 빠지자 유네스코에서 국제적인 누비아 유적보호운동을 전개했고,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인류유산 보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72년에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은 1975년 스위스의 가입으로 20개국이 모두 비준하면서 협약을 발효했다. 대한민국은 1988년 9월에 가입했으며 북한은 1998년에 가입하였다.

세계유산협약의 가입국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의사결정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WHC)의 21개 위원국을 선출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것이다. 협약 사무국으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

가 있다. 이밖에 세계유산위원회 산하에 3개의 자문기구로,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자연유산을 담당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그리고 '국제문화재보존복원연구센터(ICCRROM)'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기금을 설치해 세계유산위원회가 집행하며, 가입국들의 분담금 및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협약내용은 전문 및 38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원조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을 '문화유산', 무생물·생물의 생성물(군)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는 자연지역, 지질학적·지형학적 형성물 및 위협에 처해 있는 동식물종의 서식지·자생지, 자연의 풍경지를 '자연유산'이라고 정의한다(1조, 2조). 협약국에 의한 국내적 보호(자국영역 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인정·보호·보존·정비, 다음세대로의 전달의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4조), 또한 국제적 보호(7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8~14조)와 세계유산기금(15~18 조)을 설치하였다. 유네스코에 설치된 세계유산 위원회는 각국의 준거에 기초하여 세계유산을 인정하고 '세계유산 등재 목록'을 공표하는 것 외에 국제적 원조조치의 검토 등을 실행한다.

(3)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1952) 주요 내용

1956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총회는, 고고학적 유산의 발굴조사 등의 행위가 국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8차 총회에서 결정한 바, 1956년 12월 5일 본 권고를 채택하였다.

I. 정의

1. 본 권고에 있어서 고고학적 발굴이라 함은 고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사 연구를 말한다. 이들의 조사 연구라 함은 땅을 파서 뒤집거나 또는 지표를 조직적으로 탐색하면서 행하는 조사 또는 가맹국의 내해 또는 영토의 해상 또는 수중에서 행하여지는 조사를 말한다.

2. 본 권고의 규정은 그의 보존이 역사상 또는 미술, 건축상의 견지에서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입국은 자국영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공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준을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권고의 규정은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고고학상의 가치를 가지는 기념물 및 이동 가능 또는 불가능한 물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II. 일반 기준

-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

4. 가입국은 고고학적 발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또 더욱이 본 권고의 규정에 따라서 그의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에 대하여 보증해야 한다.

5. 특히, 가입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고고학상의 탐색 및 발굴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것;
 (나)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급적 빨리 이것을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할 것;
 (다) 이들 규칙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과할 것;
 (라) 무신고물의 물수를 규정할 것;
 (마) 고고학적 지하의 제도를 확정하여, 이 지하가 국가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 뜻을 법률 속에 명기할 것;
 (바) 고고학적 유산의 주요 부분을 역사적 기념물로서 분류할 수 있게 고려할 것.

- 고고학적 발굴에 관한 보호기관

6. 전통의 상위 및 재원의 부동, 발굴관장 행정기관의 획일적인 조직체계를 모든 가맹국이 채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어느 종류의 기준은 모든 나라의 기관에 대하여 공통적이어야 한다. 즉:

(가) 고고학적 발굴기관은 될 수 있으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 또는 적어도 필요 한 긴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는 기관 - 으로 해야 한다. 고고학적 활동에 관한 일반행정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은 연 구소 및 대학과 협력하여, 고고학적 발굴에 관한 기술적 훈련을 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기관은 또한 그의 이동 가능·불가능을 불문하고, 기념물에 관한 중앙기록문헌(지도도 포함) 및 각 주요박물관, 도기보존소, 도상보존소 등을 위한 부가적 기록문헌을 작성해야 한다.

(나) 재원의 계속성은 하기 목적을 위하여 특히 정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기관의 양호한 운영을 위하여; (2) 학술적 출판물을 포함한 자국의 고고학상의 자원에 따른 사업 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3) 우발적 발견물의 관리를 위하여; (4) 발굴유적 및 기념물의 유지를 위하여.

7. 가입국은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 및 물건의 복구에 대하여 세심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8. 현장보존이 필요한 기념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동의가 요청되어야 한다.

9. 가입국은, 발굴이 고고학적 기술 및 지식의 진보를 향수하기 위해서 각 시대의 고고학적 유적의 상당수를 전부 또는 일부 손을 대지 않고 유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발굴중에 있는 각각의 대유적에는, 토지의 성질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유적의 지층 및 고고학적 환경 구성의 뒷날에 있어서의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증거지역이 미발굴 그대로 여러 구역의 지소에 있어서 보존될 수도 있다.

- 중앙 및 지역적 보존소의 형성

10. 고고학은 비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박물관 내지 발굴품 수장소의 설치 및 조직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비교연구의 작업을 쉽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용이 제한된 소규모적이거나 분산되어 있는 보존소 보다는 중앙 및 지역적 보존소를 예외적으로, 특히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에게는 지방보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들 시설은 물건의 양호한 보존이 유지되도록 충분한 관리시설 및 과학자를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1.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에는 관람자에게 전시되는 유물의 의의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육적 성격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박물관을 설치해야 한다.

- 대중교육

12. 권한 있는 당국은 과거의 유물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계발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계몽활동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역사교육, 어떤 종류의 발굴작업에 학생의 참가, 유명전문가가 제공하는 고고학 관계의 신문발표, 관광단의 편성, 발굴의 방법 나아가서는 그 성과에 관한 전시회 또는 강연회, 발굴된 고고학적 유적 및 발견된 기념물의 공개, 또한 평이한 편집의 전문논문 또는 안내서의 엮기 출판을 강구해야 한다. 대중이 이들 유적을 방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입국은 그의 수용편을 피할 수 있는 모든 필요조치를 강구한다.

(4)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보호에 관한 권고(1962) 주요 내용

1962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2차 유네스코총회에서는, 인류는 그의 전 역사를 통하여 때때로 인류의 자연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관의 미와 특성에 손해를 주어 이 손해가 세계의 전 지역의 문화적, 미적 나아가서는 생명적 유산을 파괴하여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962년 12월 11일 본 권고를 채택하였다.

I. 정의

1. 본 권고권고의 목적상,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라 함은 문화적 또는 미적 의의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전형적인 자연적 환경을 구성하는 천연 또는 인공적인 농촌 및 도시의 경관의 보존 및 가능한 한 그의 복구를 의미한다.

2. 본 권고의 규정은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II. 일반 원칙

3.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를 위해 채용되는 연구와 조치는 한 국가의 전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며, 특성의 경관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4. 채용할만한 조치의 선택에 즈음하여서는 관계 자연경관의 상대적 의의에 관하여서는 그에 적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들의 조치는 경관지의 특성과 규모와 위치 및 그것이 침해당하고 있는 위험의 성질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5. 보호는 자연의 경관지에 국한할 것이 아니며, 인간의 손에 의하여 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의 건조 및 토지의 투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는 도시 경관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한 보호는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접근에도 조화시켜야 한다.

6. 경관지의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예방 및 보수의 쌍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7. 예방조치의 목적은, 경관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8.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에 즈음하여서는 소음이 따르는 현대의 어떤 종류의 작업형식 또는 어떤 종류의 활동에 원인이 있는 위험에 대하여서도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9. 다른 방법으로서 계획 또는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경관지를 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공공 또는 사회복지상 절대적으로 요청될 때에 한해서 허가되어야 한다.

10. 보수적 조치는 경관지가 입은 손해를 복구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 한 원형으로 복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1. 가입국의 경관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의 임무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과학연구기관이 본 건에 적절하도록 법률 및 규정을 정비하여 법전화할 목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국과 협력하기 위하여 설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법규 및 과학적 연구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작업결과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독립의 정부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되지 않으면 안 된다.

III. 보호조치

12. 경관의 보호는 다음 방법의 사용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 (가) 책임이 있는 당국에 의한 일반적 감독;
- (나) 도시발전계획 및 지역수준, 농촌 및 도시수준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계획 입안에 의무조항을 삽입할 것;
- (다) '지역 별' 포괄적인 경관지 계획;
- (라) 격리된 풍치지구 계획;
- (마) 자연보호구 및 국립공원 설치와 유지;
- (바) 지역사회에 의한 풍치지구의 확보.

IV. 보호조치의 적용

30. 가입국에 있어서의 경관지의 보호를 규제하는 기초적 규범 및 원칙은 법적 강제력을 가져야 하며 이것들의 적용조치는 법률에 의거하여 책임 있는 당국에 위임되어야 한다.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5)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1972) 주요 내용

1972년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7차 유네스코총회에서는,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를 위한 방침이 가맹국간에 있어서의 영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오며, 이 분야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활동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총회에서 기 제정한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될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1956년),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보호에 관한 권고'(1962년) 및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협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1968년) 등의 문화 및 자연의 유산보호를 위한 국제 규약문서를 이미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이들의 권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및 원칙의 적용을 보충하고 나아가서는 광대할 것을 희망하며, 1972년 11월 16일에 본 권고를 채택하였다.

I. 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1. 본 권고권고의 목적상, '문화유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조각 및 회화작품(동굴주거 및 명문포함)과 고고학상, 역사상, 미술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 요소군, 또는 구조물.

건조물군: 독립한 또는 연속한 건조물군으로 그 건축물, 균질성 또는 풍경 내에 있는 위치에 의하여 역사상, 미술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유적지: 유적 지정학상의 구역으로서 인공과 자연과의 결합의 소산이며, 그 미관에 의하여 또는 고고학상, 역사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2. 본 권고의 목적상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무기적 및 생물학적 생물 또는 생성군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는 자연물로서 관상 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물 내지는 귀중한 또는 위협에 직면해 있는 동물 및 식물 등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과학상 또는 보존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연구역 또는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자연의 구역으로서 과학상, 보존상 또는 자연 경관상 또는 인공과 자연의 소산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II. 국가정책

3. 각 국은 자국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과학적, 기술적 및 문화적 수단과 기타 수단의 정비 내지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방침을 펼 수 있는 한 설정하여 발전 내지 적용시킨다.

III. 일반원칙

4. 문화 및 자연 유산은 하나의 부이며, 그 부가 영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그 부의 보호, 보존 내지 정비활용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가맹국은 그러한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은 전체로서 균질적인 통일체라고 생각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때의 경과와 더불어 문화적 또는 자연적 가치를 낳은 작품은 그토록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 해도 문화 또는 자연의 유산에 포함된다.

6. 일반적으로 어떠한 작품 또는 요소도 원칙적으로는 그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7. 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을 지도한다.

8.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은 나라 및 지방의 지역개발계획 및 종합계획의 기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위치설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침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가맹국은 그와 같은 방침을 작성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공적 및 사적인 관계기관이 협조적인 활동을 행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예방적 및 시정조치는 이들 유산을 구성하는 문화적 또는 자연적 성격에 따라서 현재 및 장래를 통하여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및 문화적 생활의 일부로 되는 기능을 각각의 물건에 주기 위한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보충된다.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조치를 행함에 있어서는 문화 및 자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동에 관련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한다.

10. 공적 당국은 될 수 있는 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보호 및 정비활용을 위한 재원의 증대를 꾀한다.

11.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에 관해서는 지역주민의 협력을 구하도록 하며, 특히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대한 존중 및 감시에 관한 의견과 원조를 구한다. 또한 민간으로부터의 재정적 원조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V. 보호조치

18. 가입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법령 및 기구에 따라서 결정한다.

VI. 교육적 및 문화적 활동

60. 대학, 모든 단계의 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은 미술사, 건축, 환경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정규 과정, 의의, 세미나 등을 마련한다.

61. 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 및 존중의 뜻을 널리 환기하기 위해, 교육적 보급 활동을 행하기로 하고, 또한 일반대중에 대하여 문화 또는 자연의 유산의 보호의 실태를 주지시키고 또 그 유산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인식 및 존중의 뜻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정보수단을 사용한다.

62. 문화 및 자연 유산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 있는 당해 유산의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를 더욱 고양하고 또 강화할 조치를 취한다.

63.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련된 모든 노력은 인간 및 그의 발전에 비례한 환경, 건축양식 또는 도시계획의 증적으로서 당해 유산에 내재하는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서 행한다.

64. 유산의 보호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당국에 자기의 권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그러한 당국을 지원 및 필요에 응하여 그들 당국을 위하여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한다.

이 단체는 향토사연구단체, 향토애호협회, 지방개발위원회, 관광단체 등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또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관광 및 해설부 견학을 조직한다.

65.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가능회복을 위해 행해지는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정보센터 및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또 전람회를 개최한다.

(6) 역사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1976) 주요 내용

1976년 10월 26일에서 11월 30일까지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이성적이며 타당성이 없는 재건축공사로 인해 역사적인 유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거나, 파괴 위험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역사적인 유산 및 그 주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권고안을 제정하였다. 총회에서는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기 제정된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1956),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196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협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1968),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를 위한 권고’(1972)와 같은 국제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국제규약 문서들에 함축된 표준과 원칙 적용을 보완하고 확산할 것을 바라며, 1976년 11월 26일 본 권고를 채택하였다.

I. 정의

1. 본 권고권의 목적상,
 (가) '역사 유적지'란 고고학적 또는 고생물학적 지역에 있는 건물군, 구조물 또는 개활지로, 그곳은 도시지역이나 시골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다. 이들의 가치는 고고학적, 건축적, 선사적, 역사적, 심미적 및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인정된다. 이들 '유적지'는 원래 매우 다양하여, 동질적이며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과 선사 유적지, 역사 유적지, 고대도시구역, 마을 및 촌락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중 후자는 일반적으로 현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나) '환경'이란 유적지를 둘러싸고 있어 정적 또는 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시간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적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것을 의미한다.
 (다) '보호'란 역사적 또는 전통적 지역과 그들의 환경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 보존, 복원, 수리 등을 의미한다.

II. 일반원칙

2. 역사 유적지와 그 환경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 인류의 유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들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시민들은 이들 유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들 유산의 가치를 이 시대의 삶 속에 구현시켜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 회원국의 조건과 일치하여 지구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이들을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모든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환경은 전체적으로 통일성 가져야 한다. 즉 유적지의 균형성과 특징이 그 주변의 모든 구성요소와 부합되어야 하는데, 그 구성요소에는 건물, 공간체제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상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간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4.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환경은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부적절한 이용과, 과도한 관리, 그릇되고 무분별한 인식으로 인한 역사 유적지의 원형 손상과 모든 종류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복원작업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역사 유적지에 그 나름의 특성을 부여하고 유적지내의 집단적인 건축물에 의하여 도출되는 조화와 심미감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현대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밀도 면에서 급속한 증가가 역사 유적지의 직접적인 파괴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 개발된 지역이 인접한 역사유적지의 특성과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다. 건축가들과 도시계획자들은 기념비적이며 역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적지가 훼손되지 않고 이들이 동시대인들의 삶 속에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6. 건축기술의 보편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모양 등이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보호는 각 나라의 역사적이며 사회적 가치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건축기술적인 면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III.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7. 각 회원국은 각 국가의 조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조치가 취해져, 그러한 것들이 현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정책이 국가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계획 등 모든 계획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보호정책을 이행하는 데는 각 개인과 민간단체들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7. 각 회원국은 각 국가의 조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조치가 취해져, 그러한 것들이 현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정책이 국가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계획 등 모든 계획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보호정책을 이행하는 데는 각 개인과 민간단체들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V. 보호조치

8.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는 위에서 기술한 원리와 앞으로 기술될 방법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각 국가의 헌법 및 법적 역량, 정부의 조직적 체계와 경제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행정적 조치

9.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모든 보호정책은 각 국가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에 입각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논의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 등을 제정하여 역사 유적지 및 그 주변 환경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러한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부합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15. 특히 빈민가로 된 유적, 블록 건축물 및 무너진 집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들은 보호정책에 합당하게 계획, 수정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계획도 무너진 집과 공공건축이 고건축 형태로 쉽게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재조정되어야 한다. 전적인 파괴는 역사적, 건축적인 가치가 전혀 없을 때만 고려되어야 한다. 보조금의 비율도 고건축 복원에 많이 할당되어야 한다.

-기술적, 경제적 및 사회적 조치

19. 역사 유적지에 대한 공간적인 상황 분석을 포함하여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 내용에는 고고학적, 역사적, 건축학적,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내용을 망라하여야 한다.

25. 보호계획 대상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및 슬럼가를 정돈할 경우에도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헐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8. 새로 짓는 건축물들이 역사적 건물의 공간적 구성과 배치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수립,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건축을 짓기 전에 도시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그 분석의 대상에는 건축群的 일반적인 특징과 주요특징(건축 고도의 조화, 색깔, 재료, 형태, 지붕과 벽면의 비율, 건물의 크기와 공간의 관계, 건물의 평균 크기와 위치 등)이 있다. 어느 한 구역의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재건축의 규모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9. 기념물의 주변 건물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기념물이 고립되는 일이 일반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념물이 옮겨져서는 안 된다.

31. 회원국들과 관계 집단은 기술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끊임없는 심각한 환경적 오염으로부터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역사 유적지 주변에 유해 산업의 유치를 막고, 파괴적인 효과가 있는 소음과 자동차 및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진동으로부터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과도한 관광개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복원은 복원된 기술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한 기술의 형태로 현재 남아있는 이 복원기술은 계속 존속시켜서 이들이 도입된 도시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문화적 복원정책은 역사 유적지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이들이 그들 주변 공동체의 문화발전

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 교육적 및 문화적 활동

61. 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 및 존중의 뜻을 널리 환기하기 위해, 교육적 보급 활동을 행하기로 하고, 또한 일반대중에 대하여 문화 또는 자연의 유산의 보호의 실태를 주지시키고 또 그 유산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인식 및 존중의 뜻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정보수단을 사용한다.

62. 문화 및 자연 유산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호, 보존 및 정비활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 있는 당해 유산의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를 더욱 고양하고 또 강화할 조치를 취한다.

2) 이코모스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련 주요 헌장 및 선언문

(1) 기념 건조물과 유적의 보존, 복원 국제 헌장(1964)

베니스에서 열린 제2차 국제 역사적 기념건조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회(1994년)에서 승인되었고, 이코모스(ICOMOS, 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에 의해 1965년 채택된 문서이다.

고대 건물의 보존과 복원의 지침이 되는 원칙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각 국은 자국의 문화와 전통의 틀 안에서 이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최초로 정한 1931년 아테네헌장은 아이콤(ICOM, 국제 박물관 협의회)과 유네스코(UNESCO)에서 작업한 국가문서로, 유네스코의 국제 문화재보존과 보수연구센터에서 만든 문서로 발전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인식의 고취와 비판적 연구의 수행으로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문제들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 졌다. 이제 아테네헌장에 담고 있는 원칙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새로운 헌장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아테네헌장을 새롭게 점검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64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베니스에서 개최된 국제 역사기념물 건축가 및 기술자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승인하였다.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정의

제 1 조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단일 건축 작품뿐 만이 아니라 특정문명, 중요한 발전,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견되는 도시 혹은 전원의 환경을 포함한다.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위대한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한 평범한 작품에도 적용된다.

제 2 조
기념물의 보존과 복원은 이 건축적 유산의 연구와 보호에 기여하는 모든 과학적 기술적 수단을 확보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목적

제 3 조
기념물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의도는 이를 예술작품으로서 뿐 아니라 역사적 증거로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보존

제 4 조
기념물은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된다는 점이 기념물 보존에 있어 근본이 된다.

제 5 조
기념물의 보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의해서 항상 추진된다. 그러한 사용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건물의 설계나 장식에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 내에서 (건물)기능의 변화에 의한 수정이 고려되어야하고 허락될 수 있다.

제 6 조
기념물의 보존한다는 것은 규모에 벗어나지 않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환경이 존재하는 곳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기념물의 형태가 색채와의 연관성을 깨뜨리는 신축, 철거, 혹은 수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기념물은 증거를 내포하고 있는 역사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환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기념물의 부분 혹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기념물의 보호를 위해 이전이 꼭 필요한 경우나 국내적, 국제적인 중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8 조
기념물의 일부인 조각, 회화, 장식은 이들의 제거만이 유일한 보존의 방법이 될 때에 한하여 기념물로부터 제거 될 수 있다.

복원

제 9 조
복원의 과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이다. 이의 목적은 기념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나타내는데 있으며, 본래의 재료와 원래 기록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둔다. 추측 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복원은 멈추어야 하고, 불가피한 추가의 작업은 건축구성에 있어 식별되어야 하고 당대의 표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원은 기념물의 고고학적, 역사학적 연구를 복원 전후로 동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통의 수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경우, 기념물의 보강은 현대수법을 이용해도 되나, 이의 효능이 과학적 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경험에 의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 11 조
기념물의 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적 요소는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식의 통일이 복원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이한 시대에 첨부된 작업이 기념물에 존재할 때, 그 이전 시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첨부된 작업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가려졌던 작업이 중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 가치를 가져 복원의 정당성을 더 부여 받을 수 있을 때 연관된 요소의 중요성에 관한 평가와 무엇이 파괴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복원작업에 책임을 지는 자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소실된 부분의 교체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 교체된 부분은 원래의 것과 구별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복원이 예술적, 역사적 증거로서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다

제 13 조
증축(첨가)은 이것이 건물의 중요한 (흥미로운) 부분, 전통적 환경, 구성의 균형과 주변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때에만 허용한다.

역사유적지

제 14 조
기념물의 사적지는 기념물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기념물이 품위 있게 나타내지기 위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보존과 보수 작업은 앞서의 원칙에 의해 시도되어야 한다.

발굴

제 15 조
발굴은 1956년 UNESCO에 의해 채택된 고고학발굴의 국제원칙에서 규정한 원칙과 표준에 맞추어 행해져야 한다. 폐허의 유적지는 반드시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그 건축적 특징 및 발견된 대상물에 대한 연구적 보존 및 보호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기념건조물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의미의 왜곡 없이 이를 드러내야 한다. 반면, 모든 추측에 의한 재건축 작업은 일단 배제되어야 한다. 오직, 재조립, 즉 존재하지만 흩어져 있는 기존 부재를 다시 조립하는 것만 허용된다. 조립할 때 사용된 재료는 항상 식별 가능하여야 하고, 재료의 사용은 기념건조물의 보존과 그 형태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출판

제 16 조
보존, 복원, 발굴의 모든 작업에는 정확한 문서화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진과 도면으로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비평적 보고서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의 작업, 제거, 보완, 재구성, 완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식별된 기술적, 양식적 형체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화 작업의 결과물은 공공기관의 문서보관소에 비치하고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출판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역사도시 및 도시지구의 보존 현장(워싱턴 현장, 1987)

이 현장은 도시, 도읍 및 역사적 중심지 혹은 구역 등을 포함하는 크고 작은 역사 도시 지구와 그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관한 것이다.

이들 도시 지구는 비단 역사적 기록의 역할을 넘어 전통적인 도시문화의 가치를 대변한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많은 지역이 어느 사회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산업화와 이에 의한 도시 개발의 여파로 위협을 받고 물리적인 퇴락과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파괴되기도 한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적, 사회적, 심지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코모스는 “베니스 현장”이라 불리는 “기념건조물과 유적의 보존, 복원 국제현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역사도시와 도시지구를 위한 국제현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칙과 목표

1.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사도시와 다른 역사적 도시지구의 보존은 모든 위계에서 일관된 경제, 사회개발 정책 및 도시, 지역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여야 한다.

2. 보존되어야 할 특색들은 도시 혹은 도시지구의 역사적 특성과 이 특성을 표현하는 물질적, 정신적 요소 모두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강조된다.

- a) 필지와 가로로 정의되는 도시 패턴
- b) 건물들과 녹지, 오픈 스페이스와의 관계
- c) 규모, 크기, 양식, 구법, 재료, 색채와 장식으로 정의되는 건물 내·외부의 형태적 외관
- d) 도시 혹은 도시 지구와 그 자연적, 인위적 주위 환경간의 관계
- e)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 혹은 도시지구가 취득해 온 다양한 기능들이 이러한 특색들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은 역사도시 혹은 도시지구의 진정성을 손상시키게 된다.

3.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여는 보존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장려되어야 한다. 역사도시와 도시지구의 보존은 무엇보다도 해당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역사도시 혹은 도시지구의 보존은 신중함과 체계적인 접근, 훈련을 요구한다. 개별적인 사례들은 특수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경직된 태도는 지향한다.

방법과 수단

5. 역사도시와 도시지구의 보존계획에 앞서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존계획은 반드시 관련된 모든 요인들, 이를테면 고고학, 역사, 건축, 기술, 사회학, 경제학을 포함한 요소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보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보존계획은 계획의 전체로서 역사적 도시지구와 역사도시와의 조화로운 관계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보존계획에서는 어느 건물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지, 어느 건물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보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느 건물이 희생될 수도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모든 개입이 일어나기 전에 지역 내의 기존 상태는 완전히 기록되어야 한다.

보존계획은 역사지구의 주민들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6. 보존계획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모든 보존활동이 본 현장과 베니스현장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7. 유지를 지속하는 것은 역사도시 혹은 도시지구의 효과적 보존에 있어 결정적이다.

8. 새로운 기능과 활동은 역사도시 혹은 도시지구의 특성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생활에 이 분야를 적용하려면 공공 서비스 시설을 신중하게 설치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9. 주택의 개선은 보존의 기본 목표들 중 하나여야 한다.

10.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조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의 공간적 배치는 특히 규모와 필지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주변과 어울리는 현대적 요소의 도입은 그 특징들이 지역의 풍요로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서는 안 된다.

11. 역사도시 혹은 도시지구에 대한 역사적 지식은 고고학적 연구와 고고학적 발견들의 적절한 보존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12. 역사도시나 도시지구내의 교통은 반드시 제어되어야 하고, 역사적인 구조 또는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차구역은 반드시 계획되어야 한다.

13. 도시계획 혹은 지역계획에 의해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한 경우, 결코 역사 도시 혹은 도시 지구를 관통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들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시켜야 한다.

14. 역사도시는 유산보호 및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자연재해 및 공해, 진동과 같은 불쾌함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역사도시 혹은 도시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예방 및 복구 대책은 반드시 해당 문화유산의 특수한 특성에 맞게 변용되어야 한다.

15. 주민들의 참여와 관여를 장려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부터 모든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정보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해야 한다.

16. 보존과 관련된 모든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적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고고학 유산의 보호와 관리 현장(1990)

이 현장은 고고유산관리 국제위원회에서 입안하였고, 1990년 제9차 로잔느 총회에서 비준된 문서이다.

고고유산은 과거 인간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고학자와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현재와 미래세대를 대신해, 또 이들의 유익을 위해 고고유산을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고고유산을 보호하고 합당하게 관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고유산의 보호는 고고학 기술의 활용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보다 폭넓은 전문적,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 일부 고고유산 중에는 건축구조물의 구성요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966년에 제정된 기념건축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베니스현장에 근거하여 보호가 수행되어야 한다.

고고유산의 또 다른 요소로는 원주민들의 삶이 있는 전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적과 기념건축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상기 언급한 그리고 기타 이유로 인해, 고고유산의 보호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효율적 협력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 학술연구자, 공공과 민간기업 그리고 일반 대중의 협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현장은 고고유산 관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원칙을 명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정부 당국과 입법부의 책임을 비롯하여 유산의 목록작성, 조사, 발굴, 문서작성, 연구, 정비, 보존, 보전, 보수, 정보, 재현, 대중 접근 및 활용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칙, 그리고 고고유산의 보호에 관계된 전문가들의 자격검증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본 현장은 학자들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지침이자 아이디어의 출처로 기여해온 베니스현장의 성공에 고무된 것이다.

본 현장은 범세계적인 타당성을 지닌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지역이나 국가의 특정 문제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여 본 현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정의와 서론

제조

“고고유산”이란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초 자료가 제공되는 물질유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 존재의 모든 흔적으로 구성되며 모든 인간 활동의 표현과 관계된 장소, 폐허화된 구조물, 모든 종류의 유적(지하 및 수중 유적 포함), 그리고 이들 유적과 관계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문화적 물질(동산 문화유산)을 포함한다.

통합 보호 정책

제2조

고고유산은 파손되기 쉽고 재생이 불가능한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토지 이용은 고고유산의 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통제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고고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문화, 환경, 교육정책 뿐 아니라 토지의 사용, 개발, 이용계획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고고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 검토를 통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고고학적 보호지역에 대한 선포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고유산의 보호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의 계획 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
 일반대중의 적극적 참여는 고고유산 보호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원주민 유산과 관계된 지역의 경우, 주민참여는 필수적이고 이러한 참여는 반드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은 유산의 통합 보호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법규와 재정

제3조

고고유산의 보호는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어야 하고 또한 집단적 대중의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관련 법규와 효과적 유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
 고고유산은 모든 인류사회의 공동 소유임으로 그 보호를 위해 적절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이다.
 법규는 현장보호와 연구의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각 국가와 각 지역의 요구사항, 역사 그리고 전통에 맞게 고고유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법규는 고고유산이 어느 개인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인류, 모든 인간집단의 유산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야 한다.
 법규는 관련 고고학 기관의 승인 없이 고고유적이거나 기념건조물 혹은 주변 환경을 파괴, 퇴락, 혹은 변경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법규는 고고유산의 파괴행위가 승인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완전한 고고학적 조사와 기록을 요구해야 한다.
 법규에 따라 고고유산의 적절한 유지, 관리 그리고 보존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고고유산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법률상 선별적 법적목록에 등재된 고고유산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미 보호대상 이나 새로 발굴된 유적과 기념건조물은 고고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규정 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계획은 고고유산에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물리적 위협 중 하나이므로 법률상 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이 전에, 고고유산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개발업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비용이 개발계획 비용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함께 명시되어야 하며, 법률상으로 고고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고고학적 조사

제4조

고고유산의 보호는 반드시 해당 유산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지식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일반 조사는 고고유산의 보호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고고학적 조사는 고고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 기본 의무사항이어야 한다.
 동시에, 조사목록은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자료 관련 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목록의 작성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심지어 피상적인 지식도 보호 대책의 시초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목록에는 다양한 차원의 중요성과 신뢰 도를 가진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제5조

고고학적 지식은 주로 고고유산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 기초한다. 이러한 조사로는 표본 조사 등을 통한 비 파괴적 기법부터 완전한 발굴까지 전 영역의 기법이 모두 포함된다.
 고고유산에 대한 정보수집을 이유로 조사의 보호적 혹은 과학적 목적에 필수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더 훼손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 바, 가능하다면 전체 발굴보다 비파괴적 기법인, 항공지표조사 그리고 표본조사가 먼저 장려되어야 한다.
 발굴은 항상 기록, 보존할 정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다른 정보의 손실, 심지어 기념건조물의 총체적인 파괴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실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발굴은 개발, 토지 사용의 현상변경, 도굴 혹은 자연적 파괴로 유적과 기념건조물이 위협을 받을 때 시행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발굴을 통하여 대중에게 유적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학문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순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은 유적도 발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굴에 앞서 유적의 의미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해 발굴은 부분적으로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원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발굴보고서는 합의된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관련 학계에 보내야 하며 또한 발굴 종료 후 적절한 시일 내에 조사 일정의 목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발굴은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원칙에 대한 1956년 유네스코 협약'에 명시된 원칙 및 합의된 국제적, 국가적 전문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관리와 보존

제6조

고고유산관리의 총괄적 목적은 기념건조물과 유적에 대한 원위치 보존으로, 여기에는 모든 관련 기록 및 수집물에 대한 적절한 장기 보존과 기록화가 포함된다.
 유산의 일부라도 새로운 장소에 옮기는 것은 본래의 배경에서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적절한 유지관리와 보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만일 발굴이후 유산의 적절한 유지와 관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고고유산은 발굴에 의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혹은 발굴이후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역민들의 개입과 참여는 고고유산의 유지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강구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토착민이나 지역의 문화집단에 대한 유산을 다룰 때 특히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기념건조물과 유적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피할 수 없는 바, 적극적인 유지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산의 적극적인 관리는 유산의 의미와 상징적 특징에 대한 학술적 평가에 기초하여, 유적과 기념건조물의 다양성의 표본이 될 만한 곳에 적용되어야 하고 더 알려지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기념건조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1956년 유네스코 권고안에 나타난 관련 원칙이 고고유산의 유지 및 보존에 적용되어야 한다.

설명, 정보, 복원

제7조

고고유산을 일반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이는 유산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설명과 정보는 최근 지식에 대한 보편적 해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종종 수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원은 두 가지 기능, 곧 실험적 연구와 해설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파괴를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출처에서 나온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복원이 가능하고 타당한 곳의 경우, 복원은 고고학적 유적 위에 바로 시행해서는 않으며, 복원되었다는 사실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격

제8조

고고유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수많은 여러 분야에서 높은 학문적 수준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적절한 수만큼 육성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교육제도 및 행동강령에 대한 표준이 마련, 운영되어야 한다. 학문적 고고학 훈련의 목표는 발굴로부터 원위치 보존이라는 보존정책상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고유산의 보호와 이해에 있어 토착민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유명한 기념물과 유적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 역시 감안해야 한다. 고고유산의 보호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최신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은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특히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국제 협력

제9조

고고유산은 모든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따라서 국제협력은 유산의 관리에 대한 표준을 개발,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고고유산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간의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위한 국제조직의 창설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해야 하고 졸업 후 연구과정을 위한 지역 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코모스는 조직 산하의 전문기구를 통해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위와 같은 측면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문요원간의 국제교류 역시 고고유산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코모스 주재 하에 고고유산 관리에 대한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존 원칙(1999)

이 문서는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그 문화적 중요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실천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된 문서이다. 역사적 목구조물이란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나 역사적인 장소의 일부로서, 전체 혹은 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는 모든 유형의 건물 혹은 구조물을 지칭한다.

이러한 목구조물의 보존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시대의 목구조물이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 역사적인 목구조물의 심원한 다양성을 고려한다.

- 역사적 목구조물을 구성하는 목조의 다양한 수종과 특성을 고려한다.
- 환경 및 기후 조건 변화에 부패와 열화에 의해 발생, 습도 변동, 빛, 곰팡이와 벌레의 공격, 마모, 화재 및 기타 재해로 인해 재료 목재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 취약성, 오용, 전통적 설계와 건축기법에 관한 기술과 지식의 상실로 인해 역사적인 목구조물이 점차 희귀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 이러한 유산 자원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조치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 베니스 헌장, 버라 헌장 및 관련된 유네스코와 ICOMOS 헌장 및 보호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다음의 권고안을 제정한다.

조사, 기록, 문서화

1. 베니스헌장 제16조 그리고 기념건조물, 건물군, 유적의 기록에 관한 이모코스 원칙에 의거하여 보존조치가 있기 전 구조물의 상태와 구성요소 및 조치에 사용된 자재에 대한 면밀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물로부터 제거된 잔여자재 혹은 구성재에 대한 대표적 표본 수집 및 관련 전통기법과 기술에 대한 정보 등 모든 관련기록은 수집되고 분류되며, 안전하게 보관되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문서에는 보존조치에 사용된 자재와 방법의 선택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목구조물의 부식과 구조적 결함의 원인과 상태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떠한 보존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진단은 문서자료에 의한 증거와 물리적 검사 및 분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물리적 상태에 대한 측정과 비파괴 시험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조치나 응급조치마저 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

3.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의 일관된 전략은 역사적 목구조물과 그 문화적 중요성의 보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조치

4. 보존과 보전의 주요 목적은 문화유산의 역사적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조치는 적절한 연구와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문제점이 있을 경우, 역사 구조물 혹은 유적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와 물리적 완전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련 상태나 필요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
5. 모든 예정된 조치는 다음의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 a)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야 하고,
 - b)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복원 가능해야 하며,
 - c) 나중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보존 작업에서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그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 d) 구조물에 포함된 증거물에 대한 향후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6. 역사적 목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조치는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조치가 해당 목구조물의 보전, 보존하기 위해 수리를 함에 있어 구조물 전체 혹은 부분을 해체하고, 이후 재조립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7. 조치를 시행할 경우, 역사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구조재, 칸막이벽, 외부 비막이, 지붕, 바닥, 문, 창문 등의 모든 자재에 대해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존 자재는 최대한 많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에는 회반죽, 페인트, 코팅, 석지 등과 같은 표면 마감도 포함되어야 한다. 표면 마감을 새로 하거나 교환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재료, 기법, 질감을 가능한 한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

8. 복원의 목적은 베니스헌장 제9조~제13조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역사 구조물과 그 내력 성능을 보존하고 현존하는 역사적인 자재가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조물의 역사적 완전성과 초기의 상태, 설계에 대한 가독성을 개선하여 역사적 구조물의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구조물에서 제거된 부재와 기타 부품은 목록화 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표본은 문서화 작업의 일부로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보수와 교체

9. 역사 구조물을 보수하는 데 있어 대체 목재의 사용은 유관한 역사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고, 부식 또는 손상된 부재나 부품의 교체가 필요 또는 복원의 요건에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부재 혹은 부재의 일부는 교체될 부재와 등급 혹은 적절하다면 더 우수한 등급의 동일한 수종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기존 자재와 유사한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체 목조의 합수율 및 물리적 특성은 기존의 구조물과 화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연삭기나 기계류의 사용을 포함한 세공과 건축기술은 가능한 원래 사용된 것에 상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못이나 기타 부수적인 자재는 원형을 그대로 재현해서 사용해야 한다.

부재의 일부만이 교체될 때에는 구조적 요건에 적합하다면 기존의 부분과 새로운 부분을 전통적 목조 맞춤을 이용해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10. 새로운 부재 혹은 부재의 일부는 기존의 것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체될 부재나 부재의 일부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부식 혹은 변형을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목재 부재의 표면을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부재와 새 부재 사이의 색상을 맞추는 데에는 적절한 전통적 기법 혹은 충분한 검증을 거친 현대적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11. 새로 쓰인 부재 혹은 부재의 일부는 나중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새김이나 그을린 표식 혹은 기타 방법을 이용해 구분되게 표시해야 한다.

역사 삼림 보존지역

12.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존과 보수에 알맞은 목재를 확보할 수 있는 숲이나 삼림 보존지역의 설정과 보호가 장려되어야 한다. 역사구조물과 유적의 보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은 그 작업에 적합한 목재 저장소를 설립하거나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현대적 재료와 기술

13. 에폭시 수지와 같은 현재적 재료 및 철근을 사용한 구조적 보강 등의 현대식 기술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되고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자재와 시공기술의 내구성과 구조적 거동이 충분히 오랜 시간에 걸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난방, 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과 같은 설비는 구조물 혹은 유적의 역사적, 미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화학 방부재의 사용은 주의 깊게 통제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확실한 이점이 있고, 공공의 안전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성공 가능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곳에 한 해 사용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

15. 역사적 목구조물의 문화적 중요성과 관련한 가치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보존과 개발 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이에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호와 보존, 보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립과 심층 개발을 장려하는 바이다.

이러한 교육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하는 범위 안에서 통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전략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작업과 관계하는 모든 관련 전문가와 업종, 특히 건축가, 보존 전문가, 기술자, 장인 그리고 유적 관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역사도시 보호 관리를 위한 발레타 원칙(2011)

이 문서는 2011년 11월 28일 제17차 이코모스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문서이다.

현재 도시 보전에 관한 국제적 사고의 틀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대한 의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유산의 보전과 그 가치의 고양을 담당하는 조직들은 그들의 기술, 도구, 태도, 그리고 많은 경우 계획과정에서 의 역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CIVVIH(ICOMOS-역사 도시와 마을에 관한 국제 위원회)는 기존의 참조 문서들을 바탕으로 워싱턴헌장(1987)과 나이로비권고안(1976)에 포함된 접근방법과 고려사항을 갱신했다. CIVVIH는 요구되는 목표, 태도, 도구를 재정의했다. 그것에는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의와 방법론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발전이 참작되었다.

수정사항에는, 연속성과 정체성 같은 무형적 가치, 전통적인 토지이용과 공동체 상호작용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통합 같은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 환경요소 등, 도시지역에 국한된 것보다 지역 규모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논제에 관해 확장된 인식이 반영되었다. 공통적 기반으로서 경관의 역할, 혹은 지형과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도시경관의 개념화에 관한 질문들이 이전보다 중요해 보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수정사항에는,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역사적 도시 형태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통적 필지 크기를 변경시키는 대규모 개발의 문제가 고려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유산을 도시 생태계의 일부인 필수 자원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역사 도시와 그 환경의 조화로운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축 계획과 개입의 많은 지침들이 이제 도시 확장을 제한하고 도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문서의 주요 목표는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에서의 모든 개입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들 원칙과 전략은 역사 도시와 그 환경의 가치를 우리 시대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삶에 통합하는 것은 물론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 정의

a. 역사도시와 도시지역
 역사도시와 도시지역은 유형과 무형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형 요소에는 도시구조를 비롯해 건축적 요소, 도시 내부와 주변의 경관, 고고학 유적, 파노라마, 스카이라인, 시선, 랜드마크 지구가 포함된다. 무형 요소에는 활동, 상징적·역사적 기능, 문화적 실천, 전통, 기억, 그리고 그것들의 역사적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문화적 참조물들이 포함된다.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은 사회의 진화와 그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구조다. 그것들은 광역적인 자연 혹은 인공 맥락을 이루는 필수 부분이며,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은 그것을 형성한 과거의 살아있는 증거다. 역사 혹은 전통 지역은 일상생활의 일부를 이룬다. 그것들을 보호하고 현대 사회로 통합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토지개발의 기반이다.

b. 환경(setting)
 환경이란 이러한 지역들이 인지되고 경험, 향유되는 정적 혹은 동적 방식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그것들에 직접 연결된 자연적, 인공적(역사 도시 유산이 위치한) 맥락을 의미한다.

c. 보호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보호에는 그것들을 일관성 있게 개발하고 현대적 삶에 조화롭게 적응시키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그것들의 보호·보전·강화·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포함된다.

d. 도시 보호지역
 도시 보호지역은 도시의 어떤 역사적 시기나 개발 단계를 나타내는 도시의 부분이다. 이것에는 기념물, 그리고 건물들이 그 장소가 보호되어야 하는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는 진정성 있는 도시조직이 포함된다. 도시의 역사적 개발도 보호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보호가 도시의 특징적인 도시적·종교적·사회적 기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e. 완충구역
 완충구역은 보호지역 바깥의 잘 정의된 구역으로, 보호구역의 문화적 가치를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영향에는 물리적·시각적·사회적 영향이 있다.

f.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유산 보호에 이용되는 모든 전략과 도구를 자세히 기술한 문서이며 동시에 현대 생활의 요구에 대응한다. 이것에는 보전과 모니터링 계획 뿐 아니라 법적, 재정적, 행정적, 보존 서류가 포함된다.

g. 장소의 정신
 장소의 정신은 그 지역에 특정한 정체성·의미·감정·신비함을 부여하는 유형·무형의 물리적·정신적 요소들이라고 정의된다. 정신은 장소를 만들고 동시에 장소는 정신을 구축하고 구성한다.
 (퀘벡 선언, 2008)

2. 변화의 측면들

역사도시와 도시지역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모든(자연적·인간적·유형·무형) 요소에 영향을 준다.
 적절히 관리되면 변화는 역사도시와 도시지역의 수준을 역사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a. 변화와 자연환경
 워싱턴현장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연관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도시(그리고 그 환경)는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그리고 자연재해와 오염, 진동 등의 문제로부터 유산을 지키기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워싱턴현장)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에서 변화는 자연의 균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자연자원의 파괴, 에너지 낭비, 자연주기의 균형 교란을 피해야 한다.

변화는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환경적 맥락과 공기·수질·토양의 질을 개선하며, 녹지 공간의 확장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피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역사 도시와 그 환경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점차 빈발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도시조직의 취약성과 더불어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기후변화는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의 확대로부터 도출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역사도시의 보호라는 도전에 적절히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b. 변화와 인공 환경
 워싱턴현장에는 현대 건축의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 요소들은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현대적 건축 요소의 도입은 유적의 가치와 그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도시의 풍요로움에 도움이 되고 도시의 연속성이라는 가치를 살아있게 한다.
 공간적·시각적·무형적·기능적 측면에서 건축적 개입은 역사적 가치, 패턴, 층위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건축은 역사지구의 공간구조에 부합해야 하고 그곳의 전통적 형태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시대와 장소의 건축적 동향을 적절히 표현해야 한다. 양식과 표현에 상관없이 모든 새로운 건축은 극단적이거나 과도한 대조, 도시 조직과 공간의 지속성에 대한 파괴나 교란의 부정적 효과를 피해야 한다.
 기존 건축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성의 연속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장소의 정신을 수용하는 분별 있는 창조성을 허용한다.
 건축가와 도시 계획가들이 역사적 도시맥락을 깊이 이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c. 용도의 변화와 사회 환경
 지역공동체의 특정한 삶의 방식 같은 전통적 용도와 기능의 상실, 대체는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이런 변화들의 성격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이동하거나 문화적 실천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이들 버려진 장소들의 정체성과 특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는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을 관광과 여가에 치우친 단일 기능을 가지고 일상생활에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역사도시의 보전은 전통적 실천을 유지하고 토착 인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요한다.
 임대료 증가에 따른 고급화 과정과 도시 혹은 지역의 주거와 공공 공간 퇴락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급화 과정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장소의 거주성, 궁극적으로는 그 특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장소의 전통 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의 보유는 특히 그것이 그 장소의 특성일 때 필수적이다.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은 대규모 관광의 소비 상품이 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그곳의 진정성과 유산 가치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활동은 수송 갈등이나 교통 혼잡 같은 이차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하도록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한다.

d. 변화와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존은 인공 환경의 보전과 보호만큼이나 중요하다. 장소의 정체성과 정신에 기여하는 무형 요소들을 정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것들이 지역의 특성과 정신을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개입 기준

a. 가치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에서의 모든 개입은 그곳의 유형·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참조해야 한다.

b. 질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에서의 모든 개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c. 양
 변화의 축적은 역사도시와 그 가치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 환경과 그 문화적 가치의 뚜렷한 향상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심대한 양적·질적 변화는 피해야 한다.
 도시 성장에 내재된 변화는 도시경관과 건축 조직에 대한 물리적·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통제되고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한다.

d. 일관성
 나이로비권고안의 3조에는 '일관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모든 역사지구와 그 주변 환경은 일관된 전체로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체의 균형과 특정 성격은 건물, 공간구성, 환경과 마찬가지로 인간 활동을 포함하는 구성 부분들의 융합에 의존한다. 따라서 평범할지라도 인간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유효한 요소들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는 안 되는 전체와 관련해 중요성을 갖는다."
 그 환경은 물론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은 전체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곳의 균형과 성격은 그곳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보호는 도시 구조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역사도시의 사회 조직과 문화적 다양성을 항상 존중하면서 모든 계획 단계에서 역사도시를 고려하는 일관된 경제적·사회적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e. 균형과 양립성
 역사도시의 보호는 의무 조건으로서 공간적·환경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균형의 보존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혼잡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개발을 돕는 것 뿐 아니라 도시구조에서 원주민이 유지되고(역사도시의 주민 혹은 이용자로서) 신입자가 환영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f. 시간
 변화의 속도는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다. 과도한 변화 속도는 역사도시의 모든 가치의 완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입의 범위와 빈도는 투명하고 규제된 개입 과정에 따라야 하며 타당성과 계획 문서 및 연구에 포함되고 그것들과 양립되어야 한다.

g. 방법과 과학적 규정
 "역사 도시나 도시지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고고학 조사와 고고학적 발견의 적절한 보존을 통해 확장되어야 한다." (워싱턴협약)
 역사 도시나 도시지역의 보호와 관리는 신중하게, 체계적 접근과 규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보존되어야 하는 도시 유산 요소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와 관리는 다학제적인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떤 보호 조치를 알리기 위해 유적과 그 환경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는 역사 도시나 도시지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적절한 계획에는 (맥락 분석, 다양한 척도의 연구, 구성 부분과 영향의 목록, 도시의 역사, 도시 진화의 단계 등) 최신의 정확한 문서와 기록이 요구된다.
 주민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대한 직접 자문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역사 도시나 지역의 보호는 일차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그들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h.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선출된 정부당국, 시 행정, 공공 행정기관, 전문가, 전문조직, 봉사 단체, 대학, 주민 등) 사이의 폭넓은 조직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성공적인 보호, 재생,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주민 참여는 정보 전달, 인식 확대, 훈련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도시 거버넌스의 전통적인 체계는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민주적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의 모든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과정과 역사도시의 보호는 주민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해야만 한다.
 인공 환경의 보존과 복원에서 사적 부문 참여자와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를 권장하고 재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i. 다학제성과 협력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보존을 위한 계획에 앞서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워싱턴 헌장)
 역사도시의 보호는 예비연구의 시작부터 많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연구자들, 공공서비스, 사기업, 그리고 폭넓은 대중의 협조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자들, 사회적·경제적 기구와 주민들이 다음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j. 문화적 다양성
 도시 보존 계획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역사도시에 거주한 여러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고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의 총합함 속에서 역사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세심하고 공유되는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제안과 전략들

a. 보존되어야할 요소들
 1. 모든 유·무형 요소들의 성격과 결합으로 그 핵심 특징이 표현되는 역사도시의 완전성과 진정성
 - 건물과 녹색 및 오픈 스페이스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가로격자, 필지들, 녹색공간들로 규정되는 도시패턴
 - 구조, 용적, 양식, 척도, 재료, 색채와 장식으로 규정되는 건물의 내·외부 형태와 모습
 - 도시 혹은 도시지역과 주변의 자연적 및 인공적 환경 사이의 관련성(워싱턴헌장)
 - 도시와 도시지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 획득한 다양한 기능
 - 문화적 전통, 전통적 기술, 장소 정신, 그리고 특정 장소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모든 것

2. 전체 안에서의 대상지, 그 구성 부분, 땅의 맥락, 이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

3. 사회 조직, 문화적 다양성

4. 재생 불가능 자원, 그것들의 소비 감축과 재사용 및 순환 권장

b.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기능과 활동은 역사 도시 혹은 도시지역의 특성과 양립되어야 한다."(워싱턴헌장)
 새로운 활동의 도입으로 전통적 활동이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어떤 것도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 맥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들로서,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새로운 활동을 도입하기 전, 관련된 이용자들의 수, 이용 기간, 여타 기존 활동과의 양립 가능성, 그리고 전통적 지역 업무(실행)에의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도시를 고유하고 대체불가한 생태계로 보는 개념에 의거해,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요구 또한 충족시켜야 한다.

c. 동시대 건축
 새로운 건물들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것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을 때, 동시대 건축은 여타의 도시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공간의 배치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대 건축은 그 땅의 척도를 존중하면서 자기표현을 찾아야 하고, 기존 건축 및 그 맥락 개발의 패턴과 분명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건물군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높이·색채·재료·형태의 조화, 파사드와 지붕을 구성하는 방식의 관련, 건물의 용적과 공간 용적의 관련성, 그리고 그것들의 평균 비례와 위치 등 주된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축 전에 도시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필지의 어떠한 재구성도 전체 조화를 해치는 매스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필지 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나이로비권고안 28조)

전망, 시선, 초점과 시각회랑은 역사 공간 지각의 필수 요소들이다. 새로운 개입들이 가해질 경우에 이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어떤 개입을 가하기 전 기존 맥락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새로운 건축물로부터 보이는, 그리고 그곳으로 바라본 시계를 확인, 연구, 유지하여야 한다.
 역사적 맥락 혹은 경관에 새 건물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히 그것이 새로운 활동을 위한 것일 경우 형태적, 기능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d. 공공 공간

역사도시에 있는 공공공간은 교통을 위한 핵심 자원일 뿐만 아니라 사색, 학습, 그리고 도시를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다. 거리가구의 선택을 포함하여 공공공간의 설계와 배치, 그리고 관리는 그 특성과 아름다움을 보호해야 하며 그 용도는 사회적 소통에 쓰이는 공공장소로 장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입과 용도를 추가할 경우, 공공 개방공간과 밀집된 인공 환경 사이의 균형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조절해야 한다.

e. 시설과 변경

역사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건물에 새로운 시설을 통합하는 것은 지역 행정당국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과제다.

f. 이동성

역사 도시나 도시지역 내의 교통은 규정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워싱턴헌장)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으로 주요 차도를 건설할 때는 역사 도시나 도시지역을 관통하지 않도록 하되 그곳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워싱턴헌장)
 대부분 역사도시와 도시지역들은 보행자와 느린 형태의 교통에 맞춰 설계되었다. 점차 이들 장소에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삶의 질도 감소되었다.
 교통 기반시설(주차장, 지하철역 등)은 역사적 조직이나 그 환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역사도시에서는 지면을 적게 차지하는 교통을 갖추도록 권장해야 한다.
 보행동선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차량교통을 극히 제한하고 주차시설은 축소해야 한다.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오염 없는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고 가벼운 이동수단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도로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연구, 계획해야 한다. 주차시설은 가급적 보호구역 밖에 위치시키고, 가능하면 완충구역 밖에 둔다.
 지하철과 같은 지하 기반시설은 역사 혹은 고고학적 조직이나 그 환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주요 고속도로망은 보호구역과 완충구역을 피해야 한다.

g. 관광

관광은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개발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사도시에서 관광개발은 기념물과 오픈스페이스를 고양하고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 전통적 활동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보호하는 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 관광활동은 주민의 일상 삶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 많은 관광객의 유입은 기념물과 역사지역의 보존에 위험하다.
 보전계획과 관리계획은 유산과 지역 주민에 보탬이 되도록 관광의 영향을 고려하고 그 과정을 조절해야 한다.

h. 위험요소

“역사 도시나 도시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해의 성격에 관계없이 예방과 보수 방안은 관련된 자산의 특정한 성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워싱턴헌장)
 보전계획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환경 관리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장려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i. 에너지 절약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모든 개입은 역사적 유산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제고해야 한다.
 역사지역에서의 새로운 건설은 에너지 효율적이어야 한다. 도시 열섬을 피하도록 도시 녹지공간, 녹지회랑, 그리고 다른 방안들을 채택해야 한다.

j. 참여

“주민들과 모든 지역 이해집단의 참여와 개입은 보전 프로그램의 성공에 필수적이며 권장되어야 한다. 역사 도시와 도시 지역의 보전에서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워싱턴헌장 3조)
 역사 도시지역의 계획은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참여적 과정으로 수립해야 한다.
 참여와 개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령의 어린이부터 시작해 모든 주민에 맞는 일반 정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 환경의 보전, 복원과 수복을 촉진하기 위해 보전 협회들의 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재정적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의식에 입각한 상호이해와 지역공동체와 전문가 집단 사이의 공통 목표 추구는 역사도시의 성공적인 보전, 활성화와 발전의 기반이다.

정보기술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지역 집단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당국이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권장함으로써 성공적인 관리 및 개선 계획을 위한 재정적 방안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k. 보전계획

“보전계획은 역사 도시지역 사이의 조화로운 관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워싱턴헌장 5조) 그것은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장소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무형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보전계획의 주요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명시하는 등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워싱턴헌장 5조)
 보전계획은 고고학적, 역사적, 건축적, 기술적, 사회학적, 경제적 가치의 분석을 포함하는 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보전 과업을 규정하고 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항구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
 보전계획은 변화의 조건, 규칙, 목표와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 보존되어야 하며, 어떤 것이 어떤 상황에서 보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소모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워싱턴헌장)
 어떠한 개입 이전에 기존 조건을 엄격히 기록해야 한다.
 보전계획은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특성을 풍부하게 하거나 보여주는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치와 특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보전계획에서의 제안은 요구된 표준과 규제 사항뿐만 아니라 법적, 재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 방식으로 분명히 표현되어야 한다.
 “보전계획은 역사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워싱턴헌장 5조)
 보전계획이 없는 경우 역사도시 내 모든 필요한 보전 및 개발 활동은 보전과 향상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l. 관리계획

각 역사 도시와 도시지역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문화적·자연적 맥락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고안해야 한다. 그것은 전통적 실천을 통합하고, 다른 현행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도구와 조율되어야 한다.
 관리계획은 유·무형 자원의 지식, 보전, 고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 문화적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 이해당사자 및 그들의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 잠재적 갈등을 확인해야 한다.
- 보존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 법적,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방법과 도구를 결정해야 한다.
- 강점, 약점, 기회요소, 위험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 적절한 전략, 작업 기한, 구체적인 활동을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계획은 참여적 과정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지역 행정당국, 공무원, 현장조사와 상세 기록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더해서, 계획에는 이해당사자들의 논의 결과와 이러한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논쟁에서 야기되는 갈등에 대한 분석을 부록으로 담아야 한다.

(6)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1994)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는 일본 문화청, 나라시의 초청에 의해 1994년 11월1일 ~6일 일본 나라에서 열린 세계유산 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회의에 참가한

45인(UNESCO, ICCROM, ICOMOS 관련 전문가)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다.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나라에 모인 우리 전문가들은 보존 분야에서 기존의 사고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존의 실무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포럼을 제공한 일본 당국의 호의와 지적 용기에 감사한다.
2. 또한 우리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 제출된 문화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회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적용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바람에 의해 제공된 토론의 장이 가치 있는 것임을 밝혀둔다.
3.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는 1964년 베니스 헌장의 정신으로 인식되며,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 현대 세계에 있어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베니스 헌장을 확장한 것이다.
4. 점점 더 세계화되고 획일화되는 세상에서, 때때로 공격적인 국가주의와 소수 문화에 대한 억압을 통해 문화 정체성을 위한 탐구가 추구되는 세상에서, 보존의 실무에 있어서 진정성을 고려함으로써 인한 본질적인 공헌은 인류 공동의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과 유산의 다양성

5. 우리 세계에 있어서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은 모든 인류를 위한 정신적이고 지적인 풍요로움의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다.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인류발전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6.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며, 다른 문화와 그들의 신념체계의 모든 측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문화적 가치가 상충하는 경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모든 상대방의 문화적 가치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7. 모든 문화와 사회는 그들의 유산을 형성하는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표현의 독특한 형태와 수단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이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8. 각자의 문화유산은 모두의 문화유산이라는 UNESCO의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 유산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우선 그것을 만든 문화 공동체에 있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공동체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에 더하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발전된 국제적인 헌장과 협약에 따라 그것들로부터 파생된 원칙과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문화공동체의 요구와 자신의 공동체의 요구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화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위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가치와 진정성

9. 모든 형태와 역사적인 시기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보존은 유산에 부여된 가치에 근거한다.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가치에 관한 정보의 근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혹은 진실하냐 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문화유산의 원형과 뒤이은 성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의 근원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진정성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10. 이러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베니스 헌장에서 확인된 진정성은 가치에 관한 핵심적인 자격요건이다. 진정성에 관한 이해는 문화유산의 과학적인 연구, 보존과 복원 계획, 세계유산협약과 다른 문화유산 목록 등 재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11. 관련된 정보의 근원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부여된 가치에 대한 모든 판단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문화 속에서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정해진 기준으로 가치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산을 고려하고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12. 그러므로 각자의 문화 속에서, 유산에 대한 인식은 유산 가치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된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13. 문화유산의 성격, 그것의 문화적 맥락,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문화유산의 진화에 따라,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정보원 다양성의 진가와 연관될 수도 있다.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부재, 사용성과 용도, 전통과 기술, 위치와 배치, 정신과 느낌, 그리고 다른 내적 및 외적 요소들이 정보원의 여러 측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원의 사용은 알고자 하는 문화유산의 특별한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과학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한다.

부록 1 (H. Stovel에 의한 추가 제안사항)

1. 특정 기념물과 유적지의 진정성을 정의하거나 결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문화와 유산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기계적인 공식이나 표준화된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2.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성을 결정하려는 노력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분석 과정과 도구를 발전시키는 문화를 장려하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한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을 가질 수 있다.
 - 진정성의 평가는 학제간의 협력과 모든 가능한 전문가와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포괄하려는 노력
 - 개별 기념물과 유적지에 있어서 부여된 가치는 진정으로 한 문화를 대표하고,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의 다양성을 나타내려는 노력
 - 앞으로의 관리와 관찰을 위한 실무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념물과 유적지에 대한 진정성의 특별한 성격을 명확히 기록하려는 노력
 - 변화하는 가치와 환경에 맞추어 진정성 평가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
3. 부여된 가치가 존중되는 것과,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가능한 한 이러한 가치에 관해 학제 간 그리고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또한, 각 문화의 다양한 표현과 가치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국제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촉진해야 한다.
5.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이 논의가 세계의 여러 지역과 문화로 지속되고 확산되는 것은 진정성을 고려하는 실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선결 조건이다.
6. 과거의 흔적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이르기 위해, 유산의 이 기본적인 차원을 사람들이 더욱 더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기념물과 유적지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이 문화유산 자체에 의해 대표되는 가치를 더욱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2

정의

보존(Conservation) :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알고, 그것의 물질적인 보호, 필요 시 유산에 대한 해설, 복원과 향상을 도모하는 모든 노력. (문화유산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정의된 것처럼 기념물, 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군과 유적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보의 근원(Information sources) : 문화유산의 성격, 세부사항, 의미와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글, 말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모든 자료.

(7) 유산건조물, 유적 및 유적지구 주변 환경에 관한 시안 선언문(2005)

본 선언문은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15차 이코모스 총회(2005년 10월 17일~21일)에 의해 2005년 10월 21일에 채택된 문서이다.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이코모스의 다년간의 노력을 기념하는 40주년을 맞이하여, 2005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코모스 중국 위원회의 초청으로 중국의 고도 시안에서 제15차 이코모스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경관과 자연경관 속에서의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주제 하에, 기념건조물과 유적지의 주변 환경에 관하여 폭 넓은 사례와 검토를 통하여 매우 유익한 성과를 얻었고, 급격한 변화와 개발상황에서 역사적 도시, 경관, 바다경관, 문화루트, 고고유적과 같은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에 있어 중국과 전 세계의 정부기관 및 기구,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배웠으며,

또한 “기념건조물과 유적의 보존, 복원 국제 헌장(베니스헌장, 1964)”과, 이로 말미암아 이코모스 국내 위원회 및 국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다수의 문건과 특히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1994), 아시아 역사지구 보전에 관한 호이안 선언문(2003), 이란 밤 문화유산 복구에 관한 선언문(2004), 아시아 역사도시 및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서울 선언문(2005)과 같은 문화유산 보존 국제회의와 전문가가 표명한 관심사항에 유의하고,

유네스코 협약 및 권고안, 즉 자연경관 및 유적의 아름다움과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196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권고(1968), 역사적 지구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1976),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2003),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유산협약(1972)과 그 운영 지침 등에 나타난 ‘주변 환경’의 개념에 관하여 주목하였다.

이들 문서에는 주변 환경을 진정성의 속성이자 완충지대 구축을 통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속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코모스, 유네스코, 그리고 관련 기관의 국제적이며, 다분야의 학문적 협력과, 비엔나 양해각서(2005)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역사적 도시경관의 진정성과 보존과 같은 주제를 계속 마련해 주고 있다.

이에 생활양식, 농경, 개발, 관광,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인재에 기인한 도시, 경관 및 유산 경로의 급속 또는 점진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변화 과정이 유산이 지닌 풍부한 진정성, 의미, 가치, 보전 및 다양성에 위협을 구성하는 바, 유산 건조물, 유적과 지역을 원래의 주변 환경이 유효 적절히 유지 보호되고 인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5차 이코모스 총회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 선언과 권고안을 채택하

고, 이를 법률 제정, 정책, 계획 입안 과정과 관리를 통해 세계의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을 원래의 주변 환경 안에서 보다 유효하게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 기구와 민간기구, 지역당국 및 모든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전달코자 한다.

기념건조물, 유적, 지역의 의미에 주변 환경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1. 건조물, 유적, 또는 유적 지역의 환경은, 유산의 직접적인 부분이거나 특성에 중요도에 기여하는 연장된 환경으로 정의한다. 주변 환경은 물리적 가시적 모습 이외에, 자연관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즉 주변 환경은 이를 창조하고 공간을 구성하며 현재의 역동적인 문화 사회 경제적 맥락을 유지하는 과거 현재의 사회적 정신적 관행, 관습, 전래된 지식, 이용 혹은 활동 그 밖의 무형 유산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2. 개별 건물 혹은 디자인된 공간, 역사적 도시 혹은 도시경관, 경관, 바다경관, 문화루트, 및 고고유적 등 다양한 크기의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은 인지된 사회적, 정신적, 역사적, 예술적, 미학적, 자연적, 과학적 혹은 기타 문화적 가치로부터 그 의미와 독특한 성격을 끌어낸다. 또한 이들은 물리적, 시각적, 정신적 및 기타 문화적 문맥과 주변 환경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의미와 독특한 성격을 창출한다. 이러한 관계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창조적 행동, 정신적 믿음, 역사적 사건, 활용 혹은 문화적 전통을 통한 오랜 누적적, 유기적 과정의 결과물이다.

다양한 문맥에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기록화하며 해석한다.

3.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기록하며 해석하는 것은 어떤 건조물, 유적, 혹은 지역에 대한 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정의하고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주변 환경에 대한 정의는 역사, 진화 및 유산 자원 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주변 환경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요인에는 도착 경험과 유산 자원 그 자체의 특성이 포함된다.
4.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학문적 접근방식과 정보 출처의 활용이 필요하다. 정보의 출처에는 공식 기록과 문서, 예술적 과학적 설명, 구술 역사와 전통지식, 해당 지역사회 및 관련 공동체의 시각, 그리고 견해와 관점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된다. 역사, 지형, 자연환경 가치, 용도 및 다른 요인을 포함한 문화적 전통, 의식, 종교적 풍습과 사상도 주변 환경의 유무형적 가치와 범위의 총체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주변 환경을 정의할 때에는 그 주변 환경의 특성과 가치 및 유산 자원의 관계를 신중히 표현해야 한다.

주변 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계획 수단과 관례를 개발한다.

5. 주변 환경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법률적 수단, 정책, 전략 및 관례를 이행하는 데는 그들이 작용하는 지역적 또는 문화적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일관성 지속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수단에는 구체적인 입법 조치, 전문적 훈련, 포괄적 보존 및 관리계획이나 체계의 개발, 그리고 적절한 유산 영향 평가 방법의 활용을 포함한다.
6.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보호, 보존과 관리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지침에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과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보존하는 보호지구나 완충지대를 주변에 설립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7. 계획 수립 도구에 주변 환경에 대한 점진적 혹은 급속한 변화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높은 고층건물, 풍경 및 새로운 공공 혹은 민간 개발과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 간의 간격은 주변 환경 내 시각적, 공간적 부적절한 훼손이나 부적절한 토지 사용의 예방과 관련된 평가의 주요 대상이다.
8.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중요성과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새로운 개발에 대해 유산 영향평가가 요구된다. 전승 구조물, 유적지 및 유적지구의 주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그 배경적 환경의 중요성과 독특한 특성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여해야 한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9.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변화 속도와 개별적 누적적 변화와 변형의 영향은 상시적으로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도시와 전원 경관, 생활 방식, 경제, 또는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형은 유산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중요성에 환경이 미치는 진정한 기여에 근본적이고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는 문화적 중요성과 독특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가 변경을 방지하거나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1. 모니터링은 유산의 쇠퇴 중요성의 상실 또는 진부화를 예방하거나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감상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식과 대책을 정의해야 하며, 보존, 관리 및 해석 관행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주변 환경이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중요성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기 위해 정성적 및 정량적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지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 외에도 조망, 도심 경관 또는 개방 공간에 대한 침해,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물리적 양상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주변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협력과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적, 단체, 다분야의 전문가 및 국제적 기구와 협력한다.

12. 관련기구 및 지역공동체와 협력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주변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주변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분야 전문가 참여를 일반적인 관례로 장려한다. 문화유산 관련 분야로 건축학, 도시 및 지역계획, 경관계획, 토목공학, 인류학, 역사학, 고고학, 민족학, 큐레이터-전시학, 도서관학이 포함된다.

주변 환경에서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을 파악, 보호, 재현, 해석하기 위해 자연유산분야의 기구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필수적인 관행으로 장려한다.

13. 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과 지식의 공유를 돕고, 보존 목표를 증진하고, 보호 수단의 효율성과 관리 방안 및 다른 수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 해설, 공동체 교육 및 대중의 인식 고취를 장려한다. 각각의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보전을 통해 개발된 경험, 지식 및 수단은 주변 환경 관리를 보완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유산 건조물, 유적 및 지역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연구, 평가 및 전략적 계획 수립에 경제적 자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주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전문가, 연구기관, 관련 기구 및 지역 공동체의 공동책임이며, 이들은 보존 관리의 결정을 할 때, 주변 환경의 유형 및 무형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문화유산의 재난·재해예방과 모니터링

1) 재난 및 재해예방

(1) 국제지침 : 문화유산을 위한 재난대비지침(1998, ICCROM)

세계유산센터(WHC)의 자문기구인 이크롬(ICCRU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에서도 문화유산을 위한 재난대비 지침(1998) 등을 제정하였는데,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을 위한 재난대비 지침

- 원제: Risk preparedness: A Management Manual For World Cultural Heritage (1998, Herb Stovel, ICCROM)

- 주요 목차

- 제1장 서론

- 1.2 세계유산보호협약에서의 재난대비

- 제3장 문화유산을 위한 재난대비원칙

- 3.1 개요

- 3.2 원칙

- 제4장 문화유산을 위한 재난대비방안의 개발

- 4.1 재난대비방안의 틀

- 4.2 문화유산 형태별 재난대비방안

- 제5장 화재

- 5.1 피해유형

- 5.2 화재대비전략의 개발

- 5.3 위험요소의 경감

- 5.4 화재대응계획 개발

- 5.5 전략구축: 기술과 계획수단
- 5.6 대응
- 5.7 복구
- 제7장 홍수
 - 7.1 문화재에 대한 피해
 - 7.2 홍수대비전략의 개발
 - 7.3 전략의 수립: 조정 및 기술적 조치
 - 7.4 대응
 - 7.5 복구
- 제8장 무력충돌
 - 8.1 문화재에 대한 피해
 - 8.2 전시문화재보호협약
 - 8.3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전략 개발
- 제10장 훼손평가를 위한 요약점검표
- 제11장 국가차원에서 문화유산 재난대응력 향상
- 부 록 문화유산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블루실드(Blue Shield) 운동

① 원칙(제 3장 2절)

다음의 표에 열거된 재난대비의 주요 원칙들은 특정 문화재의 유산적 특성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재난대비의 계획과 대응, 복구에 대한 각각의 원칙과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에 처한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계획과 준비이다.
 -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최상의 방법은 사전계획에서 유산특성을 파악하고 이 특성들에 대한 위협요소와 이에 적합한 대응수단에 주목하는 것이다.
2. 문화유산을 위한 사전계획은 유산 전체의 측면에서 인식되어야 하고, 유산의 건축물, 구조물, 부속물과 조경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 비상대처계획에는 동산, 비동산 문화재 간에 어떠한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구조물, 소장품, 조경에 대한 계획이 따로 따로 있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적인 대응계획이 있어야 한다.
3. 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보호의 사전계획은 그 유산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고려와 전반적인 재난 대비전략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유산의 재난방지전략은 전략을 개발, 최신화 시키기 위한 계획절차 측면과 이에 따른 특수한 대응계획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고려가 전략 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유산 관리자는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의 특성, 능력, 자원에 합당한 보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행정가, 계획입안자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난대비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 내에서 그 유산 가치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위기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사항이 유산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유산 보존주의자들에게는 스프링클러가 역사구조물 안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의 효과적인 사용은 생명과 재산과 유산을 살릴 수 있다.
 - 유산적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재난보호체계나 기계장치가 유산 가치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고안,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산에 민감하도록 디자인하는 접근법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폭넓은 대체방안을 갖추고 있다.
 5. 적합한 재난대처계획, 반응, 복구를 위해 문화유산목록과 그 중요한 특성, 과거 재난에 반응한 역사는 반드시 기록화 되어야 한다.
 - 문화적 중요성, 사용상의 중요성, 또한 구조물과 그 요소들이 전체적인 환경과 갖는 관계를 참고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 분석정보는 문화재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방대와 민방위대원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감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손상 혹은 손실된 요소의 정확한 복구(가능하다면)를 가능케 하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유산보호를 위해 제정된 문화재목록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재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문화재가 폐기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의 유산 가치는 부분요소들의 합 이상이며, 재해대처 계획은 단지 '중요한' 요소들 뿐 아니라 유적의 전체성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미래의 계획에 관련된 모든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재해 시 어떤 구조물이나 유적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구하고 연구하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재해 후(災害後) 기록은 또한 문화재 손실과 유적 및 그 요소들의 안정과 보호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 유적에 대한 완전한 기록의 존재가 부식이나 재해의 결과로부터 유적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대체하거나 재해에 방심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역사유적의 관리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의 재난대비 시각들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종종 관리프로그램은 방문객이나 거주자의 사용, 기후조건(기온, 습도)의 영향 같은 일상적 훼손요소의 측면에서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가능한 부식과 손실을 주는 인위적, 자연적 원천, 이에 따른 위기의 정도와 이를 축소 또는 경감시키는 적절한 수단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7. 유산소유자와 사용자가 비상대응계획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와 대응의 최전방은 언제나 유적지 거주자와 사용자일 것이다. 계획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참여는 제시된 방법과 효과적인 대응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이들이 몸소 알게 된 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대처계획 개발과정에 활용되도록 해줄 것이다.
 8. 비상시 유산의 특성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 유산보존노력은 긴급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손상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과거와 현재 인간들의 유·무형 기록으로서의 유산은 비상대처 시 최선의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
 9. 재난 후 모든 노력은 손상, 손실된 구조물이나 특성의 유지와 복구를 확실히 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 재해후(災害後) 평가의 경험이 있는 보존전문가의 참여는 손상된 건축물과 부속물들의 유지에 결정적이다. 일반 관찰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상태의 근거보다도 가시적인 손상이 종종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비싸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유사한 상황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 유산전문가가 해야만 한다. 이러한 평가에 소속될 수 있는 개개인을 사전에 파악해 놓는 것이 대처계획에서 중요하다.

-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 따라 문화유산의 즉각적인 안정화와 보호를 위한 수단이 권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지급은 유산의 위기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관련된 건축물규약과 기준은 재해후 평가에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중안전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히 손상된 문화재를 파악해야 한다. 대중안전을 희생시키지 말고, 자격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들이 유적지의 진정한 상태, 필요한 복구수단 및 긴급성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성급히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10. 보존원칙은 모든 가능한 부분에, 그리고 재난대비계획, 대응과 복구의 모든 단계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비상사태 전후 및 기간 동안의 문화재에 대한 기록화가 필요하다. 기록화는 안전하고(여러 장소에 보관), 믿을 수 있으며(기록을 실제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일일이 그 정확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곧바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재해후의 필요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손상된 유산에 필요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적, 규범적 제도에 보존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산관리자와 비상대책 담당자들은 보존원칙이 재난대비 계획, 대응과 복구의 전반적인 원칙의 통합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유산자원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공유된 원칙에 기초한 균형 잡힌 판단에 의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 적합한 전문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관리자는 벽화, 조각이나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물건, 특별한 건축 재료나 구조와 같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제대로 판별해야 한다.

② 문화유산 형태별 재난대비 방안(제 4장 2절)

이 지침서가 권고하는 내용들은 보편적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단일 구조물이나 건축물에도 관련된다. 만약 도시역사유적, 고고학 유적지 또는 문화조경에 각각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여기서는 다른 형태의 유산들을 위한 재난대비방안을 계획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공통요소와 그 핵심적 특징을 정의하고자 한다.

세계유산협약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문화유산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 기념물: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 기념물상의 조각과 그림, 고고학적 구조물, 명문(銘文), 동굴거주지와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물
- 건축물군(群): 건축, 동일성 또는 조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인하여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분리 또는 연결된 건축물군(群)
- 유적지: 역사적, 심미적, 민족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인공 또는 인공과 자연의 복합물과 고고학 유적지를 포함한 지역

건축물, 건축물군과 유적지의 범주는 기념물(단일 구조물, 여러 개의 건축물 또는 복합건축물), 역사적 거주 지역, 문화경관이라는 범주와 대체로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또한 고고학 유적지(특수한 경우의 기념물)를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별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재난대비향상을 위한 공통적인 고려사항과,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 역사적 거주 지역, 문화경관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

a. 재난대비계획

효과적인 문화유산 재난대비 계획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 준비를 강조하며, 표현과 내용에서 명확할 것.
- 단계적으로 계획할 것: 계획을 개발, 실험, 조정하고 만족스러울 때까지 재 실험하여 확정한다.
- 공동체 구성원과 관계공무원의 문화유산가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것.
- 좋은 보존사례의 최고 원칙만을 채택할 것.
- 중대한 위험요소와 이에 따른 문화유산의 취약점에 대해 공동체에서 잘 이해하도록 할 것.
- 수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결정하고 대응우선순위를 정의할 때 유산 가치와 위험요소 간의 균형을 유지할 것.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기 모의실험과 훈련을 통하여 계획을 실행해 볼 것. 실험은 실질적이고 인구유형에 따라 알려진 재난대응방식을 반영할 것. 예를 들면, 도시사람들은 재난이 닥치면 모이고 시골사람들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정 유적지에 있어 이러한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 국가적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예를 들어 문화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그리고 유적지, 지방, 국가 간의 명령체계를 예측, 인식하고 최신화할 것. 명령체계가 종종 불명확하여 재난 시 이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단일책임기관을 설정하고, 이의 지역담당자와 비상시 필요할지도 모를 다른 구호자원(기술지원, 치안,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지지 등)간의 연결고리를 설립할 것.
-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가치와 필요와 가능성을 이해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 단지 구조물만을 위해 계획하지 말 것.
- 대응과 복구계획에서 유산, 생명, 생계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접근법 개발에 유의할 것.
- 재난대비 전문가들에게 유산 목적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 것(예를 들어, 재료의 진정성을 유지할 것 등).
- 현실적인 체계를 사용하며 성취 가능한 목표에 중점을 둘 것. 국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재난의 순간에는 거의 그렇지 않다. 국제적 연계는 재난대비 수단과 체계(기록, 모니터링, 위기평가 등)의 비교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접근과 방법을 개발, 향상시키는데 가장 적합하게 쓰일 수 있다.

b. 비상대응계획

- 비상대응계획은 유산의 특수한 물리적 문화적 환경에 기초한, 입지(立地) 위주의 계획이어야 한다.

- 비상대응계획 설립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의 지지를 통합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문화적 인식, 공동체의 감시와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의 지지를 구성, 계획하는 것은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상당한 섬세함을 요한다.

2. 기념물

- 단일 소유권을 갖는 것이 기념물의 보호에 몇 가지 유리한 점-전문기술과 계획수행의 집중-을 제공하지만, 더 넓은 지리적 정치적 맥락에서 기념물의 재난대비 관리계획을 추진해야하며 국가 및 지방 네트워크와 체계들 간의 적절한 연계를 가져야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 기념물의 재난계획에는, 특정한 유산 가치와 그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 요소와 형태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 개인소유자(반드시 공공소유자와 유산이나 경험을 공유할 필요 없는)의 이해와 능력을 유익하고, 파트너관계(수평적 통합)로 관리되는 유적지를 다루어야할 필요와, 제안된 방법이 위에서 아래까지, 관리인에서 감독관까지(수직적 통합) 기념물 내 모든 개인과 기관들 연결해야할 필요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 기념물을 위한 계획은 1964년 베니스헌장과 ICOMOS 자료, ICOM 지침서와 기타 유럽의회와 같은 국제, 지역기구의 자료 등 관련 보존헌장이나 주요지침서에 나오는 원칙들을 참조해야 한다.

3. 고고학 유적지

고고학 유적지의 현재 상태는 과거 재난과 방치의 결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살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한다.

- 특히 유적지의 안전(약탈, 방화, 부품의 밀반출, 관광객과 거주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 유적지의 유산 가치와 다양한 부속물은 재난 시 대응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한다. 예를 들면, 기록상의 가치와 전시 가치를 구분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통합성을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통합성과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방식의 복구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 특정한 조건하의 특정한 위협에 대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예를 들면, 유물의 안정성, 주요 기후조건, 유산의 다양한 소재-진흙, 석재, 목재 등-에 화재, 물 등이 미치는 영향, 침수에 대한 취약도 등).

- 대중교육을 포함,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이티아(태국)처럼 고고학 유적지 내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자체 경계' 체제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 고고학적 유적지를 위한 계획은 고고학적 유적지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1956, 뉴델리/현재 개정 중), 1972년 고고학적 유산보호를 위한 유럽의회협약, 고고학적 유산의 관리를 위한 ICOMOS 헌장(1990, 로잔)을 포함하는, 적용 가능한 보존관련 자료에 언급된 원칙들을 참고해야한다.

4. 역사적 거주지

- 관리계획은 대응상황에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책임의 중복과 경쟁가능성을 언급해야 한다. 역사적 거주지의 일상적인 계획을 특징짓는 개발과 보존간의 긴장이 재난복구에도 존재하며, 지침이 없다면 개발 공동체는 험사리 재난을 이용할 수 있다. 복구를 위임받은 사람들과의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재난에 수행될 갈등을 예측하는데 노력하여 미리 복구지침을 확립해 놓는 것이다.

- 역사적 거주지에서의 재난대처계획은 거주지의 유산적 가치와 이러한 가치의 표현인 특별한 요소, 전통, 활용을 인식해야 한다.

- 재난계획은 서로 다른 경제적 법적 맥락(시장경제, 과도기 경제, 중앙통제 경제)과 특정 소유권, 책임형태, 전통과 체제를 반영해야 한다.

- 개인 소유자들과 긴밀하게 일하는데 있어 개인 소유자들이 공동체에 중요한 유산 가치를 선도적으로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대 소유자간의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관광회사, 언론, 보험회사 등 공동체의 이익에 관여된 모든 잠재적 요인들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역사적 거주지의 재난대처계획에는 역사도시에 관한 ICOMOS 헌장(1978, 워싱턴)을 포함하여 보존에 관련된 헌장과 지침서가 제공하는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5. 문화경관

- 문화경관에 관한 효과적인 재난대비방안에는 개인 토지 소유자, 시·지방·국가 차원의 정부관계자, 사업가, 기타 관계자들을 한데 모으는 협동전략이 있어야 한다. 많은 동반자들 간의 효과적인 재난대비방안은 강력한 협동체제를 요구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계획의 이행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임무를 가진 조정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다.

- 문화경관 내 거주자와 사용자간, 또한 재난대비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 간에 문화경관의 특수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문화경관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특징과 관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대응과 복구에 가능한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관련분야의 유네스코 전문가 회의나 세계유산보호협약 실행지침 24절의 정의를 포함하여, 문화경관 분야에서 인정된 보존원칙과 관례들을 참조해야 한다.

(2) 국내 문화재의 재난 및 재해 예방

① 법률적 근거

재난 및 재해에 관한 국내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해당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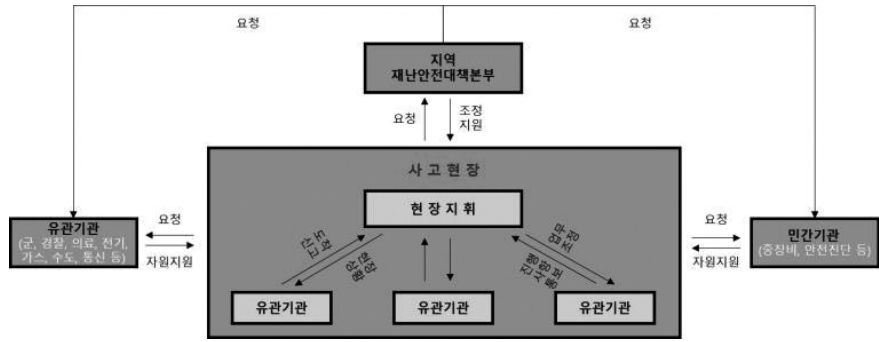
또한 동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집행계획 수립지침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 재난에 대한 예방책 및 대비책을 수록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② 재난 및 재해예방 시스템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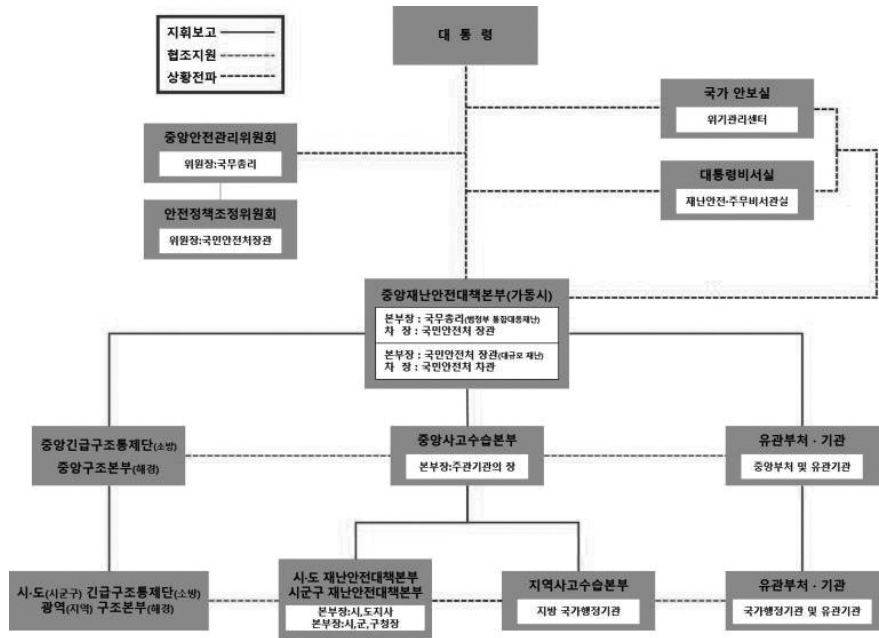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지휘·대응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재난현장 대응체계도

지역 재난관리의 총괄·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고 있으며 재난상황에 필요한 조치, 재난대응 정책방향 지시, 대응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별 임무 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③ 문화재 감시 및 모니터링 제도

문화재 정기모니터링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와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종합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 상시모니터링은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사찰 내에 상주하여 문화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활동이 매일 실시되고 있다.

재난·재해대비 모니터링은 지진에 대비하여 ‘목조·석조문화재 내진성능점검’ 활동이 1년에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가. 문화재 정기 모니터링(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문화재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에 따라 현재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표준화된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정기모니터링은 점검항목은 목조문화재와 석조문화재로 구분된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기단부, 축부, 지붕부, 단청 등 건조물 구조에 대한 내용과 부대시설 및 주위 환경에 대한 내용, 소방 및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내용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II.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목조문화재 정기조사 항목

항목		조사내용
기단부	기단	
	계단	
축부	초석/고막이	
	마루/구들	
	기둥 등 수직재	
	인방, 창방 등 수평재	
	벽체	
	창호/난간	
지붕부	공포	
	도리, 보 등 가구재	
	천장/달집	
	서까래/부연	
	지붕/기와	

단청	벽화		
	단청		
기타			
부대시설	담장, 석축, 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주위환경	주변 수목		
	주변 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석조문화재의 경우 침하/배수,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지의류·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등의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석조문화재 정기조사 항목

항목	조사내용		
침하 / 배수			
탈락 / 파손			
균열 / 각 부재 간 벌어짐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타			
부대시설	석축, 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 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주위환경	주변 수목		
	주변 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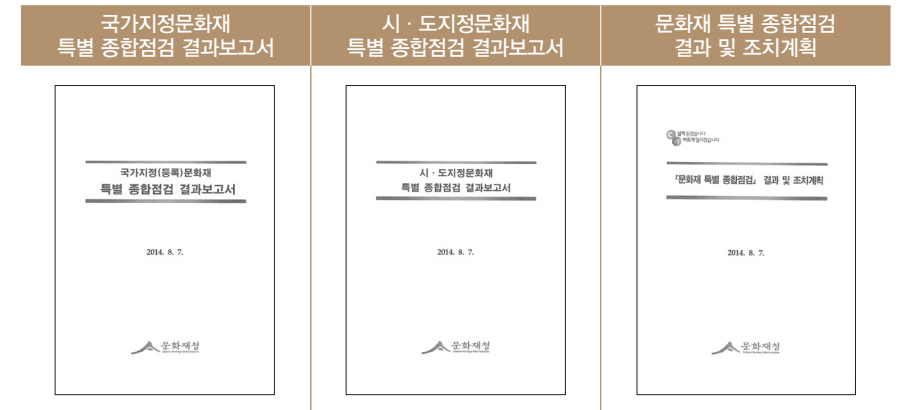
나. 지정문화재 전수조사(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은 2014년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수조사(문화재 특별 종합점검)를 말한다. 특별점

검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 모니터링의 주요 점검항목은 정기모니터링 항목과 동일하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정밀 모니터링 및 보수정비 등 적정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보고서(문화재청, 2014)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다. 문화재 상시 모니터링(상시 점검활동)

국가지정 문화재 중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은 목조건축물의 경우, 해당 문화재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며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는데, 이는 승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문화재 관리일지는 매일 기록되어 보관되며,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문화재 관리상황 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일반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한다. -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화 포함), 도난 훼손요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항상 염두에 둔다. -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및 수상한 차량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 - 문화재 내방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문화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문화재 일반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역으로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 석축의 이완·침하·균열 및 붕괴된 곳이 있는가? - 담장이 붕괴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 전원 및 배선·안전기 등 전기시설은 양호한가? - 건물 내·외에 화재 우려의 시설이 있는가? - 홍수로 인한 사태 우려가 있는가? - 화장실 및 관람 편의시설은 청결한가? - 마당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은가? - 문화재 내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은 없는가? - 경사지 법면의 붕괴우려는 없는가? - 기타 훼손되거나 불량한 곳이 있는가? 		
문화재 주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석축 등이 안전한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이 없는가?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이 없는가? - 문화재주변 배수시설 상태가 양호한가? - 문화재주변 수림/ 지형 등의 무단훼손이 있는가? - 문화재주변 시설물 훼손이 있는가? 		

라. 문화재 재난·재해대비 모니터링 : 문화재(목조 및 석조) 내진성능 기초점검

최근 국내에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진방재 대책을 위하여 2013년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재 내진성능 평가기준 및 진단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건조물문화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적으로 구조적·재료적·외관상 손상과 파손 부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결과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목조 및 석조문화재의 기초점검은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육안관찰과 기록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항목이 목조 및 석조문화재의 동적 거동 특성을 반영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어 일상적인 점검과 기본적인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 결과는 해당 문화재의 내진성능 수준과 지진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목조 및 석조문화재의 내진성능 기초 점검을 통해 결과의 판단을 정상·양호·보통·경계·위험 등 총 5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정상 및 양호는 내진성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보통은 변형의 우려가 없으나 주의 단계로 판단한다. 경계와 위험은 내진성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점검 및 안정성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초점검 결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는 문화재 전문가가 추가적인 기초진단 및 전문 진단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가 1차 평가를 수행하고 이 경우에도 내진성능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2차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화재 내진성능평가기준 및 진단매뉴얼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문화재 유형	조사내용	
목조문화재	지진 및 지반상태	지진구역 해당여부, 기반부 훼손상태, 주변 배수로 상태, 위험요소 등
	구조형식	우주의 상태, 층수, 내진주유무, 활주유무, 종도리 세장비, 반자유, 건축물 평면 세장비, 우주초석 세장비 등
	구조부재상태	기동직립상태, 수평부재 파손여부, 결구부 훼손여부, 구조부재 총해 여부, 지점부위 부식 여부, 건물내부 누수여부 등
	지붕면 상태 및 내부 상황	지붕면 굴곡 여부, 덧서까래 유무, 건물내부 문화재 유무 등
석조(석탑) 문화재	지반 및 주변현황	지진구역 해당여부, 주변 배수로 상태, 위험요소 등
	전체시스템 형태 및 구성	개구부 여부, 층수, 높이, 기반부 세장비, 전체형상의 세장비, 체감울 등
	부재 구성	기단부 구조형식, 탑신부 1층의 구조형식, 탑신부 2층 이상의 구조형식 등
	보존 상황	구성부재의 열화수준, 전체 구조의 기울어짐, 기단부 부재의 파손 및 변형, 탑신부 1층 부재의 파손 및 변형, 탑신부 2층 이상 부재의 파손 및 변형

목조문화재 내진성능평가 및 진단에 따른 결과판단(내진성능 적정성 판단)

구분	판단	적용수치	내진성능 평가결과	조치
평가결과	정상	19 이상	내진성능 있음	상태양호
	양호	17~18	내진성능 적절함	지속관찰
	보통	14~16	변형의 우려는 없으나 주의단계	문화재위원과 협의 필요
	경계	12~13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추가 점검 필요	1차 전문평가 필요
	위험	11 이하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함	1차 및 2차 전문평가 필요

구분	판단	적용수치	내진성능 평가결과	조치
평가결과	정상	13이상	내진성능 있음	상태양호
	양호	9~12	내진성능 적절함	지속관찰
	보통	7~8	변형의 우려는 없으나 주의단계	문화재위원과 협의 필요
	경계	5~6	내진성능 취약	전문평가 필요
	위험	4 이하	조속한 조치 필요	전문평가 후 보강조치

2) 재난 및 재해예방 매뉴얼

(1) 재난대응 매뉴얼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06년 5월에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의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문화재별 화재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산불재난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지진·지진해일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별 화재예방 매뉴얼

문화재별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위험시설의 점검, 소방 및 교육훈련 및 자체소방대 구성, 지역 유관기관과 화재예방 공조 체제 구축, 화재발생시 행동 및 문화재 소산 요령, 화재피해 복구 요령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문화재 유형별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모니터링) 매뉴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요 건조물 문화재 화재예방 점검 매뉴얼

주변 환경
1. 건조물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에 연못, 우물, 개울가 등 소방용수로 사용될 만한 곳과 산불화재 시 소방차량 및 소방헬기가 사용하기 가까운 위치에 대규모 소방용수 공급지가 있는가.
2. 소방용수로 쓸 수 있게 관리되어 있는가.(직접 취수가 가능한가)
3. 건물과 주변 산림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선(방화선) 확보가 되어 있는가.
4. 주변의 수목의 내화 수림인가.
5. 주변 1km 이내에 방화선(담장, 도로개설 등)은 구축되어 있는가.

6. 진입로는 소방차 진·출입 시 원활하게 되어 있는가.
7. 건조기 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시기의 바람 방향은
8. 화재 발생 시 인근 소방기관의 출동시간은
9. 당해 문화재 화재 발생 시 긴급동원 가능인원은

소화설비시설

1. 건조물 문화재 내 건물마다 옥외 소화전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노출, 소방호스 등 부속장비는 정위치에 있는가.
 - 대상건물에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화재진압이 곤란하지는 않는가.
 -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 당해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주변 건물의 화재 발생 시 진압이 가능한가.
 - 소화전 설치 수량은 부족하지 않는가.
2. 건물 내에 소화기는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적절한 수량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약품 충전은 되어 있는가.
 -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가.
3.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건물에 단독 방재설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 단독 방재설비의 설치 방식은
 - 단독 방재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4. 저수조 및 배관은 누수가 되지 않는가.
5. 소화전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경보설비

1. 화재 경보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 화재 경보장치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가.
 - 화재 경보시스템은 완전하게 작동하는가.
2. 화재 감지시설은 되어 있는가.
 - 화재 감지시설은 완전하게 작동하는가.

피난설비

1. 대피로는 2방향 이상인가.
2. 대피로는 5명 이상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가.
3. 사찰 성보박물관이 있다면 수장고는 확보되었으며, 크기는 적정한가.
4. 사찰 성보박물관이 없다면 유사시 방화시설을 갖춘 대피공간이 있는가.

교육상황

1. 방재 시 긴급연락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2. 경보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3. 옥외소화전,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의 사용법은 숙지하고 있는가.
4. 소방시설의 위치는 파악하고 있는가.
5. 대피로의 위치는 파악하고 있는가.6. 재난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7. 방화복은 갖추고 있는가.
8. 방재시설 관리담당자는 정해져 있는가.

건물 내 화재예방 시설점검

1. 방연제가 도포되어 있는가.
2. 액체계 소화시설이 있는가.
3. 건축물 내부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 있는가.
4. 건축물 내부의 동산문화재(불상, 탕화 등)를 옮길 수 있는 통로 및 소산대책은 있는가.
5. 건축물 내부 화재 감지시설이 있는가.
6.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를 일으킬 소지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7. 전기 배선 및 용량은 적정한가.
 - 전선이 노후하여 있지 않은가
 - 화재 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가 있는가.
 - 차단시설은 완전하게 작동하는가.

석조건축물

1. 중량 문화재를 옮길 수 있는 운반시설이 있는가.
2. 모래주머니 등과 같은 소화설비가 있는가.
3. 중량문화재를 묻을 수 있는 매몰 구멍이 있는가.
4. 방화 피복용(천막)이 있는가.
5. 석조문화재에 화재피해를 줄 수 있는 목조건물 또는 수목 등이 있는가.

기타

1. 전기안전점검(월1회) 및 소방시설점검(년2회)을 하고 있는가.
2. 전기시설의 지중화 필요는 없는가.
3. 가스용기 관리상태, 가스차단기 등 가스안전시설은 되어 있는가.

나. 사적지내 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

사적지내 화재예방은 중요 건조물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을 표준으로 사적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기타

1.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 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 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화기를 취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화재 예방상 인원 출입 통제 및 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한다.

다. 천연기념물 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

천연기념물 내 화재예방은 중요 건조물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을 표준으로 천연기념물 관리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화재예방 대책

1. 천연기념물 및 주변 소화시설을 구축한다.
 -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사찰, 당산목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의 피해 차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천연기념물 노거수 주변 화재 발생 시 불길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자동소화시설 등 설치를 검토한다.
2. 공개 및 축양 천연기념물 내 소화시설을 구축하도록 한다.
 - 화재감지기, 소화전, 소화기 등 화재 진압시설 보강 및 지속 설치
 - 노후 전기시설 정비 및 화재 시 전기 인입 차단장치 설치
 - 관람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동굴 등) 내 소방시설 설치
 - 안전 대피시설 설치(동굴 내 비상탈출구 설치 등)
 - 유사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 배치
 - 전기시설 등에 대한 전문기관 정기·수시점검 등 안전대행 실시
3. 산림형태로 구성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은 화재발생 예방 및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한다.
4. 천연기념물 주변 방화선을 설치하도록 한다.
 - 산림 내 천연기념물(자생지, 희귀식물, 서식지, 도래지 등) 주변 일정 거리의 방화선을 구축하여 화재 피해 방지 및 피해를 저감한다.(문화재별 현지어건에 따라 설치)

5. 노거수 주변 피뢰침을 설치한다.

- 낙뢰 피해 예상지역에 피뢰침 설치
- 강, 하천 등 수분이 풍부한 지역, 주위에 수림이나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 등

6. 천연기념물 주변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 천연기념물과 인접한 산림은 내화수종(활엽수림) 및 내화수림대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 자치단체 자체사업에서도 조림사업 시 내화수림대 조성 계획 적극 검토

7. 천연기념물 분포 위치도 작성·유관기관에 배포한다.

- 문화재 위치, 면적, 경계 등 표시
- 시설물, 진입로, 진입방법, 인근 저수지(담수지)등 표시
- 축양동물 등 소산 가능한 천연기념물의 경우 안전시설 소산계획 첨부, 협조 요청

라. 민속마을 화재예방 점검 매뉴얼

민속마을 내 화재예방은 건조물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을 표준으로 민속마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민속마을 내 소방계획의 수립 등

1. 민속마을 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마을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민속마을 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소산계획(동산문화재 등의 소산계획·경로·위치 등)을 수립한다.
3. 민속마을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 등을 위해 자체소방대 편성·운영한다.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소방대를 편성한다.
 - 마을별 자체 소방대는 임무별로 조직하여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며, 연1회 이상 비상소집 및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4. 관리사무소, 마을보존회 또는 자체소방대 등이 정기적으로 마을내 소방장비 및 시설을 점검한다.
5. 마을 보존회, 자체 소방대, 인근 소방서·경찰서, 담당 지자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마. 등록문화재 화재예방 점검 매뉴얼

등록문화재의 화재예방은 건조물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을 표준으로 등록문화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등록문화재의 소방계획의 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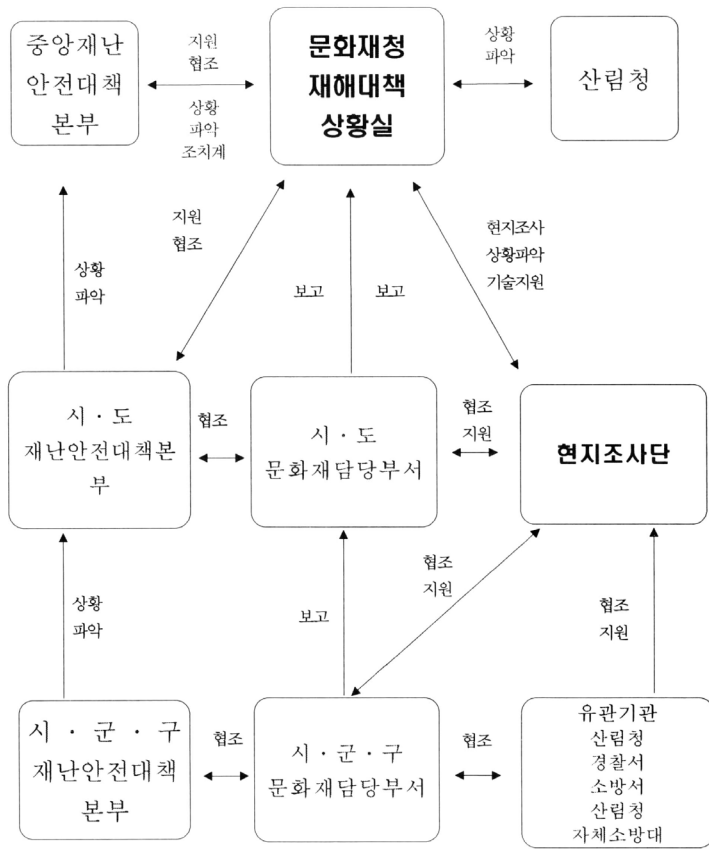
1. 등록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문화재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화재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물인 경우, 불법사용 및 취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관리하도록 한다.

바. 궁·능·원 화재예방 점검 매뉴얼

궁·능·원 화재예방은 건조물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을 표준으로 궁·능·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궁·능·원 내 문화재의 소방계획의 수립 등

1. 궁·능·원 화재대응 매뉴얼은 궁·능·원의 특수한 환경과 문화재 현황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적합하도록 수립한다.
2. 궁·능·원은 각 지구관리소 자체적으로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 및 시행토록 한다.
3. 궁·능·원은 자체 소방자위대를 설치 운영한다.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② 산불 재난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 및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산불재난 위기 상황 발생 시 문화재청이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산불 또는 일일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다수의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문화재청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및 절차와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중 대형 산불 발생 시 위기대응 지침과 상황보고 절차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응 방향

1. 초기 정보 부재에 따른 혼란기의 대응 매뉴얼 자동 시행
2. 신속한 산불상황 파악 및 전파
 - 유관기관, 대국민, 언론기관 등
3. 신속한 긴급대응 조치
 - 다수의 산불발생 지역 내 문화재 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문화재 보호조치
 - 유관기관 진화자원의 우선지원 요청 및 투입

대응 지침

1. 문화재 재해대비 상황반과 유관기관 간 통신망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2. 주요 문화재가 있는 산불지역에 주관기관(산림청) 및 유관기관에 진화자원(헬기 등)의 우선지원 및 투입 요청
3. 문화재 재해대비 상황반 구성 및 운영
 - 문화재 재해 상황파악 보고 및 문화재 보호조치
 - 산불피해지역 및 재해우려지역에 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문화재 보호 지휘체계 확립
 - 문화재 소재 산불지역에 유관기관 진화자원의 우선지원 요청 및 투입

산불확산 시 문화재보호 조치

1. 강풍 등 기상여건의 악화로 산불 확산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차량의 배치, 문화재 소산장소의 확보 등 유기적 상황전파와 문화재의 안전대피에 주력

3)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 지표

문화재청에서는 국내의 세계유산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산과 경관의 보존관리, 관광환경, 관리체계 등의 부문에서 구체적인 보존관리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 지표'(2012년)를 마련하였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는 일반지표와 전문지표로 구분된다. 일반지표는 모든 세계유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이며, 전문 지표는 개별 유산의 유형이나, 규모, 지리적 위치 등 특성에 맞추어 개발된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 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일반지

표와 함께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상시 모니터링 일반지표

상시 모니터링 일반지표는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재의 관리자나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방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시 모니터링 일반지표 분류

구분	일반지표 요약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유산에 대한 안내판, 장애인·노인·유아를 위한 시설
안내표시판	입구와 출구, 관람로, 세계유산 표석, 내용, 언어, 관리, 위험지역 등
홍보	방문객센터, 홈페이지 개설, 브로셔, 리플렛, 사용언어, 내용, QR코드 설치 등
편의시설	물품보관소, 편의점, 화장실, 휴지통, 자동판매기, 의료시설 등
보존 및 관리	근무자들(고용직, 임시직 모두 포함)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관람	적절한 보호구역과 관람구역의 설정, 관람시간, 관람유형
주변 환경	경관침해, 부적절한 시설물의 유무, 공해시설의 유무,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
가치의 지속성	문화재 지정 당시의 가치를 지속하는가의 여부, 재해에 대한 대비책 등
모니터링 관련시설	현황, CCTV의 설치, 자료의 축적, 모니터링 실시여부 등
통계	관람객 방문현황, 입장료, 보안검색 등

상시 모니터링 일반지표

구분	일반지표 항목	점검
접근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해당유산을 찾아가기에 용이한가?	√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유산을 찾아가기 용이한가?	√
	관광버스를 주차하기에 주차장의 공간 확보가 잘되어 있는가?	√
	승용차를 주차하기에 주차장의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는가?	√
	해당유산의 입구에 안내표시판이 있는가?	√
	전방 200m 부근에 해당유산의 안내표시판이 있는가?	√
	근처 버스정류장에 해당유산의 안내표시판이 있는가?	√
	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
	노인층을 위한 접근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
	유아를 위한 접근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
안내표시판	안내표시판이 있는가?	√
	해당유산의 출입구에 있는 안내표시판의 상태가 양호한가?	√

II. 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관람로의 안내표시판의 상태가 양호한가?	√	
	관람로의 안내표시판의 순서 배열은 혼란을 주지 않게 되어 있는가?	√	
	관광객 보호를 위한 위험표시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	
	문화재의 설명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	
	안내표시판에 외국어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가?	√	
	문화재의 설명 내용이 정확한가?	√	
	문화재의 표석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가?	√	
	문화재 표석이 훼손이나 오염 없이 잘 보존되어 있는가?	√	
	문화재 표석에 들어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	
편의시설	관광객을 위한 물품보관소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상점이 위치하여 있는가?	√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판매점이 위치하고 있는가?	√	
	적절한 장소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가?	√	
	적절한 장소에 휴지통이 위치하고 있는가?	√	
	적절한 장소에 자동판매기가 위치하고 있는가?	√	
	관광객을 위한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객을 위한 유모차 대여가 실시되고 있는가?	√	
	방문객 센터가 개설되어 있는가?	√	
홍보	유산에 대한 특별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	
	해당유산에 대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가?	√	
	홈페이지의 내용이 적절한가?	√	
	해당유산에 대한 리플릿(브로슈어)가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는가?	√	
	리플릿(브로슈어)의 내용이 적절한가?	√	
	기념 스탬프가 활용되고 있는가?	√	
	지역 마케팅이 운영되고 있는가?	√	
	QR코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	
	전시관(박물관, 자료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관람	보호구역의 구역설정이 되어 있는가?	√	
	보호구역의 시설이 적절한가?	√	
	관람구역의 구역설정이 되어 있는가?	√	
	관람구역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	
	관람시간은 적절한가?	√	
	해당 유산의 성격에 맞도록 관람유형이 정해져 있는가?	√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모니터링 시설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가?	√

	모니터링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
	CCTV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설치된 CCTV의 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	√
보존 및 관리계획	해당유산에 적절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 졌는가?	√
	임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상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문화유산 해설사 제도가 있는가?	√
	문화유산 해설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
	보존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관리하는 시스템이 수립되어 있는가?	√
	일일방문자수 관리(통제 등)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방문자 행동요령이 제시되어 있는가?	√
	입장 전에 방문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리인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화재방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
	보수공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	√
	연속 문화재일 경우 통합관리시스템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속 문화재일 경우 통일적인 행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연속 문화재의 관계자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가?	√	
가치의 지속성	문화재 지정 당시의 가치를 지속하고 있는가?	√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주변 환경	경관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
	주변에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가?	√
	문화재 주변에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위생상 청결한가?	√
통계	유료 관람객의 수의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무료 관람객의 수의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전체 입장료의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안검색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 유형별 상시 모니터링 전문 지표

문화재 유형별 상시 모니터링 전문 지표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유산의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방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시 모니터링 전문 지표(1) : 고고학 유적지

부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노출유적	형태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
	유적 내부에 균열 등이 발생한 곳이 있는가?	√
	유적 내부에 물고임 현상이 확인되는 곳이 있는가?	√
매장유적	매장유적에 대한 설명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성토된 부분에 훼손이 있는가?	√
	잔디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
공통	노출된 석재 유구 등에 훼손이 있는가?	√
	유적지 내부에서 경작 등 무단점유 행위가 확인되는가?	√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훼손이 발생한 곳이 있는가?	√
	유적 보호 울타리의 훼손이 있는가?	√
	우천 시 배수는 잘 되고 있는가?	√

상시 모니터링 전문 지표(2) : 목조 건축물 / 석조 시설물

부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바닥	마루 청판사이가 벌어진 부분이 있는가?	√
	마루 귀틀의 처짐, 부식, 뒤틀림 등의 현상이 있는가?	√
	전돌의 흐트러짐이나 균열이 있는가?	√
기둥·벽	현판과 주련이이 제대로 붙어 있는가?	√
	기울어진 기둥이 있는가?	√
	기둥 상부가 갈라졌는가?	√
	기둥 하부가 부식되었는가?	√
	갈라지거나 이탈한 주두가 있는가?	√
	창방/평방/도리/장여 중 갈라진 부재가 있는가?	√
	창방/평방/도리/장여 중 기울어진 부재가 있는가?	√
	인방재, 수장재와 벽체 사이에 틈이 발생하였는가?	√
	기둥과 벽선이 벌어진 부분이 있는가?	√
	벽체에 갈라진 부분이 있는가?	√
	벽체 회벽이 탈락한 부분이 있는가?	√

	벽체에 배부름 현상이 일어났는가?	√	
	벽에 낙서가 있는가?	√	
	목부재에 충해의 흔적이 있는가?	√	
	낙숫물이 기단위로 떨어져 목구조의 하부를 적시고 있는가?	√	
창호	창호의 개폐에 지장이 있는가?	√	
	창틀이 돌출 되었는가?	√	
	문선의 갈라짐이나 뒤틀림 현상이 있는가?	√	
	창호 부재의 손상, 뒤틀림 현상이 있는가?	√	
	창호에 설치된 철물의 손상이 있는가?	√	
	창호지가 손상되었는가?	√	
지붕	기와가 탈락한 부분이 있는가?	√	
	기와 사이로 풀이 자라거나 기타 식물에 의한 피해가 있는가?	√	
	누수 되는 부분이 있는가?	√	
	추녀나 사래의 갈라짐이나 뒤틀림, 처짐 현상이 있는가?	√	
	평고대, 연암의 부식, 뒤틀림 현상이 있는가?	√	
	서까래의 부식, 뒤틀림, 처짐 현상이 있는가?	√	
	서까래 사이의 양토나 당골막이가 탈락한 것이 있는가?	√	
	벌집이나 새집이 있는가?	√	
	갈라지거나 파손된 반자청판이 있는가?	√	
	공포 부재나 대공이 갈라지거나 이탈한 것이 있는가?	√	
	단청이 탈락한 부분이 있는가?	√	
	기단·계단	기단석에 박락, 균열이 일어났는가?	√
		귀틀석 모서리가 파손되었는가?	√
침하되거나 깨진 전돌이 있는가?		√	
계단 소맷돌에 박락, 균열이 일어났는가?		√	
계단석에 박락, 균열이 일어났는가?		√	
파손이나 균열이 일어난 계단석이 있는가?		√	
가라앉거나 어긋난 계단석이 있는가?		√	
초석		초석에 균열현상이 있는가?	√
	초석이 침하되거나 이탈되는 현상이 있는가?	√	

상시 모니터링 전문 지표(3) : 건축물·시설물 외부공간

부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바닥	빗물은 잘 빠지는가?	√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
수목	고사한 수목이 있는가?	√
	병해충이 발생한 수목이 있는가?	√
담장·석축	석축의 파손 이탈, 균열, 박리 및 변색 등의 손상이 있는가?	√
	석축에서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
	암석 표면에 미생물이나 지의류가 발생되어 있는가?	√
	기와 표면에 미생물이나 지의류가 발생되어 있는가?	√
	탈락되거나 파손된 기와가 있는가?	√
	담장이 갈라지거나 파손되었는가?	√
	담장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 있는가?	√

상시 모니터링 전문지표(4) : 석조 문화재

부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석조물 공통	석재 표면에 미생물이나 지의류가 발생되어 있는가?	√
	암석의 박락, 균열이 일어났는가?	√
	기울었는가?	√
	기단부 석재가 가라앉거나 어긋나 있는 곳이 있는가?	√
	어긋난 틈으로 식물을 비롯한 이물질이 관찰되는가?	√
	석재 간에 크게 어긋난 부분이 존재하는가?	√
	기단석이 돌출되거나 밀려난 곳이 있는가?	√
	기단석 간의 틈이 벌어진 곳이 있는가?	√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곳이 있는가?	√
	기단의 덮개석에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
	기단의 상부나 측면으로 흙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가?	√
	곤충 및 조류의 피해가 있는가?	√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어 있는가?	√
	낙서, 오염 등의 훼손이 있는가?	√
	문화재 보호 울타리의 훼손이 있는가?	√

상시 모니터링 전문 지표(5) : 성곽 문화재

부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석성	성벽의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 곳이 있는가?	√
	성벽의 성돌이 이탈된 곳이 있는가?	√
	면석에 균열이 발생한 곳이 있는가?	√
	성벽의 유실이 발생한 곳이 있는가?	√
	지반의 침하가 발생한 곳은 있는가?	√
토성	토축이 유실된 부분이 있는가?	√
	지반의 침하가 발생한 곳이 있는가?	√
공통	성벽 표면에 초본식물이 자생하고 있는가?	√
	성벽 상부에 경관을 저해하는 수목 및 초본식물이 자생하고 있는가?	√
	우천 시 배수는 잘 되고 있는가?	√
	성곽의 가시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

상시 모니터링 전문 지표(6) : 능·묘 문화재

부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봉분	형태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
	잔디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
내실	내부 석조물에 균열 등이 발생되었는가?	√
	내부에 이끼류와 초본류 등이 자라고 있는가?	√
	내부 물고임 현상이 확인되는 곳이 있는가?	√
	내부 보존환경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통	우천 시 배수는 잘 되고 있는가?	√

상시 모니터링 전문 지표(7) : 경관·주변 환경

부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조망	야간 조명상태는 양호한가?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
	주변 경관이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는가?	√
	스카이라인에 돌출된 요소가 있는가?	√
경관	유적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시설물이 있는가?	√
	유적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색상이 존재하는가?	√
쾌적성	소음으로 인한 불편감이 있는가?	√
	쓰레기 처리 및 위생시설은 확보되어 있는가?	√

자연환경	유적경관을 저해하는 수목이 있는가?	√
	주변지형이 훼손되거나 변형된 곳이 있는가?	√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훼손이 발생한 곳이 있는가?	√
	소나무 군락에 병충해나 훼손이 발생한 곳이 있는가?	√

(3) 지속가능한 관광 평가지표

관광 평가지표의 결과는 문화재를 방문하는 탐방객을 고려하고 관광계획 및 관광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가 요구되거나, 재정적·기능적 지원 사항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 관리자나 해당분야 관련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 모니터링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관광 평가지표

분류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경제성	관광과 연결되는 지역산업이 있는가?	√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관광객에 의해 소비되는가?	√
	상품가격 등이 적당한 수준인가?	√
	관광객 1인당 소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가?	√
주체성	관광서비스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지역에 거주하는가?	√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가?	√
	지역단체와 여행사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회가 있는가?	√
접근성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주차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프로그램	축제 및 행사가 관광객에게 개방되는가?	√
	새로운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광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시행되는가?	√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가?	√
관광객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
	유적별 방문객 규모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광객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
	관광객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

관광 시설	조명·전기	시설이 노후 또는 불량한 곳은 없는가?	√
		시설이 추가되어야 할 곳은 없는가?	√
	편의·휴게	시설이 노후 또는 불량한 곳은 없는가?	√
		시설의 상태는 청결한가?	√
		시설이 추가되어야 할 곳은 없는가?	√
	전시·홍보	시설 내부 전시물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시설의 훼손이 확인되는가?	√
	안내판	위치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 가?	√
		시설이 추가되어야 할 곳은 없는가?	√

4. 문화유산 보존관리 국내외 사례

1) 기념물

기념물이란 단일 건축물이나 기념물, 기념적 성격의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또는 조각, 금석문, 동굴주거 등이나 이와 같은 유산들의 조합을 포함하여,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1) 석굴암과 불국사

석굴암과 불국사는 1995년 등재기준 i), iv)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는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석굴암 일대와 불국사 내 문화재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석굴암 진입로에는 낙석이 떨어져 도로가 파손됐고, 불국사 내 다보탑(국보 20호)은 상층 난간석이 내려앉았으며 대웅전(보물 1744호)은 용마루와 담장 일부가 파손됐다. 이외에도 불국사의 관음전과 나한전의 담장 가와가 파손되는 등 석굴암과 불국사 내 지정문화재 10건 중 4건이 지진피해를 입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세계유산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략한 진술

경주시 동남쪽의 토함산(吐含山)에 위치한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이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로 원형의 주실 중앙에 본존불(本尊佛)을 안치하고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불국사는 인공적으로 쌓은 석조 기단 위에 지은 목조건축물로 고대 불교 건축의 정수를 보여 준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기준 i):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인들의 창조적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로 만든 불교 건축과 조각으로 경주 토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국 고대 불교예술의 정수를 보여 주는 걸작이다.

기준 iv) :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전후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건축과 조각이다.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석굴과 불상 조각에 나타난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 불국사는 석조 기반과 목조건축이 잘 조화된 고대 한국 사찰 건축의 특출한 예로서 그 가치가 있다.

완전성

석굴암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불국사는 불법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 구현한 걸작으로, 이들 두 유산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불국사와 석굴암 전 영역과 두 유산이 위치한 토함산이 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진정성

석굴암 본존불과 그 주위 대부분의 석조 조각과 건축의 형태는 8세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높다. 불국사 경내의 석조 유산은 부분적 보수 과정을 거쳤을 뿐 신라 시대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목조 건축물들은 16세기부터 보수와 복원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든 복원 사업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전통 재료와 기술이 사용되었다.

(2) 보야나 교회, 불가리아(Boyana Church, Bulgaria)

불가리아 보야나 교회는 1979년 등재기준 ii), iii)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보야나 교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간략한 진술

불가리아 보야나 교회는 각기 다른 세 시기에 걸쳐 지어진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가장 동쪽에 있는 교회는 11세기, 그 옆에 두 번째 건물은 13세기 초 세바스토크라토 칼로안이 지시하여 2층짜리 건물로 증축되었으며, 1259년에 완성된 프레스코 화는 중요한 중세 회화로 평가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19세기 중반에 지역주민의 기부를 통해 지어졌다. 본 유산은 동유럽의 중세 미술을 완전히 보존한 기념물에 해당한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기준 ii) : 건축적인 면에서, 보야나 교회는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 정면과 세라믹 재료를 사용한 장식, 돔 형태의 그리스 십자가 모양 평면을 순수하게 간직한 교회의 완벽한 예를 보여 준다. 보야나 교회 건축물 중 특히 세련된 벽화는 중세의 뛰어난 기념물이다.

기준 iii) : 보야나 교회는 10, 13, 19세기에 각각 세 부분으로 세워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완전성

보야나 교회는 1917년 교회 주위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현대 교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유산 또한 역사적 침략과 다른 파괴적인 위협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분리된 세 지역은 적절히 통제됨으로써 유산의 경계 지역과 완충 지역이 분명히 구분된다.

진정성

유산 건설 단계의 개념, 형태, 발전은 10~11세기, 13세기, 19세기부터 분명히 나타났다. 보존 작업과 복원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원래 벽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였으므로 건물 정면을 철거하였다. 11세기와 12세기 프레스코화의 잔해와 13세부터의 것들은 전시·보존하기 위해서 1882년 후반 결방에 추가하였다. 유산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정리해서 보존하였는데 이 작업은 2008년에 마무리되었다. 유산이 있는 곳에는 공기 조절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와 보호 요건 충족

관리는 문화유산법(관보 No 19 of 2009)과 하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이 법은 불가리아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호, 축진을 규제하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부동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규제를 한다. 세계기념물 보호와 보존 지침에서 보야나 교회와 보호구역은 1989년 10월 8일 문화위원회 의장이 서명한 공식 첨부서(No. RD-91-00-17)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지침들은 강제 사항이었으며 주, 지역협회, 소유권자 등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유산 불가리아 보야나 교회는 보존관리에 있어 모범 사례로 2012년 채택되었다. 보야나 교회가 보존의 모범사례로 선정된 이유는 교회 벽화의 복구 과정 때문이다. 20세기 전반에 행해진 이전의 개입은 적절한 방법이었으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부적합한 재료(벽 구조를 위한 강화제로서 시멘트 도입)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리고리 그리고로프(Grigory Grigorov)와 블라디미르 츠베티코프(Vladimir Tsvetkov)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지역에서 층화하여 시멘트를 제거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계층화는 가장 복잡한 복원 기술의 하나이며 위험하다고 생각되며, 그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특정한 사례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시멘트가 제거된 후, 회화의 밑그림인 '성모상'의 버진의 얼굴이 새로 발견되었고 이는 12세기에 만들어진, 연대기적으로 두 번째 층의 이미지였다. 이처럼 층화(層化) 작업은 벽화의 미적인 풍부함에 기여하였고, 새로운 예술-역사 연구와 대중화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기념물 장식의 보전에 대한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좋은 결정을 했다는 것에 있다.

2) 유적지

유적지는 크게 고고학적 유적지와 문화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고학 유적지

유적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①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기준 ii), iii)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간략한 진술
대한민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세 수도 관련 유적은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한다. 백제는 한반도 삼국시대의 한 나라로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 년간 존속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후기(475-660CE) 여덟 개의 유적들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웅진 왕도 관련 유적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사비 도성 관련 유적인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사비의 복도(複都) 관련 유적인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들은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한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기준 ii)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준다.
기준 iii) : 수도 입지 선정, 불교사찰, 고분, 건축물의 특징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완전성
유산의 단위유적들은 전체로서 유산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유적들은 수도의 역사적 기능과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부소산성 북문 주변 취수장과 관북리유적 내 거주지를 제외하고 유적지들은 개발 또는 방치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정성

연속유산의 여덟 유적의 모든 요소들은 수리와 복원과 같은 인간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는데, 자재와 기술들은 주로 전통을 따랐기에 고분과 사찰은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찰터들은 현재 다소 낮은 수준의 도시개발이 되고 있으나 산성과 고분의 환경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한 상태이다.

관리와 보호 요건 충족

유산은 모두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2012년 개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4 제정 2013년 개정),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호조례(충청남도 2002, 전라북도 1999) 아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아래 유산의 경계로부터 500m까지 보호된다. 완충구역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8m이상 고도제한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권고사항

첫째, 유산에 대하여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유지를 위한 개별 유적의 방문객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 수립을 제시한 대로 완료하도록 한다.

둘째, 고분벽화의 보존상태와 고분 내부 환경변화의 모니터링 주기를 제시한 대로 조정하도록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세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연속유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존관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다. 유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아래 구성된 세 지역주민협의회를 조직하는 주민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input)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 의해 관리된다. 각 자치단체 아래 설립된 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는 보존, 관리, 활용, 홍보, 주민참여의 역할이 있다. 제시된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덟 개 유적에 대한 책임 기관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2015-2019년 통합 보존관리계획이 마련되었다. 개별 유적의 방문객 관리뿐만 아니라 유산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을 포함하기 위해 현재 확장 중이다.

② 오악사카 역사 중심지와 몬테 알반 고고 유적

(Historic Centre of Oaxaca and Archaeological Site of Monte Alban)

오악사카는 멕시코의 중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1529년 스페인에 의해 건설된 역사지구이며, 남서쪽에 있는 몬테 알반은 선(先) 히스패닉(pre-Hispanic) 고고 유적지로 1987년 등재기준 i), ii), iii), iv)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3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본 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진술문이 소급 적용되었다. 새롭게 채택된 다큐먼트에

따르면 오악사가 역사 중심지와 몬테 알반 고고 유적은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p>간략한 진술</p> <p>오악사카에는 1529년 스페인에 의해 건설된 역사 지구, 마을에서 남서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몬테 알반의 선(先) 히스패닉(pre-Hispanic) 고고 유적지, 그리고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16세기에 도미니카 사람들이 거대한 수도원을 짓기로 계획했던 쿠일라판(Cuilapan) 계곡 등 3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이 있다. 오악사카(Oaxaca)는 스페인 식민지 이전의 1,500여 년 동안 올멕(Olmecs), 사포텍(Zapotecs), 믹스텍(Mixtecs) 종족이 살았던 지역이다. 몬테 알반은 1,000년 이상 오악사카의 전체 문화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찬란한 문명의 독창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악사카는 16세기 식민 도시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다.</p>
<p>세계유산 등재기준</p> <p>기준 i) : 몬테 알반은 종교의식의 중심지인 까담에 마추픽추(Machu Picchu, 1983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와 같은 거대한 건축 풍경을 연출해내고 있으며, 독창적인 예술의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고 있다.</p> <p>기준 ii) : 몬테 알반은 1000년 이상 오악사카의 전체 문화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p> <p>기준 iii) : 펠로타 코트, 거대한 신전들, 무덤들과 상형문자를 새긴 얇은 돌을새김 비문을 간직하고 있는 몬테 알반은 전 고전기와 고전기에 이 지역을 지배했던 찬란한 문명의 독창적인 양식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p> <p>기준 iv) : 오늘날 멕시코 중부 지역이 된 몬테 알반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시대에 의식을 행하던 중심지로서 훌륭한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초기에 북쪽 테오티우아칸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는 아즈텍과 남쪽으로부터 마야의 영향을 받았다. 오악사카는 16세기 식민 도시의 완벽한 전형으로, 이곳의 기념비적인 유산은 뉴 스페인으로 알려진 곳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일관성 있는 유물 중의 하나이다.</p>
<p>완전성</p> <p>오악사카의 역사 지구는 5,00 평방킬로미터, 247 블록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지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개의 도시, 종교 건축 기념물, 4세기에 걸쳐 발전된 고대의 관습과 전통과 관련된 기념물들이 있다. 몬테 알반 유적 지구는 매우 잘 보존되어왔으며, 보존과 관리 행위가 주로 물리적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p>
<p>진정성</p> <p>도시가 4 가지 주요한 시기로 성장하였고, 그 구조에 영향을 미쳤던 지진에도 불구하고, 몇몇 상징적인 건물의 형태와 디자인, 사용 및 기능은 역사 중심지에서 잘 유지가 되었다. 몬테 알반(Monte Alban)는 그 입지와 환경, 그리고 의식의 중심이 되는 형태와 디자인이 대체로 잘 보존이 되었다. 진정성의 상태가 계속해서 충족되기 위해서는 보존과 복원의 실천이 모든 요소에서 제어될 필요가 있다.</p>
<p>관리와 보호 요건 충족</p>

<p>1976년 3월 15일, 연방 정부는 '기념비와 고고 지역과 역사 예술에 관한 연방 법률'의 조건에 따라 '오악사카 역사 기념 지구 법령'을 발표하였다. 1993년 12월 16일, 역사 센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국립 인류-역사학 연구소와 오악사카 시청 사이에 "공공 서비스 사무소 '설립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공동 노력으로 INAH와 지자체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역사 센터에서의 건축 프로젝트와 제안된 개발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p> <p>1997년 12월 23일, INA와 오악사카 시의 자치체가 협력한 결과 오악사카 정부는 오악사카 역사 중심 지구 보존을 위한 부분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토지용도 및 목적, 중요도에 따른 건물 분류, 역사 지구에서 모든 개입에 있어 중심이 되는 기준을 명기한 것이다. 보호 지역 내부 도시의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다른 연방, 주 및 시 정부 부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변칙적 정주에 의한 기념물 영역의 침범이 방지될 수 있다. 몬테 알반 관리 계획은 지역 사회와 함께 고고학 유산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된 지역의 주위에 사회 관리의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의 관리 시스템은 고고학 조사, 현장 보존 및 유지를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p>

세계유산 오악사카 역사 중심지와 몬테 알반 고고 유적은 보존관리에 있어 모범 사례로 2012년 채택되었다. 몬테 알반의 고고학 유적지 관리 계획은 고고학 유적지의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의 통합적 보전을 위한 전략과 행동의 혁신에 기여했다. 특히 보존과 조사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된 점이 돋보인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돌망태를 이용한 지지 벽 배치 프로젝트
- 댄서 갤러리 표지 프로젝트
- 천연 자원 관리 프로그램
- 1999년 지진 구호 프로젝트
- 몬테 알반의 무덤 104와 105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 몬테 알반의 고고학적 유적지의 구조적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지진 모니터링 프로그램.
- 아트좁파(Atzompá)의 기념비적인 앙상블의 고고학 구조 프로젝트.
- 몬테 알반의 조각 돌기둥 컬렉션의 3D 이미지로 기입 및 문서화 프로그램.
- 문화 경관 구조 프로젝트.
- 몬테 알반의 고고학 사이트의 고고학적 물질 실험실 프로젝트
- 몬테 알반 고고학 사이트의 부동산의 작은 규모의 유지 관리 프로그램.
- 몬테 알반 고고학 사이트에서 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념물의 비상 프로그램. (J 빌딩과 Juego de Pelota).
- 건축물 I에 대한 통합 보존 프로젝트
- 몬테 알반의 고고학 유적지, 고고학 프로젝트 Sistema 7 Venado

- 몬테 알반 고고학 유적지의 표시와 해석 프로그램.
- 부동산의 보전을 위한 인프라 : 램프, 계단, 구획 기호.

(2) 문화경관

문화경관은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으로 인류와 그들의 자연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하고 명시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유산을 의미한다. 한국은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이 없다.

① 르몬 문화경관(Le Morne Cultural Landscape, Mauritius)

르몬 문화경관은 모리셔스 남서부 18세기~19세기 초에 도망친 노예나 유배자가 숨어 살던 곳으로 2008년 등재기준 iii), vi)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르몬 문화경관은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간략한 진술

르몬 문화경관은 모리셔스 남서부, 대서양과 인접한 곳에 18세기~19세기 초에 아프리카 본토, 마다가스카르,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온 노예들이 희생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탈주 투쟁을 벌인 상징적인 곳이다. 이곳은 바위투성이 험한 산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 부근에 있으며 무성한 숲으로 가려져 보호되어 있었다. 도망친 노예들은 르몬 산꼭대기나 부근 동굴에 작은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모리셔스는 이전에 동방 노예무역에서 잠시 체류하는 중요 거점이었으며 수많은 노예가 탈출해 르몬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배자 공화국'이라는 뜻의 '마룬 공화국(Maroon republic)'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기준 iii) : 르몬 문화경관은 도망친 노예와 그들의 저항 흔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도망친 노예들이 요새 같은 피난처인 산에서 숨어 살았음은 구술과 유형적 증거로 알 수 있다.

기준 iv) : 산의 극적인 지형과 저항의 영웅적 특성, 오랫동안 구전된 노예들의 이야기는 르몬을 아프리카 본토, 마다가스카르,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온 노예들과 지리적 경계를 넘어 연관된 모두의 희생과 고통, 자유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상징하는 곳임을 알려준다.

관리와 보호 요건 충족

이 유산에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완충지역을 위한 정책 지침 계획안(Planning Policy Guidance)'이 엄격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의 관리 계획은 기본 체계가 잘 잡혔다. 하지만 더 자세한 세부 계획과 완충지역에 속하는 해양 환경을 추가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유산 관리체계에는 보존에 관해 적절한 원칙과 프로그램을 만들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르몬 문화경관은 보존관리에 있어 모범 사례로 2012년 채택되었다. 르몬 문화경관의 보존관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첫째, 경관의 보존, 둘째,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그것이다. 르몬 문화경관의 속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몇 가지 관리/입법 도구/도구가 개발되어 세계 유산 유산구역과 버퍼존, 그리고 인근 구역 내의 토지 이용 및 개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1. 법적 틀과 정책들: 2004년 정부는 르몬 유산 신탁 기금법(Le Morne Heritage Trust Fund Act, 2004)을 통해 르몬 신탁 기금을 설립했다. 이 법정 기관의 목표는 르몬의 물리적 환경 및 생태학적 측면을 보존하고 역사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 유산 환경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일련의 법률 및 정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2. 지지 입법: 르몬 문화유산 신탁 기금법(Le Morne Heritage Trust Fund Act, 2004) 외에도 르몬 문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법령은 다음과 같다.

- 1) 2003년 국립 유산 기금 법
- 2) 2004년 계획 개발법
- 3) 환경 보호법 2002;
- 4) 산림 및 보호 구역 법 1983;
- 5) 야생 생물 및 국립공원 법 2004;
- 6) 해변 당국법 2002
- 7) 어업 및 해양 자원 법 1998

법적 틀은 다음 부속 정책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 1) Black River 지구 카운슬 지역을 위한 지침 계획 2006
- 2) 도시 및 국가 계획위원회 : 호텔 및 통합 리조트 및 주거 연안 개발을 포함한 연안 지역 계획 지침 2004.
3. 계획 정책 방침 2-르몬 문화 경관(PPG2) : 르몬 문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틀 외에 르몬 문화 경관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도구가 개발되었다.

계획 정책 방침 2는 르몬 문화 경관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2007년 9월 시행된 법률 문서이다. 이 계획의 목적은 세계 유산 사이트의 핵심 구역 및 완충 지대의 개발을 지휘하고 통제함으로써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사이트 소유자, 개발자, 이해 관계자 및 대중의 이용을 위한 개발에 적용할 수 있거나, 개발을 적용할 때 정부와 지방 당국을 도울 수 있는 일련의 실행 기준, 디자인 기준을 제공한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 협약 운영지침 및 르몬 문화 경관 관리 계획에 따라 르몬 문화 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Coffee Cultural Landscape of Colombia, Colombia)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은 콜롬비아 서부에 있는 전통적 커피 재배지의 문화경관으로서 100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고지대 커피 재배의 전통과 고지대 재배에 적응하기 위한 농부들의 노력이 담고 있다. 2011년 6월 등재기준 v), vi) 에 근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은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간략한 진술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은 콜롬비아 서쪽의 안데스(Andes) 산맥 서부와 중앙 구릉에 있는 18개의 도시 지역을 포함한 6곳의 농경지를 말한다. 커피 재배 지역의 전 세계적인 상징과도 같은 독창적인 전통을 대표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문화경관의 탁월한 사례이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기준 v) :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적·생산적·친환경적 자연경관의 탁월한 사례이다. 몇 세대에 걸친 농가의 집단적인 노력은 특출한 사회·문화·생산 제도를 탄생시켰다. 또한 매우 험난한 자연 조건 속에서 천연자원을 혁신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창출해냈다.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의 전형적인 커피 농가는 가파른 산악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환경은 커피 문화경관의 형태와 디자인, 건축 유형의 분류 체계,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만들어냈으며, 이들 농가는 전 세계의 다른 커피 재배지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탄생시켰다.

기준 vi) : 커피 문화는 이 지역만의 풍부한 유형, 무형의 특징과 독창적인 유산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음악과 음식, 건축, 교육이 포함되며,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 커피 농장과 도시 지역 건물 대부분에 적용되는 도시계획과 건축양식은 독특한 토착종 대나무(*Guadua Angustifolia*)를 중심으로 한 가용 토착 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며 도전적인 촌락에서 커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 과정·사회 구조·건축양식을 조화롭게 통합해 보여 주고 있다.

완전성

토지의 독특한 사회적 용도에 맞추어진 유산의 요소들, 그리고 커피 생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전한 문화적·사회적 전통은 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한다.

비록 일시적인 가격 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러한 응집된 특성과 변화에 대한 거부로 인해 높은 완전성을 구현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독창성을 자랑하는 콜롬비아 문화경관의 집단적인 가치는 문화경관 측면에서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 발전을 촉진한 데 있다.

진정성

콜롬비아 커피 문화 경관은 '커피의 중심축(Axis of Coffee)'으로 알려진 이 지역의 지질, 수문, 기후, 자연 조건에 맞춰 인류가 100년에 걸쳐 발전해 온 과정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지닌다. 탁월한 수준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콜롬비아 커피 문화 경관은 전통 건축양식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구조물이 추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산의 주요 지역과 완충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소유주와 공동체가 모두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전통과 언어, 다른 제반의 무형 유산들을 보존해 왔다.

관리와 보호 요건 충족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 환경 보호 당국(지방자치법인), 문화 담당 부처(문화부), 특정 부문 관계자(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 등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도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같은 연구·교육 기관들이 이 계획을 지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참여, 문화유산의 가치, 환경의 지속성 등이 경관 관리 계획의 원칙으로 수립되어 있다. 또한 관리 계획의 틀로 단기·중기·장기 실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경관의 일부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마련된 관리 및 보호 계획은 이러한 압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탁월한 문화적 가치를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콜롬비아 커피 문화 경관은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방법으로 2012년 모범 사례로 채택되었다. 콜롬비아 커피 문화 경관(CCLCC)은 콜롬비아 커피 재배자가 개발하고 실시한 지속 가능성 전략에 통합되어 있다. 유산 관리 계획의 수립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의 합의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FNC)의 전략적 계획과 지표를 고려하였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유산의 보존 권한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틀 아래에서 FNC는 세계 유산에서 강조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콜롬비아의 커피 재배자에게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명확하게 정의된 진행률을 포함하는 세부 관리 계획은 기실시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관리 전략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에 띄는 예는 “FNC’s Sustainability that Matters”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심은 새로운 커피나무의 양이다. 콜롬비아 커피 기관이 처리에 대응하고 OUV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혁신적인 관리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의 또 다른 예는 국립 콜롬비아

커피 연구 센터(Cenicafé)가 기후 변화에 적응한 품종의 개발을 촉진하는 커피 작물의 유전체지도를 작성하는 연구 작업이다. 그 품종의 하나는 이미 도입된, 카스티요(Castillo)라 불리는 아라비카(Arabica) 식물 품종이다. 이 품종은 전통적인 품종인 카투라(caturra)보다 짙은 비나 높은 습도 때문에 최근 재 발생한 커피 녹병(coffee rust)이라 불리는 곰팡이에 더 강하며, 그래서 최근 적극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3) 건조물군

건조물군이란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건조물들이 군집되어 있는 도시와 고고학적 도시유적, 현재 거주하는 역사도시, 20세기에 건설된 신도시를 포함한다. 2012년 선정된 보존의 모범사례에 현재 거주하는 역사도시와 20세기에 건설된 신도시 유형에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도시 건조물군과 고고학적 도시유적(비 거주 유적) 사례만 제시하도록 한다.

(1) 도시 건조물군

①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Kyoto, Japan)

교토는 8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일본의 종교 건축과 일반 건축, 정원 설계의 진화를 보여주는 주요 중심지이다. 일본 교토부 교토·우지와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에 있는 역사 유적을 포함한다. 1994년 등재기준 ii), iv)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은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간략한 진술

교토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수도였으며, 고대 중국의 수도를 모방하여 조성했다. 1,000년 이상 일본 문화의 중심지로서, 목조 건축, 특히 종교 건축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일본 정원 예술은 전 세계의 조원술(造園術)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기준 ii) : 교토는 8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일본의 종교 건축과 일반 건축, 정원 설계의 진화를 보여주는 주요 중심지이다. 일례로 교토는 일본의 문화적 전통을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정원의 경우 19세기 이후 세계의 많은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기준 iv) : 현존하는 교토의 건축물과 정원들은 전근대 일본의 물질문화 측면에서 최상의 표현으로 인정되고 있다.

완전성

등재된 유산을 구성하는 개별 건물, 건물 복합물, 정원 각각은 다양한 독특한 역사의 시대를 대표하지만, 함께 보면 일본의 건축과 정원의 일반적인 역사적 발전을 보여 준다. 유산을 이루는 17개의 구성 요소 부분들은 모두 고대 수도의 역사와 문화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유산은 장기간에 걸친 일본 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유산의 완전성은 그 전체성과 온전성 모두에서 보장된다. 또한 유산을 구성하는 17개 개별 부분 각각은 높은 수준의 개별적 완전성을 보여준다.

흩어진 구성 요소가 도시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개발은 등재된 유산의 전반적인 시각적 완전성에 위협이 된다.

진정성

일본의 복원과 재건의 전통에 비추어 유산을 구성하는 건물과 정원은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물 전체나 건물의 일부가 처음 건축되었을 때부터 온전하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1000년 이상 일본에서 우세했던 원래의 형태, 장식 및 재료에 대한 철저한 존중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원래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전통은 고대 신사와 사원의 보존법이 제정된 19세기 말(1897년) 이후 강화되었다. 손상된 부분만 수리되거나, 필요한 경우 교체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신중한 기록과 과학적 조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정원이 잘 보존되지는 않았지만, 1965년 이후 문화청이 지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정원의 보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굴조사와 다른 연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일에 대한 담당자들은 원래 도구를 재생산하는 정도로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의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초기 복원 또는 수리 작업에서 잘못된 재료 또는 기술이 사용된 경우, 이리 작업은 추측에 의하기 보다는 적절한 연구에 기반한 복원으로 대체되었다. 목조 건축물과 정원의 손상된 구성 요소는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되었고, 역사적인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기술의 진정성은 기술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와 적절한 도구 사용으로 향상되었다. 등재된 유산에 걸쳐 있는 188개의 건물 대부분은 원래 위치에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산을 구성하는 건물과 정원들은 형태/디자인, 재료/물질, 전통/기술 그리고 장소/환경의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유지한다.

관리와 보호 요건 충족

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건물과 정원은 1950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188개의 건물 중 38개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160개는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2개의 정원에 관해서는, 8개는 아름다움의 특별한 장소로 지정되었고, 4개는 아름다움의 장소로 지정되었다. 1950년 법에 따라, 유산의 현 상태에 대한 변경 제안은 제한되며, 경미한 변경의 경우, 어떠한 변경도 국가 정부나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은 도시적 맥락에 위치한 가장 전형적인 세계 유산 중 하나이다. 거의 모든 유산의 구성 요소가 주택, 오피스 빌딩, 다른 도시 시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사례이다.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은 2012년 모범 사례로 채택된 바 있다.

유산의 모든 구성요소가 도시라는 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등재된 유산 자체의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은 전체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그러한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모범 사례가 되었다. 지방 정부인 교토시는 2007년 포괄적 도시 경관 관리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5가지 주요 요소와 지원 체계로 구성되었다. 교토에서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광범위한 도시 계획과 조례가 변경되었다. 5 가지 주요 요소는 1) 건물 높이, 2) 건물 설계, 3) 주변 경관과 경관 4) 옥외 광고 5) 역사적 거리 이다.

(2) 비 거주(고고학적 증거 제공) 도시

① 카랄 수페 신성도시(Sacred City of Caral-Supe, Peru)

세계유산 카랄 수페 신성도시는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카랄 문명의 유적지로, 숲이 울창한 수페강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건조한 사막 대지에 위치해 있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다. 중앙 안데스 지역에서 후기 아르카이크기(期)에 존재한 카랄 문명 유적지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심지이다. 2009년 등재기준 ii), iii), iv)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간략한 진술

카랄 수페 신성 도시는 후기 아르카이크기(Archaic Period)에 중앙안데스(Central Andes) 지역에 존재했던 5,000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중심지이다. 유적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설계와 건축술의 복잡성이 큰 특징이다. 엄청난데 큰 돌과 흙으로 만든 층계, 나지막한 둥근 공간 등이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물과 엘리트 계층의 거주지를 포함해 도시 계획과 몇몇 도시 구성 요소들에서 발견된 제례적 기능의 명확한 증거들은 강력한 종교 이데올로기가 존재했음을 말해 준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기준 ii) : 카랄은 후기 아르카이크기 건축물과 고대 페루 문명의 도시계획을 가장 잘 대표한다. 층계, 낮고 둥근 정원, 도시 계획이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나갔으며, 근처 다른 거주지와 페루 해안의 광범위한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기준 iii) :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알려진 카랄은 수페 계곡 안에 있다. 후기 아르카이크기에 형성된 거주지들 중 가장 발달되고 가장 복잡한 예로 꼽힌다.

기준 iv) : 카랄은 건축 설계와 복잡성·공간적 요소 면에서 인상적이다. 그중 특히 흙으로 만든 엄청난 층계 참과 낮고 둥근 정원은 수세기 동안 페루 해안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완전성

카랄은 놀랄 정도로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유적이 일찍 버려졌고 늦게 발견된 데 있다. 일단 버려진 이후, 카랄은 단지 두 차례만 점령되었으며 그 후로는 비조작적으로 점령되었다. 두 차례의 점령 중 한 차례는 기원전 1000년 무렵의 이른바 '중기 형성기(Middle Formative)' 또는 '초기 발생기(Early Horizon)'에 있었고, 서기 900년~1440년의 '국가와 영주 시기(States and Lordship period)'에 다시 한 번 점령되었다. 두 차례의 점령 시기에 거주지들은 모두 도시 외곽에 있었던 덕분에 고대 건축물들은 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진정성

현지 재료들로 지은 관광 시설들을 제외하고, 유적 근처에는 현재 영구적으로 지어진 현대 건축물이 없다. 비교적 문명의 이기에 훼손당하지 않은 이 도시는 매우 아름다운 문화적·자연적 경관의 일부를 이룬다. 대부분의 개발은 유적 남쪽에 있는 리마(Lima) 근처의 낮은 계곡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유적이 있는 중부 수페 계곡에서는 산업화되지 않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적의 진정성에 관한 논쟁은 거의 없다.

관리와 보호 요건 충족

이 도시의 관리 시스템은 적절하며, 최근 수정된 관리 계획이 2008년 후반기 현재 시행되고 있다. 수정된 계획은 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보장하는 규정들을 포함한다.

세계유산 카랄 수페 신성도시 또한 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전체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2012년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 지난 18년 동안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실행된 카랄 신성 도시의 가치 향상은 다음 활동을 실시하였다.

- a. 카랄 문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과학 커뮤니티와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카랄 문명의 사회 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실시하여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이 과학 지식 생산.
- b. 국제 보호 헌장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돌과 흙과 유기 재료의 건축의 보존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그러나 이러한 보존 프로그램은 지리적 및 환경적 상황 조건과 관련하여 혁신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카랄 문명의 취락이 높은 지진 활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ZAC은 카랄 건축이 내진 기술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발견은 기념물 보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건물에 지진 영향을 완화하는데 적용하기 위해서, 즉 현대적 이용을 위한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또한 ZAC은 카랄의 건축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실험 샘플 적용을 통해 얻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페루와 그 이웃 나라의 보존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을 조직하였다.

- c. 습득한 역사 문화 지식의 사회적 투영
 - 카랄 신성 도시에서 관광 순환 노선 설치
 - 박물관 전시 및 컨퍼런스의 지속적 발표, 국내외 학술 행사 참가
 - 학술 잡지의 정기 간행, 비특정 대중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서적이나 전단지.
 - 소셜 네트워크 및 인터넷 게시

- d. 카랄 신성 도시 인근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그곳의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발전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동일시되도록 조성.

- e. 카랄 신성 도시의 관리를 위임받은 카랄 고고유적지의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년 동안 이어진 정치 당국의 지속적인 인식 제고: 장래에 카랄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됨.

Ⅲ.

문화유산 활용
가이드라인

1) 문화유산 활용의 의의

중앙정부기관인 문화재청에서는 지속가능한 문화재 전승을 위해 보존과 활용을 문화재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으며, 활용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법 및 사례 등을 종합하여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2007)'을 발간하여 활용사업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정책이 동결 보존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향유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관광 및 교육 분야에서 문화유산 활용 가치가 높고, 문화유산의 훼손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다루게 되면서 문화유산 활용의 개념은 관광과 교육,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화유산의 활용은 보존을 보다 강화하면서 새로운 문화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된다. 또한 문화유산은 무한한 창작 소재인 동시에 다양한 가치 개발의 방법론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활용은 우수하고 고유한 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둘째,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의 창조, 소통, 나눔의 과정을 함의한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문화유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과정이다.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문화유산은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동시에 현 시대의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다. 문화유산 활용은 과거와 소통하고 가치를 나누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셋째, 문화재의 활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문화 다양성 실현의 기반이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한다.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 보존과 활용의 조화, 적극적 활

용, 이를 넘어 창조를 위한 원천 자료로 제공됨으로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넷째,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제고 및 지역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한다.

2) 문화유산 활용 원칙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 둘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국가는 원천자료의 발굴과 유통체계 구축 등 최소한의 부분에 개입하고, 생산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넷째, 문화재를 원천으로 한 상품 가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옛스러움과 뉴미디어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 다섯째,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직업 생산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 여섯째,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지역민의 참여기회와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3) 문화유산 활용 방법

문화유산의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활용가이드북(2007, 12)'에서는 문화재 활용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화재 스스로 말하게 하라(수집·보존).

이것은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문화재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먼저 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은 통합적 인식을 전제로 한 문화적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역사, 고고학, 민속, 건축, 예술 등 통합적인 시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활용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그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만드는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론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문화재를 소개하는 패널, 이를 안내하는 홍보책자, 주변지역의 정비 등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재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재와 문화재를 결합하여 말하게 하라(고증·복원).

하나의 문화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와 문화재와의 결합 과정을 통해 각각의 가치를 확장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관아건물, 서원, 사당, 장터 등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테마관광의 코스로 개발하는 형태가 하나의 사례가 된다.

셋째, 문화재와 사람을 결합하여 말하게 하라(향유·체험).

문화재는 당대 사회의 삶의 공간속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능한 그 문화적 공간에 그 시대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두어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경복궁에서 거행하는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과 같이 빈 궁궐에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나 의식을 복원한 의례를 재현할 경우에 문화재는 그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문화재와 장르를 결합하여 말하게 하라(학문·예술).

문화재 활용을 위해서는 문학, 연극, 공연, 예술 등 여러 장르와 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의 문화재를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연극, 공연의 시나리오 대상이 되었을 때 그 가치와 감동은 배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를 활용한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테마파크, 축제 등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문화재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문화재와 매체와 결합하여 말하게 하라(문화콘텐츠).

문화재 활용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활성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문화재의 디지털문화콘텐츠 전략이 그 중의 하나이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의 ICT기술을 접목한 활용방법은 시공을 초월해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하게 전달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한국을 소개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여섯째, 문화재를 교류하여 말하게 하라(해외교류).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으로서 문화 다양성 시대에 문화재 교류는 단순히 한국문화의 소개를 넘어 국가적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문화재를 한

류를 지속시키는 방안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류가 확산되는 나라에 우리 문화재를 전시하는 방안이나 공연문화를 함께 패키지로 묶어 선보이는 전략도 한류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전략이라 생각된다.

2. 문화유산 활용분야와 국내외 사례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는 20세기가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발전기인 '과학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가 가지는 내재적 속성으로 예술적, 미적 가치와 함께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우리는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와 교훈을 배우고 전통문화의 멋과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또한 문화재는 다양한 문화상품, 영상자료, 문화콘텐츠 개발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재의 유형과 형태, 그리고 사회적 요구나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활용은 유산의 보존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교육, 관광, 기술, 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1) 교육 분야

문화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부터 가장 기본적인 활용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은 기존에는 학교수업 교과목의 보조적 형태로 운영되거나 유적지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단편적이거나 일방적인 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체험과 재미, 애향심과 역사관 정립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문화유산 교육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을 향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유산 교육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림과 동시에 이해시키고,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형성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1) 미래세대 문화유산 교육

학교 역사수업에서 문화유산 교육은 예전부터 중시되어 왔으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는 자체의 특징보다도 당대의 역사적 상황의 반영체로서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라는 데는 역사 교사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수업이 체험보다는 단순한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의 나열적 제시에 그치는 등 한계점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현장체험학습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이 시행되고 있어 문화유산 교육이 활성화 되는 여건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단편적인 문화유산 해설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체험과 활동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습득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문화 창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문화유산 방문학교', '문화유산 체험교실', '테마문화재 학당' 등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운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민간단체가 주관해 오다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변경·시행하고 있다.

- 문화유산 방문학교 프로그램은 유·초·중등학교 또는 동등 교육기관(지역아동센터, 장애인학교 등)으로 방문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위주의 문화유산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자유학기제와 창의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학교 방문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시행·주관하고 있다.
- 문화유산 체험교실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현장(문화유산 발굴현장, 민속 문화재 소재지)에 청소년이 방문하여 발굴체험, 토기 제작 등 문화유산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고고학 체험교실'의 연장에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영리법인 문화재 전문 학술연구기관이 시행·주관하고 있다.
- 테마 문화재 학당은 2017년부터 시작한 '특! 특!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 프로그램을 확대한 사업으로서 충무공이나 항일독립운동 등 일정한 주제를 갖고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주제와 관련된 문화재에 대한 집중적 강의, 체험과 답사로 구성된 사업이다.

평가항목	배점	심사기준
사업내용의 우수성	50	문화유산교육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사업계획에 구현하였는가? - 단순한 지식전달, 해설위주 교육 지양
		교육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적합한 교재와 교구 등을 활용하는가?
		사업내용이 문화유산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고 내용이 명확한가?
		지역 문화유산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가?
		문화유산의 보편성도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가?
추진체계의 적절성	30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방안은 적절한가?
		강사 등 교수인력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운영계획의 적절성	20	예산계획이 충실한가?
		홍보계획이 적극적인가?
		수혜자 선정에 적절한 기준이 있는가? -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민이 고르게 수혜

(2) 지역주민 문화유산 교육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002년에 세계유산협약의 이해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개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유산에 대한 신뢰도(Credibility) 강화

둘째,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보존(Conservation)의 보장

셋째, 세계유산의 이해와 이행 등에 관한 세계유산협약 체약국의 효과적인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증진

넷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한 세계유산의 이해, 참여, 지원의 확대를 요약되는 네 가지 중점 전략목표(4Cs로 지칭)를 수립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커뮤니티(Community)의 역할 증대를 추가하여 전략목표를 5Cs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문화유산 교육은 미래세대 교육 등에 비해 매우 한정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주민교육은 국·공립 박물관에 의해 '박물관 대학'이나 '특정 테마

를 주제로 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대학이나 문화유산 관련기관에 의해 '지역학' 등의 교양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반주민 교육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거나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관련기관과 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일반 주민 문화유산 교육 상설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구성하는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 중인 주민협의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공주·부여·익산지역의 주민협의회는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주민협의회에서는 세계유산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와 문화재 주변 경관을 가꾸어 나가는 활동을 하는 시민 자치조직이다.

각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소재 문화재 관련 전문교육·연구기관과 협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고도 아카데미)을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존·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는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청소 등 환경정화활동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유산 지역의 견학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문화재 현장관리로 이어지고 있다.

구분		내용
공주시 고도보존 및 세계유산 주민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 고도아카데미 과정 중 교육생들의 의견 수렴 · 수시로 사업지구내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
	주민 교육	· 고도아카데미 교육 · 국내 문화유산 답사 및 교육 · 백제역사유적지구 지역주민(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상호방문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체 간담회 실시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주민참여 활동	·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 · 문화재 구역과 주변 구역 환경정화활동 · 문화재 주변지역 꽃길 가꾸기 · 문화재 홍보활동
부여군 고도보존 및 세계유산 주민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 월례회에서 사안별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수시로 사업지구내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
	주민 교육	· 고도아카데미 교육 · 국내 문화유산 답사 및 교육 · 백제역사유적지구 지역주민(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상호방문 · 회원교육(월례회에서 전문가 초빙) · 찾아가는 주민참여 워크숍
	주민참여 활동	· 사비옛길 조성 사업(문화관광부 공모사업) · 고도보존 사업지구 벽화그리기 · 유적지 주변 환경정화활동 · 백제유적 모니터링 활동
익산시 고도보존 및 세계유산 주민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집중검토회의
	주민 교육	· 고도아카데미 교육(전북문화재연구원 주관) · 고도대학 과정 -교육 12회, 수강생 발표 1회 · 국내 문화유산 답사 및 교육 · 백제역사유적지구 지역주민(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상호방문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주민참여 활동	· 환경정화활동 · 주민주도의 사업아이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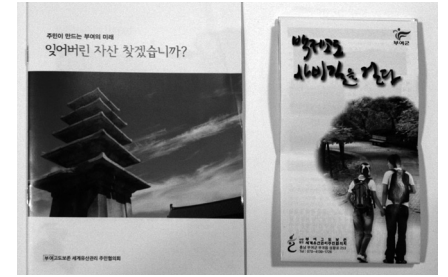
주민 참여사업 기획 회의



워크숍 (주민의 역할과 과제)



문화재 보존·관리 모니터링 활동



워크숍 (주민의 역할과 과제)

(3) 행정가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있어 경미한 수리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의해서만 수리 및 복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양성을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립하여 문화재관리와 전통건축, 전통조경,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발굴, 문화재 보존처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전문지식의 습득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 해마다 지자체 문화재 분야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더불어 전통문화교육원을 설립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업계 종사자, 문화재 수리기술자·발굴조사원 등 전문 인력, 교육자, 일반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재 수리전문 기술에 대한 교육은 문화재청이 인정한 문화재 보호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문화재기술자협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에서 문화재 관련 지식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 설립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2017년)

구분	과정 명	교육대상	교육 기간	횟수
직무과정	창의리더 역량강화 과정	문화재청 직원(6급 이상)	3일	2
	주제가 있는 문화재 현장체험 과정	문화재청 직원	3일	1
	전통문화 이해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발굴문화재와 보존과학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문화재 행정실무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근대문화유산 이해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문화재 안전관리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역사 속에서 배우는 리더십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3	
	세계유산 이해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건축문화 이해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인간, 역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2일	2	
	자연유산 이해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5일	2	
	무형문화재 관리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문화재 수리기술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4일	1	
	전문 과정	동산문화재 관리 과정	문화재 소장자 등	2일	1
	문화재 전담수사관 연수 과정	문화재 전담수사관(경찰)	5일	1	
	문화유산 방문교사 연수 과정	문화유산 방문교사	3일	1	
	문화재 수리종사자 보수교육 과정	수리기술자, 감리원 등	5일	7	
	교육 직무연수(일반) 과정	초·중등·교육 전문직	5일	2	
	교원 직무연수(전문) 과정	초·중등·교육 전문직	5일	2	
국제과정	국제문화유산 관리자 과정	아시아지역 문화유산 담당자	8일	1	
전통기능 교육과정 (수리 기능자 양성과정)	기초과정	문화재 수리기능자 양성 기초과정 - 옷칠, 소목, 단청, 배첩, 철물, 도금, 모사 등 7개 분야	관련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1년	1
	심화과정	문화재 수리기능자 양성 심화과정 - 옷칠, 소목, 단청, 배첩, 철물, 모사, 지류 보존처리 등 7개 분야	관련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1년	1
	현장위탁 과정	문화재 수리기능자 양성 - 석공, 미장, 와공, 대목, 드잡이, 구들 등 6개 분야	관련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1년	1
사이버 과정	불교미술의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1 개월	1	
	전통건축의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문화재 행정실무 입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궁궐건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사찰건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고대 고분의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조선시대 회화의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석탑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세계유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향교와 서원건축의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III. 문화유산 활용 가이드라인

	축성기술로 본 한국의 성곽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자연유산, 명승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 도자의 흐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전통조경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조선왕릉 이야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전통복식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근대동산문화재의 이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민가건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자연유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한국의 전통예능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각 기관별 문화재 전문가 양성교육

구분	기관명	과정 명	대상	교육 및 학습 내용
중앙 부처	문화재청 (전통문화교육원)	문화재 관리과정	지자체시·도 시·군·구 화 재 분야 행정 학예직 공무원	-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 정실무능력을 향상
		문화재 수리 기술 과정	관련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일반인)	- 전국에서 문화재 수리 기능자 로 종사하면서 문화재보존관리 에 기여
	국립한국전통 문화대학교	4년제 대학 (학사)과정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에 준하 는 학력 인정자	- 6개학과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 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체계적 인 행정능력 및 전문지식의 전 반적인 내용을 습득 할 수 있는 과정 제공
재단 및 협회	한국문화재 수리기술자 협회	문화재 수리 하계연수강좌	기초강좌 전문인강좌 일반인 강좌로 수준별 교육	- 한국건축구조 및 건축시공에 관한 지식을 특강형식으로 제 공하고 있음
		후계자 양성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응시자	-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대비 교육 실시
	한국문화재 재단	문화재 보수 기술학교	문화재보수 및 단청 분야 종 사자	- 실무자들이 강의하는 보수 수 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식 시켜 민족문화유산의보 전에 기여함

(4) 국내 사례

앞서 언급된 미래세대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 문화유산 프로그램, 행정이 및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외에 특정 세계유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해당 유산에 대한 종합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왕릉전시관(<http://royaltombs.cha.go.kr>)은 모델이 될 만한 사례이다.

조선왕릉전시관은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시대 왕릉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서울시 노원구 태릉 내부에 개관한 조선왕릉전시관의 웹사이트이다. 왕의 국장절차와 조선왕릉의 역사, 왕릉의 조성과정 및 관리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전시관을 관람한 후에는 사적 제201호인 문정왕후 태릉을 둘러볼 수 있고, 서울 근교에 위치한 나머지 38기의 왕릉을 탐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꾸려져있다.

이 웹사이트는 수도권(서울 경기)과 강원도, 더 나아가 북한의 개성시에 있는 왕릉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한 곳에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한 바가 크다.

첫째, '세계유산 조선왕릉' 메뉴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준(OUV)을 명확히 소개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알리고 있다.

둘째, '조선왕릉소개', '왕의 생애', '조선왕릉의 비밀', '조선왕릉 이야기' 메뉴를 통해서 조선왕릉의 문화유산 정보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능원묘의 분포'나 '왕의 족보' 그리고 '그림으로 보는 국장행렬' 등은 고품질 플래시 콘텐츠로 시각화(visualization)되어 있어 일반인과 전문가들이 모두 입체적으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넷째, '어린이 왕릉관'을 독립 콘텐츠로 제작하여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인 어린이들이 세계유산 왕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사이버 상에서 체험할 수 있다.

다섯째, '열린 광장'이라는 커뮤니티 메뉴를 통하여 조선왕릉 관련 소식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다만 질의응답은 '민원신청'의 형식을 밟게 하여 커뮤니티 본연의 목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술정보' 메뉴를 통하여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추진 종합 학술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왕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통하여 왕릉에 대한 전문적인 심화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웹사이트 조선왕릉전시관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퍼져 분포되어 있는 조선왕릉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이용자 욕구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조선왕릉전시관 (<http://royaltombs.cha.go.kr/>)

(5) 해외 사례 -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성공적인 관리와 유지는 주로 지방 자치 단체와 방문자를 향한 직접적인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다. 2012년 모범사례로 선정된 콜롬비아 문화 경관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관 자체의 보존과 관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해석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선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은 지역 이해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가치를 강조하는 철저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결과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즉,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이라는 세계유산을 독특하게 만드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그것의 본질을 전하면서 구체성을 띠도록 하는 가시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었다.

또한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FNC)는 다양한 지역주민 협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국가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 조례는 주민의 교육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FNC는 교육 전략의 실시를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이는 FNC가 오랜 세월 축적해 온 모든 사용 가능한 소통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미디어 도구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 주간 TV 프로그램 "Las aventuras del profesor Yarumo." 이 TV 프로그램은 FNC 의원에 의해 개발된 모든 교육 사업을 지원하면서 1985년부터 방송되고 있다.
- 로컬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 FNC는 커피 재배자에 이벤트, 프로젝트, 활동, 가격 등과 같

은 짧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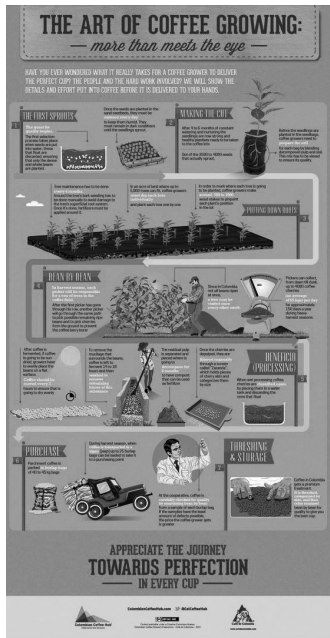
- 커피 재배자 위원회(Departmental Coffee Growers Committees)가 소유한 지역 신문. 유산 지역에 관한 주요 달성 목적, 프로젝트, 이벤트를 설명.
- FNC는 농업 교육 센터인 Fundación Manuel Mejía와 협력하여 지역의 관광 사업자를 위한 커피 문화 경관 e-러닝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을 상징하는 아이덴티티와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 홈페이지



콜롬비아 아이덴티티



커피 재배과정부터 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브로슈어

마지막으로, FNC는 지방 자치 단체 및 부서의 커피위원회에서 콜롬비아 문화 경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포스터, 전단지, 각종 인쇄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지방 대학은 콜롬비아 문화경관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많은 학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산의 중요성을 도시 인구에게 교육하고 있다.

2) 관광 분야

대부분의 문화유산 지역에서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이와 같은 노력중의 하나이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세계유산이나 단위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진정성 및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있어서 관광의 개념과 원칙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유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 관련 시설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문화유산 관광의 개념

문화유산의 관광의 목적은 문화유산을 관광의 매개수단으로 하여 지역 및 국가의 경제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은 문화유산에 내재한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정신적 풍요로움을 고양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유산의 공급자인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공개 및 관광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장료 등의 직접적 수입과 음식, 숙박, 쇼핑 등을 통한 간접적 수입확대로 주민과 지역,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문화유산의 수요자인 관광객은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과 접함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문화유산 관광이란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며, 또한 방문객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관광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문화유산 관광의 특성

문화유산 관광의 흐름은 의식 및 경제적 수준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한다. 기존의 단순한 문화유산 관광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의 수요와 욕구가 증가하고, 의식 및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유산 관광이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수입 창출기제로 각광 받으면서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관광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에서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호 협력하라.(Collaborate.)

둘째, 지역사회와 관광에 적합한 자원을 발굴하라.(Find the fit between a community and tourism.)

셋째, 유적지와 프로그램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라.(Make sites and programs come alive.)

넷째, 관광 상품의 질과 문화재의 진정성에 중점을 두어라.(Focus an quality and authenticity.)

다섯째,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라.(Preserve and protect resources.)

이와 같은 5가지 일반원칙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문화유산 관광의 기본 방향

세계유산 협약에 근거하여 문화유산지역에서의 관광은 문화유산의 보전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문화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유산이 갖는 진정성을 보호하고 방문객이 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문화유산지역에서의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유산의 보존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유산의 보존에 기반을 두고 문화와 도시구조,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는 관광객의 만족도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함께 증진시키는데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그 지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사업들이 그 지역에 소유될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한 일자리가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하여 수익이 다시 투자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야 한다.

둘째, 방문객의 유산가치 향유기회 제공이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이 유산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을 통해 방문객에게 유산의 가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연속 유산의 경우 통합 기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 유산이 아닌 연속된 유산의 경우에는 관련된 관광계획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가능하면 통합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기구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합기구는 전반적인 관광관리를 담당하며, 주민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통합기구에 의한 관광관리는 관광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활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문화유산 관광의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 따른 보전적 활용, 교육적 가치를 인식한 교육적 활용, 내재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적 활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다.

관광적 측면에서 문화유산 활용 방향

기본목표	추진방향
보전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관광. ○ 어느 경우에도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다면 엄격한 제한 필요. ○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침 수립의 선형 필요.
교육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에게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근거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관광. ○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교육적 경험 제공 필요. ○ 관련정보와 지식을 통해 체계적인 인식과 안목이 깊어질 때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향상.
생산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보존관리 목표와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을 통해 국가의 실적이 이익 제공.

(2) 문화유산의 관광 상품화

① 관광 상품화 요소

전통문화자원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로 구분된다. 자연적 요소에는 마을 경관, 수자원, 수목, 기후, 환경 등이 포함되며, 문화적인 요소에는 역사, 건축, 축제, 생업, 음식, 제사 등 유·무형의 인위적 요소가 포함된다.

문화적 요소를 다시 유적과 무형적인 것으로 구분하면, 유형적인 것에는 건축, 도시를 비롯하여 자연경관, 조경, 역사적 장소, 특산물, 각종 유형문화재, 매장문화재, 공예품, 민속제품, 농기구, 서책 등이 있고, 무형적인 것으로는 역사, 전설, 무형문화재, 지방색, 음악, 축제, 민속놀이, 전통음식, 민간요법, 방언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으며 관광 상품과가 가능한 요소이다.

문화유산 관광 상품화 요소

분류	요소	내용	구체적 사례
유형	도시	도시의 역사성, 아름다운 경관, 특색 있는 거리	역사적인 거리, 정감 있는 거리, 장터, 신작로 등
	마을	역사성, 인물, 추억을 되살리는 마을경관	민속마을, 종가, 반가, 초가, 사당, 방앗간, 정자, 정자나무, 성황당, 장승, 솟대 등
	건축	역사적인 건축물, 기록될 만한 근대 및 현대건축	관아, 객사, 향교, 서원, 사찰, 반가, 민가, 근대건축, 현대건축 등
	자연경관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농촌풍경, 명산, 해안, 계곡, 들판, 수평선, 저녁노을 등
	역사적 장소	역사기록에 나타난 장소, 종교와 관련된 장소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곳, 유명 인물의 탄생지 또는 방문처, 순교지 등
	특산물	음식, 민속공예품, 공산품, 종공업제품	각종 특산음식, 과일, 음식재료, 목·석공예품, 공업제품 등
	유형문화재	국가 및 지방정부 지정 문화재	건축, 공예, 회화
	매장문화재	선사시대 주거지, 각종 건물터	주거지, 절터, 성터, 우물 등
	공예품	문화재, 민속공예, 장인의 제작품	장식품, 탈, 의상, 목제품 등
	서책	역사, 민속, 군지 등	문집, 각종 읍지, 작품집, 관련 서책
무형	역사	기록에 나타난 도시의 역사, 지역의 역사	역사적인 사건, 탄생인물, 역사현장 등
	전설	지역의 전설, 민담, 고사 등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무형문화재	장인의 기술, 예인의 기예, 민간신앙, 관혼상제 등	도자공예, 가구, 칠, 줄타기, 성주풀이, 각종 제례 등
	음악, 연극	전통 민속음악, 현대음악	농요, 농악, 판소리, 가면극, 탈춤

축제	동제, 지역축제, 민속축제 등	당제, 탈춤페스티벌, 음식축제 등
놀이	전통 민속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팽이치기 등
전통음식	전승되어 온 전래음식, 제사음식	주식, 부식, 술, 떡, 국수, 해산물 등
방언	재미있고 독특한 용어	각 지역별 사투리
민간요법	지역의 독특한 민간요법	모래찜질, 고로쇠, 건강식품 등
5일장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통시장	

② 관광 상품 개발 시 고려사항

문화유산의 관광 상품 요소들을 성공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내부적 관점과 관광 인프라 측면인 수용태세 관점에서 점검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 상품 개발 시 고려사항

분류	고려사항
내부적 관점	○ 대다수의 관광객은 문화유산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 문화유산은 방문객에게 어떻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
	○ 상품 및 음식판매는 문화유산과 상응하고 있는가? ○ 문화유산의 설명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수용태세 관점	○ 쇼핑시설 및 상품은 적정하게 설치 준비되어 있는가?
	○ 화장실은 충분하면서도 청결하게 되어 있는가?
	○ 관광지점 부근에 음료·휴게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 인접지에 있는 식당 등 식사장소는 만족스러울 정도인가?
	○ 접근이 가능한 교통편과 요금은 적정한가?
	○ 관광서비스시설, 음식, 체험프로그램 등 부근의 관광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가?
	○ 안내를 위한 운영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며, 문화유산 해설사 등 안내 인력은 배치되어 있는가? ○ 관광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은 갖추어져 있는가?
기타	○ 비성수기 여행의 유인책으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비공개지역 특별 공개 등)
	○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광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브로슈어 제공 등이 가능한가?
	○ 문화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가?

(3) 방문객 이용시설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지정문화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소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자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구역 주변으로는 유적 정보를 제공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갖추어져 있으며, 공용주차장과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유산지역에서의 방문객 이용시설은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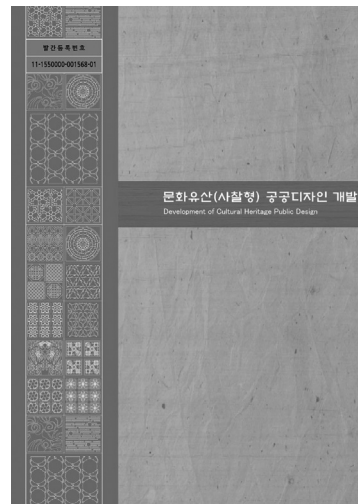
특히, 세계유산 등재지역이나 등재를 준비하는 지역은 방문객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유산센터(WHC)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서는 등재신청서 작성 시 ‘방문자시설 및 인프라(Visitor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에 대해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들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별 방문객 이용시설

분류		시설 명
편의·휴게 시설	편의시설	관광안내소, 매표소, 자전거 보관소,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 음수대, 휴지통, 조명시설(가로등), 공중전화 등
	휴게시설	벤치, 파고라 등
	전시시설	전시관·박물관 등
안내시설	안내판	종합안내판, 유적안내판, 방향안내판, 기타 안내판 등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2)



문화유산(사찰형) 공공디자인 개발(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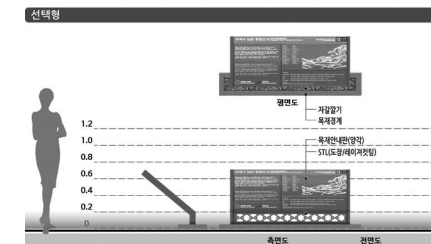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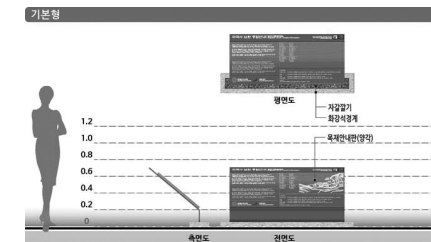
(4)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재청에서는 아름다운 문화경관의 조성 및 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2012년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경관특성별, 공간특성별, 문화유산별, 관리주체별, 대상시설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014년에는 전통사찰에 적합한 ‘문화유산(사찰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발주 시 사업계획에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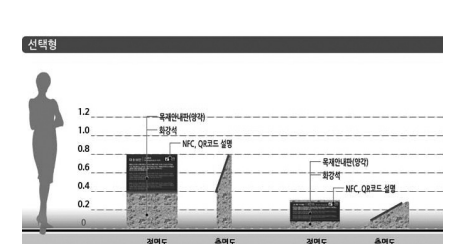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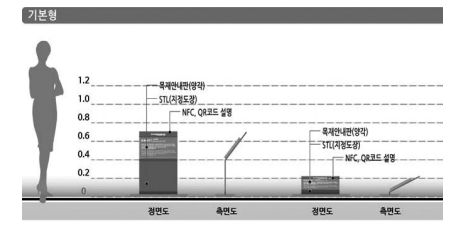
III. 박물관·유적 활용 가이드라인



종합안내판 가이드라인(문화유산(사찰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



구역안내판 가이드라인 (문화유산(사찰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문화유산(사찰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

따라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설치시기 및 관리주체에 따라 다양한 안내판(종합안내판, 개별유산 안내판, 방향안내판, 금지안내판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 제시된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는 상태이다.

(5)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 및 관광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가 요구되거나, 재정적·기능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관광 모니터링 지표

분류	지표항목	점검	
경제성	관광과 연결되는 지역산업이 있는가?	□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관광객에 의해 소비되는가?	□	
	상품가격 등이 적당한 수준인가?	□	
	관광객 1인당 소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가?	□	
주체성	관광서비스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지역에 거주하는가?	□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가?	□	
	지역단체와 여행사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회가 있는가?	□	
접근성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주차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프로그램	축제 및 행사가 관광객에게 개방되는가?	□	
	새로운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광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시행되는가?	□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가?	□	
관광객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	
	유적별 방문객 규모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	
	관광객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	
관광 시설	조명·전기	시설이 노후 또는 불량한 곳은 없는가?	□
		시설이 추가되어야 할 곳은 없는가?	□
	편의·휴게	시설이 노후 또는 불량한 곳은 없는가?	□

전시·홍보	시설의 상태는 청결한가?	□
	시설이 추가되어야 할 곳은 없는가?	□
	시설 내부 전시물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시설의 훼손이 확인되는가?	□
안내판	위치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가?	□
	시설이 추가되어야 할 곳은 없는가?	□

(6) 국내 사례

①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최근 들어 중앙정부기관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의 활용에 있어 문화적인 소재를 기획하고 포장하여 상품화 시키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등의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문화의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문화재청이 기획한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문화재 야행사업이 시작되었고, 2017년 들어서는 전통산사 활용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가.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문화재 야행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형 문화재관람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필요.
	○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중심의 단순한 관광패턴을 역사문화관광 영역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야간 볼거리 제공 및 전통한류문화 확산용 콘텐츠 개발이 필요.
	○ 대규모 관광객 유치산업 대비 문화재 관광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전환(체류형, 야간형)에 따른 야간형 문화재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가 요구됨.
추진목적	○ 문화유산 여행 명품브랜드 육성 및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맞춤형 문화유산 활용·진흥 프로그램 개발·보급·확대.
	○ 지역별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로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품격 문화재 관광 상품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발전의 핵심관광자원 역할 및 중·장기적 지역재생 효과 거양.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야간문화향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한 우수 선도 사업 모델 개발 확산. ○ 지역에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형 문화재관람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문화경험 기회 제공. ○ 내·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야간형 거리 연출효과 극대화를 통한 특색 있는 관광컨텐츠 개발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동일한 주제(테마)로 이미지 누적 효과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밀집·집적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재 야간관람 전략지구(거점, 부거점) 선정 육성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목표, 전략, 세부사업계획 및 개발방안, 자원, 추진체계 형성, 상권분석, 재정투입계획 등 ○ 내·외국인 방문객 의견을 반영한 문화재와 주변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야간관람 명소 발굴. ○ 지역 내 주·야간 문화재 관람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관람-숙박-승경명소를 연계한 콘텐츠 발굴 - 야간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여행 기획 ○ 차별화된 지역별 대표 프로그램 중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경관을 이용한 '실경공연'구상 및 공간 재해석 - 시대별·주제별 다양한 테마를 설정한 대표 프로그램 개발

2016년부터 시작된 문화재 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4억 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이며, 행사기간은 2일 이상으로 연 2회 이상 개최를 조건으로 한다.

주요사업 내용은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라는 주제로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야행) 향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이다.

나. 생생(生生)문화재 사업

2008년부터 시작된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이자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 상품으로 기획되었다.

생생문화재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이 문화재를 수익성이 높은 건전한 투자 상품으로 평가하여 보존 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 변화. ○ 문화재 보호 정책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현실적 가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문화재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활용은 간과. ○ 관람중심에서 오감(五感)자극 체험 중심으로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방식 전환. ○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고정관념·편견 등 지역사회의 피해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 ○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적 협력관계 견본 개발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부각.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활용이 문화재 보존의 근본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재창조 ○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향유권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역사교육, 향토문화 거점과 문화재 가치 확산 ○ 문화 녹색산업 대표자원으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여 국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사회 문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추진. ○ 지역별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로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화로 육성. ○ 교육정책의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 경쟁력, 발전성 및 자생 화를 위해 사업유형을 단계적으로 시범육성형-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국민과 소통하고 문화재 활용·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 유도 및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체험, 답사, 교육, 강좌 등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 개념 : 중학교 과정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체험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내용 : 정규 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활예절, 자아확립, 문화·예술 교육 등을 실시.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1년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시범육성형’, 2~4년 차 사업은 ‘집중 육성형’, 5년차 이상 사업은 ‘지속발전형’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유형에 따라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으로 구분되어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사업

2014년부터 시작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선현들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향교·서원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선비들의 지혜와 삶을 융·복합적으로 체험하는 살아 숨 쉬는 문화 사랑방 사업이다.

사업은 유형과 지원규모는 생생문화재 사업과 동일하게 년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시범 육성형', 2~4년 차 사업은 '집중 육성형', 5년차 이상 사업은 '지속발전형'으로 구분된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고정관념·편견 등 지역사회의 피해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서원문화재 관광자원화에 대한 사회적 여건 성숙과 사회적 변화 흐름 반영 ○ 대·내외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욕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문화재활용 정책 강화 분위기 조성 필요 ○ 문화재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과제 :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 확대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정립. ○ 정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 향교·서원문화재를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재 활용 자원으로 육성. ○ 자립적·지속적·체계적 활용체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추진.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모델 특화 및 차별성 강화로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화로 육성. ○ 교육정책의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 경쟁력, 발전성 및 자생화를 위해 사업유형을 단계적으로 시범육성형-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국민과 소통하고 문화재 활용·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 유도 및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서원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 및 배향인물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강좌, 공연, 문화, 체험, 답사,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라. 전통산사(山寺) 문화재 활용사업

2017년부터 시작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등의 형태로 국민이 누리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으로 각 산사가 지니고 있는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하여 MICE사업 자원으로 활용. ○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성공·활용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 특화된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상문화재 유형화 확대·보급. ○ 전통산사가 향토문화 산실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책임의식을 갖으면서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시대적 사명 반영.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재창조하여 향유. ○ 전통산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재향유 콘텐츠로 개발·활용하여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 ○ 전통산사문화재의 지속적인 향유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정기화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 및 보조방식으로 추진. ○ 전통산사별로 특색 있는 활용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매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색다른 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통산사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수요자 특성에 맞도록 주간형 및 야간형, 당일형 및 숙박형 등으로 맞춤형으로 활용. ○ 산사문화재의 발전적 활용을 위해 기반화 단계- 시각화 단계- 대중화단계로 점진적으로 추진. ○ 산사문화재활용·운영의 내실화 및 국민과 소통을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활용품질의 질적 향상 및 관계자 역량 강화.
활용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산사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에 내재된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활용한 문화재향유 프로그램. ○ 활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의 인문정신 및 호국정신 유산 - 산사에 전승·계승된 무형문화재 - 산사의 경관, 조경, 건축, 미술, 음악, 민속, 전래 이야기 - 산사의 역사적인 사건 - 그 밖의 보급·선양할 산사 문화 ○ 활용유형 : 체험, 교육, 강좌, 공연, 순례 등

III. 문화유산 활용 가이드라인

본 사업은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고 다양한 불교의 신앙 대상체가 융합되어 전통을 구현하며 공존해온 전통산사 문화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인문정신·호국정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역사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이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유형별 프로그램의 규모, 우수성, 운영 형태 등에 따라 30~100백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 보조율은 국비 50%(지방비

50% : 광역 25% : 기초 25%)가 지원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 2016년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문화재 야행 등 3개 사업, 175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약 147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90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파급효과 632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273억 원)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호응에 따라 2017년부터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 25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다.

② 유산기반 축제

앞서 살펴본 중앙 정부(문화재청)에서 기획하고 공모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사업뿐만 아니라, 각 지방 정부는 자신의 지역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축제를 기획, 개최함으로써 해당 문화유산과 지역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즉, 축제를 통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민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소득증가, 고용창출 및 세수증가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강진청자축제는 성공적인 문화유산 기반 축제 중에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강진청자축제는 청자의 발상에서 쇠퇴기까지 약 500여 년간 청자문화를 꽃피운 강진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강진군이 주최하는 축제이다. 청자는 중국에서 5~6세기경부터 생산했으며, 우리나라는 8~9세기경 생산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시기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14세기 쇠퇴기까지 고려 500년 동안 대구면 정수사에서 미산까지 6km의 산하에서 집단적으로 청자를 생산하였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400여 기의 옛 가마터 중 200여 기의 가마터가 강진에 현존하고 있는 만큼 강진은 청자의 집산지이자 청자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강진청자축제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73년부터 개최해 온 '금릉문화제'를 개최하여 1996년부터 '청자문화제'를 개최해왔고, 1997년에는 문화체육부의 10대 문화관광 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되어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연속해서 집중육성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2009년부터는 '강진청자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해 오고 있다. 강진청자축제는 2017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강진청자축제는 청자라는 지역의 문화를 소재로 개최된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서 매년 여름에 개최되며 강진군 주최,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주관하고 있다. 주요행사는 의식행사, 기획행사, 전시행사, 체험놀이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 연계행사로 나뉘어 다채롭게 구성이 된다.

강진청자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는 청자를 주제로 기획된 축제로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자축제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전시행사(화목가마 요출, 희망의 불꽃 화목가마 불지피기, 청자 제작과정 시연, 창자판매 경품 이벤트, 제19회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 한·중 도자기 교류전 등)와 체험·놀이 행사(화목가마 짚질방, 고려청자 깨기 체험, 어린이 점토 빚기 체험, 강진점토 팩 체험, 물레 성형하기, 청자조각하기 체험, 청자 코일링 체험, 청자 풍경 만들기 체험)는 청자축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관광객 휴게·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 축제가 여름에 개최되는데 따른 여름철 무더위 및 직사광선 해결을 위한 해가림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관광객 편의를 도왔으며, 방문객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문객 이동 동선에 다양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표기가 이루어졌다.

강진청자축제 행사 내용

구분	내용
의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명도공 기원제 ○ 개막식 ○ 폐막식
기획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발전방안 학술 심포지엄 ○ 관광객과 함께하는 점토 밟기 ○ 나도 청자축제 SNS 서포터즈(현장즉석참여) ○ 제17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및 수상작 전시 ○ 명품청자 전시·판매전 ○ 화목가마 요출 및 즉석경매 ○ 희망의 불꽃 화목가마 불지피기 ○ 청자 제작과정 시연 ○ 창자판매 경품 이벤트 ○ 제19회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 ○ 한·중 도자기 교류전

전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청자 재현사업 40주년 기념 특별전 ○ 대형 청자등 전시 ○ 역대 청자축제 포스터 전시 ○ 제17회 고려청자 특별전 ○ 대형 청자조형물 전시 ○ 강진산 고려청자 국보(보물) 재현품 전시
체험·놀이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목가마 찜질방 ○ 고려청자 깨기 체험 ○ 어린이 점토 빚기 체험 ○ 강진점토 팩 체험 ○ 시원한 점토 바디 트리트먼트 ○ 물레 성형하기 ○ 청자조각하기 체험 ○ 청자 코일링 체험 ○ 청자 풍경 만들기 체험 ○ 봉숭아 손톱물들이기 ○ 타임머신 청자우체통 운영 ○ 잉어 등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 ○ 염결장군 무예체험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 MBC 개막 축하쇼 ○ 강진연예인 연합회 축하공연 ○ 청자골 실버 문화예술공연 ○ 다문화가정 한마당 큰잔치 ○ 청자골 청소년 어울마당 ○ 청자골 문화예술인 한마당 큰잔치 ○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 ○ 한국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공연 ○ KBS-TV 축하쇼 ○ 청자경매쇼 및 페스티벌 공연 ○ 즐기자! 버스킹(길거리 공연) ○ 읍면 주민자치센터 공연(읍면 화합의 날) ○ 내일을 기약하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콘서트 ○ 뮤지컬 갈라쇼 & K-POP 아이돌(exp 에디션) 공연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러브랜턴 메시지 달기 ○ 초대형 워터슬라이딩 운영(점토팩 연계 프로그램)

III. 문화유산 활용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훈 써주기 ○ 청자골 맛의 1번가 운영 ○ 초록민음 농수산물 판매전 ○ 명품청자판매관 이벤트존 운영 ○ 전통 차 예절겨루기 ○ 청자골 야생 수제화 다도 체험 ○ 강진 문화유적 투어 ○ 청자골 분재 전시회 ○ 청자골 야생화 전시회 ○ 청자축제 사전/참여 이벤트 ○ 다양한 물놀이 체험장/수영장 운영 ○ 전통옹기 제작 시연 및 판매 ○ 자랑스러운 향우와 함께(만찬) ○ 청자골 캠핑존 운영 ○ 청자와 한지의 만남 ○ 어린이 집트랙 운영 ○ 한방 건강증진 체험관 및 금연클리닉 운영
연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배 광주·전남 남녀 공동대회 ○ 강진 3대 물놀이장 운영(V랜드, 초당림, 석문공원) ○ 청자와 다산 백일장 대회 ○ 다산특별전

그러나 강진의 청자와 관련된 역사, 청자와 관련된 인물 이야기, 청자와 강진이라는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과의 관련성 등 스토리화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라는 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축제 전반적으로 스토리 구상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스토리 구상안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과 시설 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축제에 대한 흥미, 청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축제 개막 공연
(출처: 강진청자축제홈페이지)



축제 개막 퍼레이드
(출처: 강진청자축제홈페이지)



청자 체험
(출처: 강진청자축제홈페이지)



화목가마 불 지피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17.8.1.)



청자 판매장
(출처: 강진청자축제홈페이지)



청자 전시장
(출처: 강진청자축제홈페이지)

③ VR(virtual reality)을 이용한 문화유산 가상체험과 활용

가상현실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체험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문화유산이 일부 파괴되어 불완전하게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완전성을 유지하며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존 가치가 너무 커서 일반인들이 직접 볼 수 없는 경우, 가상체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해당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문화유산이 가진 시공간적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언제 어느 곳에 있던 특정 문화유산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관람

할 수 있고 체험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최근 가상현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그 장점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활용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KIST) 영상미디어 연구센터가 최초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1,300년 전의 신라로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통일 신라의 수도 서라벌 모습을 재현해 내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공개된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의 영상 속에는 서라벌의 황룡사, 월정교, 첨성대, 안압지 등의 문화유산들이 복원되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KIST와 함께 7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주제영상은 기획부터 콘텐츠 구성까지 장비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루어졌다. 대형 스크린에 복원된 서라벌은 실측, 탐사, 촬영, 고증, 감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작됐고 가로 40km, 세로 52km의 지형은 현재의 경주를 위성촬영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황룡사와 월정교는 현재 유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역사적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로 복원된 경우이며, 첨성대와 안압지의 경우 현존하기는 하지만 과거 상황에 맞게 복원하여 먼 거리에서도 유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석굴암은 유산의 형태가 완전하게 존재하는 경우이지만 온도의 민감성과 훼손의 위험성 때문에 유리 속에 보존되어 있다. 또한 종교적 의미 때문에 석굴암 모습이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진 촬영도 금지된 상태이다. 석굴암의 경우 실제 석굴암의 3차원 스캐닝을 통해 석굴암 내부 및 빛의 조화까지 정밀하게 재현했다. 2000년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2015년 문화유산기술연구소(TRICH)에서 석굴암을 직접 레이저 스캔한 고정밀 삼차원 표면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체강점기 도면과 사진,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200여개의 부재가 모두 분해 조립이 가능한 완벽한 형태의 삼차원 디지털 석굴암을 완성하였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인디고인터테인먼트는 석굴암을 가상현실 속에

서 걸어 다니며 체험할 수 있는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을 제작하여 경주타워에서 상설전시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체험과 더불어 가상현실을 통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다양한 콘텐츠 산업으로의 파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 샘플영상 캡처(VR 360)

④ 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화와 활용

처음부터 문화유산의 직접적인 상업화를 목적으로 유산의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한 사례로는 앙코르와트 디지털 복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앙코르(Angkor) 유적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 중 하나이다. 이곳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의 수도로서 훌륭한 유물을 지니고 있으며, 앙코르에서 발달한 크메르 예술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발달 과정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열대밀림에 버려졌던 앙코르 유적지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 알려지게 되면서 앙코르 연구가 시작되었고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3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의 와중에 거대한 유산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1992년 유적지의 보존과 복원을 전제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앙코르의 핵심인 앙코르와트는 독일탐(GACP)이, 바이운은 일본탐(JSA)이, 반데이스레이 사원은 스위스탐이, 그리고 차우사이테보다 사원은 중국탐이 각각 복원을 맡고 있다. 한국은 물리적인 앙코르 유산의 복원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세계 최초로 앙코르 유적지를 CT(culture technology) 기술을 통해 디지털로 복원하고 이를 디지털콘텐츠 형태로 제작하였다.

앙코르 문화유산의 글로벌 상업화를 최종 목표로 이루어진 디지털콘텐츠 작업은 최종 데이터가 문화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포맷으로 제작되었다. 이미 '툼레이더'란 게임으로 개발된 선례가 있고,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했던 앙코르 유적지는 매력적인 산업활용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 방송, 전시, 온라인 등 첨단 영상형 문화콘텐츠 산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스토리텔링, 오리지널 사진, 3D캐릭터, 3D 모델링, 스캔 데이터, 웹 3D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는 하나의 리소스가 하나의 콘텐츠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를 구현하는 모델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활용 범위는 도서출판, 문화상품 개발, 영화 배경, 게임의 배경, 웹 3D용 가상현실 박물관, 대형 전시관 상영,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이다.

(7) 국외 사례

① 세계유산을 활용한 실경공연(實景公演) - 인상 리장

세계유산인 중국의 리장 옛 시가지는 여러 문화전통이 조화롭게 섞인 뛰어난 마을 전경을 가지고 있다. 리장 옛 시가지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뻗은 산비탈 위에 깊은 강을 마주 보고 있다. 이 마을의 북쪽은 상업 지역이며, 사방가(四方街)라고 알려진 대로가 마을의 주요 도로인데, 전통적으로 윈난성(雲南省) 북서부의 상업



앙코르 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화를 통한 활용방안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III. 관광문화유산 활용 가이드라인



다양한 문화상품 활용의 예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한 게임 '툼레이더'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과 교역의 중심지였다. 명청(明清)시대부터 사방가는 서북의 차 상업무역의 요점이었다.

앞에 있는 수문은 독특한 도시 위생시설이며, 길을 청소하기 위해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두 개 물길을 이용하고 있다. 길은 곱게 간 빨간색 각력암 판으로 포장되어 있고, 물은 이곳에서 쌍스교(Shuangshi Bridge)로 흐르며, 여기서 세 개의 지류로 나뉜다. 이 세 지류들은 각 마을의 집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시 수로망과 지하 배수로망으로 나뉘며, 마을에 있는 많은 샘과 우물에 물을 공급해 준다. 리장 옛 시가지의 형태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나시족(納西族)이라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한다. 한족(漢族)과 장족(藏族)의 건축 양식을 받아들여 아주 독특하게 발전했으며, 목골 구조로 된 집은 대부분 이층집이다.

리장 옛 시가지는 세계유산으로서 역사적, 건축적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시족 등 소수민족문화와 같은 무형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또한 산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공연을 펼치는 ‘인상 리장’으로도 유명하다.

‘인상 리장’은 장이머우(张艺谋) 감독의 인상시리즈 중 하나인데, 2003년 ‘인상 류산지예’를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시리즈를 개발해 공연하고 있다. 인상시리즈는 산수실경연출(山水實景演出) 방식, 즉 야외에서 대자연을 무대로 펼쳐지는 공연이며, 해당 지역의 역사나 전설, 문화를 소재로 하고 현지 주민들을 배우로 기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인상 리장’은 차마고도를 오가며 이 지역을 생활 터전으로 삼아온 소수민족의 삶과 애환을 보여주는 공연이다. 리장 옛 시가지의 북쪽에 위치한 만년설이 쌓인 해발고도 5,596미터의 위룡쉐산(玉龍雪山) 중턱(해발 3,100미터)이 바로 공연을 위한 무대가 된다. 만년설이 쌓인 산들이 그대로 공연의 배경이 되고, 험준한 차마고도는 무대 세트를 이용해 표현된다. 출연진은 500여 명에 이르는데 이 중 나시족들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인상 리장’이라는 실경공연은 리장의 옛 거리라는 세계유산이 포괄하고 있는 나시족의 무형유산, 리장의 자연환경이라는 장소 자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첫 공연을 시작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2년에 1,200석이었던 관객석을 2,890석으로 늘린 바 있다. 또한 ‘인상 리장’ 공연 관람이 이 지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면서 관광 수입이 늘어났으며, 지역 주민들이 배우로 출연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인상 리장’은 리장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되었으며 그것의 경제적 효과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인상 리장의 한 장면
(출처: chinatrav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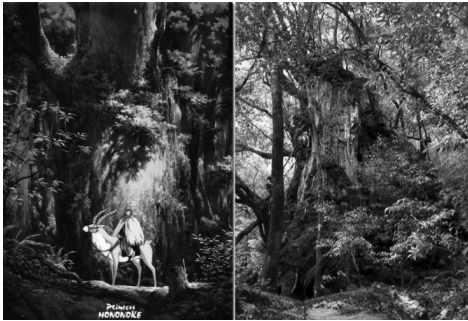
②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의 공간을 초월한 확장성은 세계유산의 활용에도 시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1997년 작품인 ‘모노노케히메’는 세계유산인 야쿠시마를 배경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다. 일본의 자연유산으로 1993년에 등재된 야쿠시마는 태평양과 동중국해의 경계에 있어 열대와 온대가 교차하는 산악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해발 1,935미터인 최고봉 미야노우라산을 비롯하여 1,800미터 이상의 봉우리가 6개이고 가파른 산비탈과 깊은 골짜기가 많다. 생태지리학적 가치가 높은 섬으로서 이곳은 일본 본토와 식생이 매우 다르다. 수직 식생 분포를 보면, 해변은 아열대 식생이며, 섬의 안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서 난온대성 중, 온대성 중, 냉온대성 중, 아고산대종이 차례로 나타난다. 냉온대 지역에는 본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도밤나무림이 아니라 침엽수림이 나타난다. 난온대성 활엽수림은 전에는 일본 남부의 광대한 지역을 뒤덮었다. 하지만,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많이 사라졌다. 따라서 일본에는 야쿠 섬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만 난온대성 활엽수림이 남아 있다.

야쿠시마의 자연유산으로서의 이러한 특징은 ‘모노노케히메’라는 애니메이션에 단순한 배경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소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환경 파괴 문제를 주제로 한 ‘모노노케히메’는 수백 년 전의 일본을 배경으로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숲에서 근대화 과정으로 인해 숲을 파괴하려



모노노케 히메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한 블로거의 모노노케히메 장면과 야쿠시마 현장 비교 사진
(출처: <http://wixtm.blog.me/220418892364>)

는 인간들과 이에 맞서 숲을 지키려는 신(정령)들과의 싸움을 그렸다. 인간이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산을 망가뜨리고 산의 주인인 신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산에 사는 생물과 인간의 싸움, 그리고 인간과 신이 함께 살아야 함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는 모습, 결국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새로운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들이 애니메이션이 담겨있다. 이렇게 ‘모노노케히메’는 야쿠시마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에 있는 민담과 신화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졌다.

애니메이션 속에 반영된 실제 지역을 찾아 여행하는 ‘콘텐츠 투어리즘-애니메이션 성지순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최근의 관광행태를 고려했을 때 애니메이션은 세계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특정 애니메이션의 팬덤이 가상의 콘텐츠 영역을 넘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었던 실재하는 장소를 방문하고, 애니메이션의 장면과 실제 장소를 비교하는 2차적인 정보와 콘텐츠를 SNS와 인터넷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와 콘텐츠는 같은 팬덤들에게 확산되면서 해당 지역의 관광객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애니메



한 블로거의 모노노케히메 장면과 야쿠시마 현장 비교 사진
(출처: <http://wixtm.blog.me/220418892364>)



한 블로거의 모노노케히메 장면과 야쿠시마 현장 비교 사진
(출처: <http://wixtm.blog.me/220418892364>)

이션의 단순한 배경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세계유산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무형적인 유산을 소재로 사용한다면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등재기준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사이트의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③ 3D 모델링을 통한 고대 로마 재건 - Rome Reborn

로마 역사 지구는 이탈리아 로마의 고대 유적으로 BC 753년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 건설된 로마제국의 자취로 기독교 세계의 수도였다. 1980년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1990년 우르바누스 8세의 성벽까지 확장 지정되었다. 따라서 유산은 포룸(Forum)과 아우구스투스 영묘(靈廟), 하드리아누스 영묘, 판테온, 트라야누스 원주(Trajan's Column),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의 원주, 교황령 로마 내의 종교 건축물, 공공 건축물과 같은 고대 기념물들을 포함한다.

1997년부터 버지니아 대학의 가상 세계유산 랩(Virtual World Heritage Laboratory), UCLA의 경험 기술 센터(UCLA Experiential Technology Center),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역엔지니어링 랩(Reverse Engineering Lab at the Politecnico di Milano), 아우소니우스 협회(Ausonius Institute of the CNRS), 보르도-3 대학(University of Bordeaux-3), 캉 대학(University of Caen)은 협력하여 고대 후기 고대 로마의 모습을 디지털 모델로 만드는 프로젝트(Rome Reborn)를 시작했다. 2009년 이후, 프로젝트의 스폰서와 행정 본부는 프리셔 컨설팅(Frischer Consulting)이 되었는데, 이들의 임무는 세계의 문화유산 연구와 확산에 3D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3D 모델링을 통해 고대 로마 세계를 버추얼 월드(virtual world)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화를 통한 활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 세계유산을 방



Rome Reborn 프로젝트의 디지털 복원 이미지
(출처: <http://romereborn.frischerconsulting.com>)

문하지 않아도 가상세계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로마 콜로세움 인근 극장에서 3D 영상과 위성안내 핸드셋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이 서비스는 온라인 구글 어스에서 2011년까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었다.

Rome Reborn과 같은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세계유산의 모습을 복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이다. Rome Reborn은 첫 정착이 이루어진 청동기 시대(B.C. 1000년)로부터 중세 시대 초기(A.D. 550) 도시의 과소화까지 고대 로마의 도시 발전을 나타내는 3D 디지털 모델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제 과학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프로젝트의 관련자들은 A.D. 320년이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순간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는 인구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주요 기독교 교회가 막 건설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후에는 새로운 공공건물이 거의 건설되지 않았다. 또한 고대 도시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것은 이 시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 대해 추측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D. 320년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Rome Reborn 팀은 임무에서 예상되는 전체 시간이 커버될 때까지 기준을 시작으로 앞 뒤 시대의 역사적 모습을 담기 위해 작업을 하였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Rome Reborn 2.2를 박물관 또는 인터넷에서 교육용 비디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3. ————— 참고 문헌

- 김광식, 『오늘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시간의 물레, 2014
-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목조, 석조) 내진점검 및 진단매뉴얼』, 2013
- 문화재청,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2008
-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 문화재청,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 2009
- 문화재청, 『문화유산(사찰형) 공공디자인 개발』, 2014
- 문화재청, 『문화유산 재해예방 매뉴얼(세계유산을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2009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17~2021』, 2017
- 문화재청,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 2009
- 문화재청,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 2010
- 문화재청,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2006
-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2007
- 문화재청,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2021』, 계문사, 2015
-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 도서출판 두술, 2005
- 문화재청, 『세계유산 상시모니터링 지표개발』, 2012
- 문화재청, 『실무자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신청 매뉴얼』, 2009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2009
- 이코모스 코리아,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 그래픽코리아, 2010
- 이크롬(ICROM,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문화유산을 위한 재난대비 지침(Risk preparedness: A Management Manual For World Cultural Heritage)』, 1998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연구』, 인쇄나라, 2013
- 장호수, 『문화재보존·활용론』, 민속원, 2012
- WORLD HERITAGE CENTER,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3
- 경기도, <http://www.g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http://www.icomos.org>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http://www.icomos-korea.or.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문화재청-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gis-heritage.go.kr>
- 세계유산위원회, <http://whc.unesco.org>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 전통문화교육원, <http://tctc.nuch.ac.kr>
-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https://savingplaces.org>
- 강진청자축제 홈페이지 <http://www.gangjinfes.or.kr>
- 김형대 외, 「지역축제의 성공적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호텔리조트학회지』, 12(2), 431-451, 2013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16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 "디지털콘텐츠로 보는 앙코르왓" <https://www.culturecontent.com>
- 차이나트래블 <https://www.chinatravel.com>
- Rome Reborn 홈페이지 <http://romereborn.frischerconsulting.com/>

경기 문화유산 세계화 기초조사 연구
보존관리 및 활용 가이드라인 편

발행인

설원기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기획

김성환 · 이지희

연구용역 수행

(사)COMOS 한국위원회

필진

연구책임자 최재현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김숙진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연구원 홍현철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박종관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상현 |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주 | 백제고도문화재단 책임연구원
정수희 | 건국대학교 박사
연구보조원 정학성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한승우 | 건국대학교 사학과

편집

페도라 프레스

디자인

디자인 이응

인쇄

사회적기업 디자인나무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18년 6월 1일

©2018 경기문화재단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문화재단과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 978-89-999-0117-1

978-89-999-0113-3 (세트)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 031. 231. 7200 F 031. 231. 7240

www.ggcf.kr